

조사보고서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2010. 7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보험연구원

머 리 말

우리나라도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처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형화된 퇴직연금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제반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추진해 오면서 경험하였던 제도 활성화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일 등 선진국수준의 규제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이 선진국수준에 부합한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라 현재의 규제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한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퇴직연금규제를 하나의 퇴직연금 규제 체계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연금제도의 도입, 연금제도의 운용, 연금제도의 종결 등과 같이 퇴직연금 운영 프로세스별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를 비교검토한 후, 퇴직연금규제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7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김 대 식

목 차

I. 서 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 내용	9
II.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선행연구	10
1. 연금규제 의의	10
2. 연금규제 내용	11
3. 연금규제 트렌드	14
4. 선행 연구	15
III.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규제	18
1.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18
2. 진입 관련 규제	24
3. 기여 관련 규제	33
4. 특징 및 시사점	35
IV. 퇴직연금제도 운용 관련 규제	38
1.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38
2. 자산운용 관련 규제	78
3.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98
4. 특징 및 시사점	143
V.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	147
1. 이전·취소 관련 규제	147
2. 폐지·청산 관련 규제	149
3. 특징 및 시사점	153

VI.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155
1. 기본방향	155
2. 세부추진방향	156
3. 향후과제	161
 참고문헌	 163
[부 록]	165

<표 차례>

<표 II-1> 연금 규제 목적 및 관련법	10
<표 II-2> 퇴직연금 규제 구분 및 유형	11
<표 II-3> 제도 운영 Process별 규제수단 및 세부내용	12
<표 II-4>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비교	16
<표 III-1> 일본과 미국의 연금 계산기초율	19
<표 III-2> 연금사업자 등록 거부 사유	25
<표 III-3> 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29
<표 III-4> 근퇴법상 신탁계약 방식과 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31
<표 III-5> 신탁업감독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	32
<표 III-6> 미·일의 기여규제	33
<표 III-7> 퇴직연금 기여규제	35
<표 IV-1> 수탁자의 범위	41
<표 IV-2> 수탁자책임의 법제	43
<표 IV-3> ERISA법상의 수탁자 정의 및 의무	44
<표 IV-4> ERISA법상의 수탁자책임 규정	46
<표 IV-5> 일본의 수탁자책임 규정	54
<표 IV-6> 일본의 사용자 수탁자책임	56
<표 IV-7> 일본 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 I	59
<표 IV-8> 일본 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 II	61
<표 IV-9> 수탁자 배상책임보험과 신용보증보험의 비교	67
<표 IV-10>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약관내용 및 특징	68
<표 IV-11> 일본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주요내용	72
<표 IV-12> 우리나라 사용자 수탁자책임 관련 규정	73
<표 IV-13> 우리나라 사용자 수탁자책임 위반시 조치사항	73
<표 IV-14> 연금사업자 책임 관련 규정	75
<표 IV-15> 우리나라 연금사업자 수탁자책임	77

<표 IV-16> OECD 자산운용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78
<표 IV-17> 자율규제와 양적규제	80
<표 IV-18> 연기금의 최소분산투자규제	82
<표 IV-19> OECD 연기금의 자기투자 규제	82
<표 IV-20> OECD 연기금의 총량규제	83
<표 IV-21> 연기금의 의결권 지분제한 규제	84
<표 IV-22> 주요국의 자산운용규제	85
<표 IV-23> 주요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87
<표 IV-24> 네덜란드의 재무평가체계	90
<표 IV-25> 연기금의 최소 건전성 요건	92
<표 IV-26> 투자한도의 종류	93
<표 IV-27> 확정급여형제도의 위험자산 한도	94
<표 IV-28> 확정기여형제도의 위험자산 한도	96
<표 IV-29>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97
<표 IV-30> 미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개혁	99
<표 IV-31> 일본의 재무건전성 규제 개혁(Ⅰ)	105
<표 IV-32> 일본의 재무건전성 규제 개혁(Ⅱ)	106
<표 IV-33> 책임준비금 평가 및 규제	107
<표 IV-34> 최저보전급부 산출방법의 특징 비교	111
<표 IV-35> 캐나다의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 비교	112
<표 IV-36> 최소 책임준비금 평가 기초율	114
<표 IV-37> 적립수준 및 과거근무채무 상각	115
<표 IV-38> 적립과부족에 대한 시정조치	117
<표 IV-39> 부담금의 재정재계산 주기 비교	118
<표 IV-40> 지급보증제도 운영형태	120
<표 IV-41> 연금보호기금의 보험료 체계	123
<표 IV-42> 연금지급보증제도	126

<표 IV-43> 주요국의 연금관련 예금자보호제도	127
<표 IV-44> DB형 적립금의 의무적립비율 고시안	130
<표 IV-45> 최소적립 수준 및 PSL 상각 관련 규정	132
<표 IV-46> 적립과부족시 산정과 적기시정조치	133
<표 IV-47> DB형 적립금의 적립과부족시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	133
<표 IV-48> 퇴직급여제도의 우선변제 관련 규정	137
<표 IV-49>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	139
<표 IV-50> 퇴직연금 유형별 수급권 보호장치 비교	141
<표 IV-51>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 비교	142
<표 IV-52>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보호	143
<표 VI-1> 제도도입 관련 규제방향	157
<표 VI-2> 제도운용 관련 규제방향	159
<표 VI-3> 제도종결 관련 규제방향	161

<그림 차례>

<그림 IV-1> 기금형 제도와 계약형 제도 비교	39
<그림 IV-2> 미국 지명수탁자와 일반수탁자의 책임분담 위임 관계도	48
<그림 IV-3> 퇴직연금 수탁자배상책임 구조	70
<그림 V-1> 자발적 폐지와 비자발적 폐지	151

A Study on supervisory structure for corporate pension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Supervision on a retirement pension in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concentrated on benefit protection for participants and fiduciary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the autonomous functions of the market has been encouraged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the retirement pension. In contrast,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Korea has been focused to regulate pension management by restricting the choice set of retirement pensions, rather than to protect participant's benefit or to impose responsibilities on fiduciaries.

However, the environment related to the retirement pension is changing. The self-regulating management of the retirement pension is growing as far as benefits of participant in the pension is not harmed. Accordingly, the Retirement Pension Act tries to reflect this situation but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Act when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regulations.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to improve supervisory structure for the retirement pensions.

First, the supervision on the ex ante and ex post financial soundness of fiduciaries should be tightened. To do this, fiduciary responsibilities should be also clarified.

In addition, deregulation of pension assets need to be made to expand investment management choices of workers and enterprises. The road map for transition to self-regulation after 2010 is presented but a mor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for the deregulation of asset management is not yet available. Therefore, more specific road map for when and how the transition to self-regulation starts is required.

요 약

1.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 규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연금제도의 도입, 연금제도의 운용, 연금제도의 종결 등과 같이 프로세스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을 외국과 비교·분석하여 한 후 퇴직연금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함.

2. 규제 내용 및 트렌드

- OECD는 연금규제의 목적과 회원국이 연금규제를 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적정수준의 적립기준 마련, 수급권 보호 관련 공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퇴직연금규제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사용자·연금사업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퇴직연금규제는 도입 관련 규제, 운용 관련 규제, 종결 관련 규제와 같은 제도운영 프로세스(Process)별로 구분할 수 있음.

<표 요약-1> 제도 운영 프로세스별 규제

구 분	규제수단	세부내용
도입 관련 규제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보험요율 및 준비금 산출과 관련된 계산기초율의 설정 등
	진입 관련 규제	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계약체결요건(자격 요건 포함) 등
	기여 관련 규제	보험요율 기여방식(최소, 추가기여의무 포함), 기여제한 및 상한 등
운용 관련 규제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기업, 연금사업자, 운용사 등에 대한 충실, 주의, 자산배분, 정보관리의무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	양적규제 및 질적규제, 분산투자규제, 자기투 자규제, 총량규제, 의결권지분제한규제 등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재정검증, 재정주체, 재계산 등의 사전적 재 무건전성규제(사후적재무건전성규제도 포함)
종결관련 규제	이전·취소 관련 규제	기업 및 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이전 (계약이전 및 제도이전 포함)
	폐지·청산관련 규제	기업 및 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청산(연금지급보증장치연계)

□ 선진국은 대체로 퇴직연금 도입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
이는 반면, 운용 관련 규제 및 종결 관련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
금규제정책을 수립함.

- 즉 계산기초율 설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입
장벽은 최대한 낮추면서도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퇴직연금 종결 관
련 규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퇴직연금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차원에서 정형화된 수탁자책임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제3자적 감시기능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
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연금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자율적인 퇴출로 인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
소하고자 퇴직연금제도의 종결관련 규정이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임.

3. 제도도입 관련 규제

- 요율 관련 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연령구조, 기업의 자금여력 등 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계산기초율 산정을 연금계리사 등이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 미국은 최소적립금 산출이율 등과 같이 건전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산기초율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사망률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사망률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예정이율이 다양화되지 않고 퇴직연금사망률로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 진입 관련 규제의 경우, 대체로 선진국은 엄격한 인적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적·물적·재무건전성 요건 모두 느슨한 규제체계를 보임.
 - 일본은 연금사업자의 적절성을 심사·검증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미국도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고 있지만, 신탁계약에서 은행이 자행예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신탁계약이라는 본래 특성에 맞게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 기여 관련 규제의 경우, 미국은 부담금 기여의 주체가 근로자인 반면, 일본은 기여의 주체가 기업이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기여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고 있음.

- 미국은 현물기여는 인정하면서도 기여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최대한 자율은 인정하되, 책임은 철저히 지우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함.
- 결국, 제도도입 관련 규제는 탄력적인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근로자 수급권과 연금제정 안정성, 근로자의 이익 상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특징임.

4. 제도운용 관련 규제

-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의 경우 선진국은 수탁자와 근로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비해 정형화된 수탁자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즉 수탁자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퇴직연금 운용관련 의무, 즉 보고·신고·제출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자에게 대한 수탁자책임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선진국은 수탁자책임 위반시의 제재조치 강화와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탁자책임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매우 낮고 수탁자책임 위반시 근로자가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장치가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일본 등은 근로자와 수탁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 3자적 감시기능장치가 퇴직연금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계리개념의 미도입 등으로 인해 수탁자의 책임을 감시할 제3자적 감시기능장치가 마련되지 않음.
-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체로 자율규제를 지향

하여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적규제를 지향하는 점이 특징임.

- 즉 법적·제도적인 규제완화 보완조치와 더불어 연금재정의 악화방지를 위해 리스크감독차원에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의 경우 선진국 및 우리나라 모두 수급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각국마다 규제의 강도 및 수단 면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 추세에 맞추어 적기시정조치를 마련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해 규제의 강도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즉 연금지급보장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연금지급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

5. 제도종결 관련 규제

- 제도종결 관련 규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저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종결과 관련된 엄격한 제반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등은 퇴직연금 관련 법률에서 제도이전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명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이전 이외에 자발적인 이전(제도간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과 개정 법률안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임.

- 주요 선진국은 제도 폐지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이 매우 엄격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자발적 폐지 금지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폐지·중단시의 처리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음.
- 즉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를 관련법상에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폐지 이후의 단계인 청산시 절차 등과 관련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음.

6. 규제방향

- 제도도입 관련 규제
 - 계산기초를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보다 정밀한 계산기초율 산출을 위해 산업별 또는 직종별 근로자 정보를 DB화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연금계리사의 책임하에 개별회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계산기초율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출 목적별 요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진입 관련 규제의 경우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연금계리인력 중심의 인적 기준 강화와 신탁제도와 배치되는 자행예금 예외적용, 금융회사 도산시 방화벽 작동 등을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장기적으로 연금사업자 등록의 적정성 심사검증체계의 도입과 고유자산과 신탁자산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는 신탁계약체계를 지향할 필요

□ 제도운용 관련 규제

-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의 경우 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 강화, 수탁자의 배상책임보험도입, 법률 위반시 제재조치의 현실화 등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보고·신고·제출의무 관련 규정의 보완,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및 범위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경우 자율규제방식으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우선 사전에 수탁자책임과 수급권 보호장치 등과 같은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사전에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이 절실함.
-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의 경우 과거 근무채무에 대한 적립금 수준 상향조정, 적립부족액을 납입하지 않는 등 이행조치 위반시 법률적 제재조치 마련, 연금재정의 재계산 기간 조정, 연금계리사 제도 조기도입, 예금보험제도 현실화 등의 개선이 필요

□ 제도종결 관련 규제

- 선진사례를 참고로 하여 타 제도간 이전규정을 신설하고, 추상적인 취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수탁자 위반 등에 따른 강제적 이전과 기업의 자발적 이전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요구됨.
- 비자발적 폐지 금지 규정을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신설하고, 폐지절차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금융환경 변화 추세에 부합한 종합적인 연금규제 틀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진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수단 및 강도를 설정할 필요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진 복지국가와 같이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보다 정형화된 퇴직연금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제반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추진해 오면서 경험하였던 제도 활성화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규제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의 개정이 선진국수준에 부합한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라 현재의 규제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의 수준이 아닌 리모델링 수준의 규제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한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규제정책의 효율성이 보다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부합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차원에서, 그리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권 확보차원에서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규제체계를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퇴직연금 규제를 하나의 퇴직연금

규제체계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등을 기초로 퇴직연금규제 전반을 살펴보고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당국·학계·업계 등에서 퇴직연금규제 전반을 이해·검토하고 그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사전에 퇴직연금 관련 규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퇴직연금 운영의 프로세스(도입, 운용, 종결)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연금제도의 도입, 연금제도의 운용, 연금제도의 종결 등과 같이 프로세스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퇴직연금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프로세스별로 비교하여 현행 법률과 법률 개정안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선행연구에서는 퇴직연금규제의 의의 및 내용, 퇴직연금 규제 트렌드 등을 살펴본 후에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Ⅲ장 퇴직연금제도 도입관련 규제에서는 계산기초율관련 규제, 진입관련 규제, 기여관련 규제 등으로 구분한 후 규제마다 외국규제, 우리나라 규제 순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Ⅳ장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련 규제에서는 수탁자책임관련 규제, 자산운용관련 규제, 재무건전성관련 규제(협회의 수급권 보호규제) 등과 같은 규제체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Ⅴ장 퇴직연금제도 종결관련 규제에서는 기존제도의 완료(변경포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제도의 이전, 제도의 취소, 제도의 폐지 및 청산 등과 관련된 규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제Ⅵ장 퇴직연금규제의 정책방향에서는 향후 퇴직연금 규제의 기본방향을 살펴본 후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규제의 세부방향과 향후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선행연구

1. 연금규제 의의

퇴직연금규제는 구조와 운영의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 제정과 같은 활동을 의미하며, 규정(원칙)을 제정하는 기능(organizational and rule making function)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금규제는 기본적인 구조와 최소 기준을 정의하는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규제의 목적은 OECD의 『퇴직연금규제의 주요원칙에 대한 권고안(Core Principle of Occupational Pension Regulation)』에서도 찾을 수 있다. OECD 권고안에는 회원국이 연금규제를 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적정수준의 적립기준 마련, 수급권 보호관련 공시 등)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적인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본원칙의 핵심은 가입자 보호 및 제도의 안전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II-1> 연금 규제 목적 및 관련법

구 분	규제사항	세부내용
규제목적	가입자 보호, 제도의 안전성	수급권 보호, 노후소득보장
규제대상	수탁자 전체 대상	사용자, 연금사업자, 컨설팅사 등
규제수단	매우 다양	수탁자책임 규제, 수급권관련규제
관련법	근퇴법, 예금자보호법, 임금채권보장법, 감독규정 등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가입자라 할 수 있는 근로자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를 위해 보다 정형화된 연금규제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표 II-1>참조). 그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연금사업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본인·대리인이론)로 인해 근

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퇴직연금제도 역할 또한 요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연금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연금사업자, 컨설팅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수탁자)가 당연히 연금규제의 대상이 되며 다른 제도보다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하고 있다. 즉 가입자보호 및 제도의 안전성이라는 연금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방법 및 규제수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연금규제 내용

퇴직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금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형화된 연금 규제의 틀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표 II-2>에서 보는 것처럼 지배구조형 태별규제, 퇴직연금 제도별 규제, 수탁자별, 운영프로세스별 규제 등으로 퇴직연금 규제를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규제의 내용 및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표 II-2> 퇴직연금 규제 구분 및 유형

구 분	규제 유형(예시)
지배구조형태별	계약형, 기금형, 회사형, 연합형, 종합형
퇴직연금제도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수탁자 유형별	사용자(기업), 연금사업자, 자산운용사
운영프로세스별	제도도입, 제도운용, 제도종결(연금지급포함)

최근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단순히 금융기관이 제조·판매하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Process)"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배구조

형별, 퇴직연금 제도별, 수탁자별 규제보다 제도운영프로세스에 따른 기능별로 규제체계가 검토되고 있다. 즉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최종적으로 연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규제 수단과 차이가 비교되고 있다.

<표 II-3> 제도 운영 Process별 규제수단 및 세부내용

구 분	규제수단	세부내용
도입 관련 규제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보험료율 및 준비금 산출과 관련된 계산기초율의 설정 등
	진입 관련 규제	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계약체결요건(자격요건 포함) 등
	기여 관련 규제	보험료율 기여방식(최소, 추가기여의무 포함), 기여제한 및 상한 등
운용 관련 규제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기업, 연금사업자, 운용사 등에 대한 충실, 주의, 자산배분, 정보관리의무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	양적규제 및 질적규제, 분산투자규제, 자기투자규제, 총량규제, 의결권지분제한규제 등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재정검증, 재정주체, 재계산 등의 사전적 재무건전성규제(사후적재무건전성규제도 포함)
종결 관련 규제	이전·취소 관련 규제	기업 및 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이전(계약이전 및 제도이전 포함)
	폐지·청산관련 규제	기업 및 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청산(연금지급보증장치연계)

첫째,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에서의 규제수단(규제행위)은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진입 관련 규제, 기여 관련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는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승급률 및 탈퇴율 선정과 관련된 규제로 계산기초율의 설정이 연금재정의 안전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적정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진입 관련 규제는 퇴직연금사업자 등이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할 때의 법적·제도적 장치로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등록 및 계약요건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여

의 방법 및 수단을 정형화하여 적정한 기여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여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즉 계산기초율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고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며, 보험요율의 기여 규정 등이 정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퇴직연금기금 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어떠한 퇴직연금제도 도입관련 규제장치를 마련하느냐 여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인프라차원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둘째, 운용기관 등이 퇴직연금시장에 진입하여 퇴직연금 운용의 주체로 활동할 때, 일정한 규제의 틀 하에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규제가 퇴직연금 운용관련 규제이다. 이와 관련된 규제수단으로는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자산운용 관련 규제,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특히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책임과 관련 사항, 즉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인 반면, 연금재정평가, 재정재계산, 적기시정 조치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즉 수탁자에게는 근로자의 이익 및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일정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탁자책임 규제는 퇴직연금 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이다. 또한 자산운용규제의 정도에 따라 투자운용의 선택폭이 결정되며, 연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연기금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운용 관련 규제와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또한 퇴직연금 운용관련 규제의 핵심 규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운용프로세스별 규제의 마지막 단계인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로는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제 외에 사용자 및 연금사업자 등이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전·폐지 관련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규제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연금규제 트렌드

연금규제의 목적인 안정적인 연금운용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프로세스별로 다양한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과 법체계, 지배구조 등에 따라 규제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동일한 규제 내에서도 어떠한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효과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연금규제와 상호연계성이 있는 연금감독의 경우,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고 운용규제가 보다 완화된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진입과 관련된 감독이 적고 개입의 강도가 낮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연금감독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 국민소득이 낮으며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진입과 관련된 감독 및 모니터링(감시) 관련 감독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즉, 규제가 보다 완화된 기금형 지배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진입관련 감독수준은 낮추는 반면, 의사소통 관련 감독, 개입 및 시정조치 관련 감독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규제도 상술한 연금감독의 트렌드와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일 등 선진국은 퇴직연금의 도입관련 규제, 운용관련 규제, 종결 관련 규제 중에서 대체로 퇴직연금 도입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운용관련 규제 및 종결 관련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계산기초율 설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입장벽은 최대한 낮추면서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및 채무건전성 관련 규제,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종결 관련 규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규제의 완화에 따른 보완조치차원에 보다 정형

1) Hinz & Mataoanu(2005)는 연금감독단계를 적격성(진입)관련 감독, 모니터링(감시)관련 감독, 의사소통관련 감독, 측정 및 분석관련 감독, 개입 및 시정조치 관련 감독 등으로 분류하고 어디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감독하느냐는 각국의 금융시장 안전성 정도, 제도도입시기, 운용규제 완화의 정도, 지배구조 형태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화된 수탁자책임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엄격한 재정검증, 제3자적 감시기능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연금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율적인 퇴출로 인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퇴직연금제도의 종결관련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

4. 선행 연구

퇴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신기철(2003)³⁾은 퇴직연금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는 연구에서 각국 퇴직연금의 주요 지배구조를 미국, 영국 및 일본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부에서 발표한 퇴직연금 도입방향에 비추어 금융산업에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노사의 경우 신탁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금융관련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계약형이 초기 단계에 지배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의 설계 및 회사의 장단기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 컨설팅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하며,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는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우위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류건식(2003)⁴⁾은 퇴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방안이라는 연구에서 주로 연금자산운용 관련 규제감독과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규제감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의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및 퇴직연금감독체계, 우리나라의 규제감독현황 및 특징, 규제감독에 대한 실증분석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신기철(2003)⁵⁾은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한 규제 및 감독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제도 도입

2) 선진국의 연금규제 트렌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제Ⅴ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신기철, 「기업연금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증권예탁원 증권예탁지』, 2003.4.

4)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방안」, 『보험개발원주최 정책세미나』 자료, 2003.10.

5) 신기철,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제고방안」, 『노동연구원 전문가포럼』 자료, 2003.3.

초기에는 제도도입의 활성화가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각종 규제 및 감독의 강화보다는 제도내용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표 II-4>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비교

구 분		연구주요내용	특 징
국 내	신기철(2003)	- 지배구조별로 감독규제의 차이비교 - 계약형지배구조시 낮은 규제감독수준 필요	- 부분적(지엽적)인 규제사례 및 내용 제시 - 규제방향제시에서의 한계존재 - 상호비교분석부재 - 전체적인 규제패턴 이해 어려움존재 - 제도도입이전의 규제상황반영
	류건식(2003)	- 자산운용규제 및 수탁자책임 규제에 국한 - 근로자 수급권보호차원,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및 수탁자책임규제 필요	
	신기철(2003)	- 확정급여형(DB)의 재무건전성규제 방향성제시 - 계산기초를 설정 및 공시체계 정비 주장	
	류건식·이태열(2004)	- 재무건전성, 자산운용규제, 수탁자책임규제 사례를 미, 일, 영국 중심으로 정리 - 외국사례를 기초로 근퇴법 제정필요	
	류건식·이상우(2009)	- 진입관련 규제에 한정하여 규제의 적정성검토 - 제도 초기임을 감안, 진입규제 강화 주장	
국 외	Helmut Reisen(1997)	- 연금투자규제의 동향 및 추이 분석 - 투자운용규제 완화 강조	
	山口 修(2003)	- 일본의 수탁자책임 규제 내용 및 특징제시 - 미국수준에 준하는 형태로 제정 필요주장	
	土浪 修(2002)	- 미국과 일본의 수탁자책임 규제 비교 - 미국이 일본보다 엄격, 제도보완필요	
본 연구		- 제도도입, 제도운용, 제도종결 등 전체적인 규제틀에서 외국사례와 비교 및 방향제시 - 제도 도입관련 규제는 최소한도로 유지하되, 운용 및 종결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제도종결규제는 직접적으로 수급권보호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정형화된 법적장치 마련 절실	- 전 규제 체계를 운영프로세스별로 구분하여 평가 - 국내실정을 고려한 규제방향성검토 (규제별 특징비교) - 최근규제실태 반영

특히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규정에 의해 합리적인 적립을 유도하되, 일부사내 적립허용 등을 통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류건식·

이태열(2004)⁶⁾은 재무건전성 규제, 자산운용 규제, 수탁자책임 규제 중심으로 한정하여 외국의 규제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류건식·이경희(2007)⁷⁾는 퇴직연금 수탁자 리스크 감독측면에서 수탁자책임 규제 내용을 미국, 영국, 일본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류건식·이상우(2009)⁸⁾는 연금사업자 관련 규제를 진입규제와 진입후 규제로 구분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Helmut Reisen (1997)⁹⁾, N.G.Terry and P.J. White(1997)¹⁰⁾, OECD(2003)¹¹⁾ 등이 있는데, 특히 Helmut Reisen (1997)의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연금투자규제 동향과 추이를 분석하고 투자규제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山口 修(2003)¹²⁾는 일본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수탁자책임 규제내용 및 특징 등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土浪 修(2002)¹³⁾는 미국과 일본의 수탁자책임 규제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반문제점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규제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규제감독체계를 연금운용의 프로우상에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6) 류건식·이태열 「퇴직연금제도의 규제체계 연구」,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 2004.7.

7) 류건식·이경희 「퇴직연금 수탁자 리스크감독방안」, 보험개발원 정책연구자료, 2007.1

8) 류건식·이상우 「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6.

9) Helmut Reisen, "Liberalizing Foreign Investments by Pension Funds: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ECD Working Paper*, January 1997.

10) N.G.Terry and P.J.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1997. pp.160-175.

11)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2003.6.

12) 山口 修(2003), 『確定拠出年金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03.5.

13) 土浪 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関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険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Ⅲ.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규제

1.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가. 외국 규제

1) 예정이자율

미국은 ① 계속기준 부담금 산출이율의 경우 투자정책 및 기업의 특성에 반영하여 연금계리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제한이 없으며, 연금계리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반해 ② 비계속기준 부담금 산출이율의 경우 연금개혁법 적용이전에는 부담금 산출일 기준, 최근 4년간의 장기채 수익률을 사용,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수익률로 연금계리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연금개혁법에서는 비계속기준 부담금이율로 ㉠ 유효이자율¹⁴⁾, ㉡ 기간별 수익률, ㉢ 회사채수익률 곡선을 사용한 이율 등을 제시하였지만 어느 것을 적용하여도 부채는 거의 같아야 한다. 유효이자율이라는 단일율 적용을 제시함으로써 부담금산출의 간편성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계산기초율 자체를 도출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기간별 수익률이나 회사채 수익률 곡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기초율은 재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예정이자율은 법규에¹⁵⁾ 따라 사업주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적립금의 장기운용수익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채의 이율을 감안해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비율기준(하한 예정

14)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은 채권투자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투자자입장에서 보면 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기대수익률을 의미하며, 발행자입장에서 보면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실질이자율을 의미한다.

15) 확정금부기연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

이율)을 상회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1> 일본과 미국의 연금 계산기초율

	일 본	미 국
부담금 산출이율	<산출기준> 10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의 1년 평균과 10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의 5년평균 중 낮은 이율 <관련규정> 확정금부기업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금부금액의 계산에 이용되는 계산기초율): 후생노동장관이 정한 율(하한이율) 이상 * 300인 미만 단체는 하한이율이상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율결정	<산출기준> 연금자산의 구성과 투자정책을 고려하여 연금계리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관련규정>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412(c)(3) * 부담금산출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제한이 없으며, 연금계리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
예정이율	<산출기준> 당해 사업연도 전 5년간 발행되는 국고채(기간 20년)의 이율을 감안(20년 국고채수익률의 5년 평균)하여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이율 <관련규정> 확정금부기업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최저적립기준액)	<산출기준> -과거근무채무를 30년에 상각한 부담금과 정상 부담금의 합계 -(구규정)사용되는 이율은 최근 4년간 발행된 30년 국고채수익률의 가중평균값의 최고 10%, 최저 10% 한도에서 결정(단, 범위가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저 20%한도에서 결정 -(신규정)2004년 10월 국고채수익률에서 회사채수익률로 변경 <관련규정>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412(b)(2)(3) *2004년 기준 국고채 기준수익률은 4.72%~5.51%이고, 회사채 기준수익률은 5.89%~6.55%
적립상한액 산출이율 (2002: 1.2%)	<산출기준> 당해 사업연도말 하한예정이율 <관련규정> 확정금부기업연금법, 시행규칙 제62조(적립상한액의 산정방법)	<산출기준> 과거근무채무를 10년에 상각한 부담금과 정상 부담금의 합계 <관련규정>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412(a)(1) * 국세법에서 과거근무 상각기간 설정

즉 최근 5년간에 발행된 10년 국채 응모자이율¹⁶⁾의 평균 또는 최근 1년간에 발행된 10년 국채 응모자이율의 평균보다 낮은 비율기준으로 결정한다. 즉 일

16) 응모자이율은 채권투자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발행당시 매출가액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수익을 연단위로 환한한 비율을 말하며, 발행수익률이라고도 한다.

본의 경우 부담금 산출이율은 후생노동장관이 정한 하한 이율이상을 적용하며, 최소적립금 산출이율과 적립상한액 산출이율 또한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율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예정이율을 부담금 산출이율, 최소적립금 산출이율, 적립상한액 산출이율 3가지로 구분하여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예정사망률

미국의 계속기준 사망률은 연금계리사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사망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비계속기준의 경우 연금개혁법 개정 이전까지 1983년의 단체연금생명표를 적용하였으나 이후에는 평균수명연장을 반영하는 RP-2000 생명표(RP-2000 Mortality table)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규모가 큰 제도일 경우 다른 사망률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일정한 규모이상이고 설립년도가 일정기간 이상이면 특정한 사망률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망률에 기업의 특성과 일반적인 사망률 추세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때 연금계리사는 재무성에서 작성한 예정사망률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망률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평가일 7개월 전 재무성에 경험사망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 기업이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모든 제도에 동일한 예정사망률을 사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 퇴직인 경우에는 다른 경험사망률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망의 실적 및 예상에 근거한 비율을 합성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즉 ① 가입자는 1.0 이상을 적용¹⁷⁾ ②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은 0.9~1.0이하 적용 ③ 여자이며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은 0.85~1.0 이하 적용 ④ 장해급여금의 수급자는 1.0이상 적용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예정이율과 마찬가지로 부담금 산출 예정사망률, 최소적립금 산출 예정사망률, 적립상한액 산출 예정사망률 등 3가지로 나누어 적용하고 우리나라보다 구체적인 구분을 통해 예정사망률을 산출하고 있다.

17) 가입자에게는 재무성에서 제시한 예정사망율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3) 예정탈퇴율

일본의 경우 예정탈퇴율은 가입자 탈퇴의 실적 및 예상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상퇴직급여 산정시 기초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적용지표와 실적의 예측에 따라 사업주가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② 일시금 선택률 및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노령연금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일시금 선택상황 및 그 예측을 바탕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한다. ③ 공적연금의 장애발생률을 보정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경험데이터 사용시 무리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단, 장애급여금이 노령급여금 및 탈퇴일시금, 자본과 유사하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모델 계산기초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과거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② 탈퇴율, 승급지수 등 계산기초율을 합리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동종기업이나 유사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계산기초율, 업종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계산기초율 또는 해당 계산기초율을 합리적으로 보정한 계산기초율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적절한 계산기초율의 선정을 연금계리사 또는 연금사업자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이 연금계리에 의한 시산과정보다는 계산기초율을 통해 연금계리업무의 올바른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사망률이나 부담금산출이율과 같은 핵심 계산기초율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소한 10년에 한번 이상 새로운 생명표로 개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사망률의 경우 건강체 재직자, 건강체 퇴직자, 장애 퇴직자 등을 업종별 또는 상품별로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연장을 미리 예상하여 반영하는 3차원적 생명표인 세대별 생명표나 그에 상응하는 생명표사용을 법적으로 강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입자와 유족의 성별 및 연령에 관한 사망률로서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기준사망률을 사용하고 있다. 부담금 산출이율의 경우 적용에 있어서 선진국은 선진근거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회계기준규정과도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계속기준 부담금 산출은 퇴직연금자산의 장기적인 기대수익률을 이자율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비계속기준 부담금 산출의 경우 퇴직부채와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우량회사채들의 이자율을 만기별로 표시한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나 그에 상응하는 단기, 중기, 장기 기간별 3가지 수익률,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단일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타 계산기초율에 대해서 미국은 연금계리사의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계산기초율의 개별적 적정성과 총체적 적정성, 그리고 계산기초율 간의 일관성을 연금계리사가 담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계산기초율 선정요건과도 일치한다. 일본에서는 예정탈퇴율의 적용시 가입자 탈퇴실적 및 예상에 근거해 정해진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외 계산기초율은 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제도)에 있어서의 실적 및 예상에 근거해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1) 예정이자율

예정이율은 현재의 연금재정의 상태 및 부담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나라에서는 ① 부담금 산출이율 ② 재정검증 산출이율로 이원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먼저 부담금 산출이율의 경우 적립금 운용수익 등 장기에측에 기초한 노동부에서 규정한 이율(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증권협회가 발표하는 10년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과 3년만기 회사채(장외, AA-)의 36개월 평균수익률의 합을 2로 나눈 값)에서 1.00%p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평균화된 부담금의 납입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정검증 산출이율 또한 부담금 산출이율과 마찬가지로 장기시장예측에 적합한 이율로써 적립금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이율로 노동부에서 정한 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2) 예정사망률

우리나라는 예정사망률을 성별, 연령별로 산출하고 있으며 가입자와 연금수급자간의 사망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예정사망률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자의 예정사망률이외에 연금수급자간의 예정사망률도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예정사망률의 산출 대상이 되는 단체는 연금제도에 가입한 집단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경험통계를 기초통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사망률을 보정하여 퇴직연금사망률을 사용하고 있다. 산출방식은 먼저 기준사망률로 선택된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개선율을 결정하고 그 후 개선율이 반영된 장래사망률은 사망률 곡선의 평활을 제고하기 위한 보정기법과 기초통계의 부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외기법을 통해 사망률을 산출하게 된다. 이에 반해 연금사망률은 개인연금사망률을 사용하고 있다. 즉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선택하여 종신연금을 받는 가입자의 사망수준은 개인연금의 사망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개인연금사망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부 신고 규약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립금 수준에 적용되는 사망률”은 300명 미만 또는 이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예정이율, 임금상승률 그리고 퇴직률에 대한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규약상 퇴직률은 명확한 규정이 없이 “최근 3년간의 퇴직률의 평균”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률”을 적용하고 있다.

3) 예정퇴직률

소규모 단체와 같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힘든 단체는 참조퇴직률을 적용하며, 계약단체의 규모가 크고 과거 3년 이상의 퇴직관련 자료가 구비된 단체에 대해서는 가입단체에 맞는 경험퇴직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참조퇴직률 산출방식은 산출된 기초 퇴직률에 안전할증을 부과한 뒤 마지막으로 보정을 통해 인접연령간의 급격한 퇴직률 변동요인을 제거하여 평활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산출이 완료된다. 경험퇴직률 산출방식은 산출일 현재의 계약단체 가입자명부와 직전 3년 이상의 퇴직관련 자료가 명기된 퇴직자명부가 기존 통계자료가 되며, 해당기간에 급격한 퇴직자의 변동이 발생한 연도는 제거된 뒤 산출된다. 또한 근퇴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근퇴법 시행규칙 제10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의하면 기타 계산기초율은 사용자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한 계산기초율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①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합병 및 분사로 인한 경우 제외) ②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 ③ 과거 통계가 장래통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④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 등에 해당될 때에는 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계산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충부담금(과거근무에 발생하는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에 과거근무에 의한 급여가 산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진입 관련 규제

가. 외국 규제

1) 등록요건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금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즉 인적·물적·재무건전성 요건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퇴직연금의 관리에 있어서 몇몇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ERISA가 금융기관의 요건이나 역할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연금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고, 연금사업자가 가능한 금융회사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확정각출연금법에 의하면, 운용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신용금고, 신용금고연합회, 노동금고, 노동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농림중앙금고, 상공업조합중앙금고,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어업협동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회, 수

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면, 주무장관이 연금사업자로서 적절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표 III-2>참조).

<표 III-2> 연금사업자 등록 거부 사유

제91조(등록의거부) ① 주무장관은 등록신청자(운용관리업무)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신청서나 그 첨부서류 중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아닌 자 2. 등록이 취소되었고 그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3. 동법, 후생연금보험법, 기타정령에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거나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4. 사업이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당해 사업에 관계되는 손실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관리업의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법인 5. 회사 임원 중에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전 30일 이내에 당해 취소에 관계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관리기관의 임원이었던 자로 당해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또한 어느 정도의 인적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대로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 관련법에서 연금계리 개념에 입각하여 급부의 설계, 부금액의 산정 및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계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느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인적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96조(연금계리)에 의하면 “사업주 등은 적정한 연금계리에 의거하여 급부의 설계, 부금액의 산정

및 결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97조(연금계리관계서류의 연금계리인에 의한 확인)에서는 “사업주 등이 후생노동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금계리에 관한 업무서류는 적정한 연금계리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있음을 연금계리인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등에 보다 엄격한 인적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계약요건

일본의 확정금부기업연금법 제65조(사업주의 적립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약)에 의하면 사업주는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금융회사와 신탁계약, 생명보험계약,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신탁회사(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 포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탁계약 ② 생명보험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③ 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을 지구로 하고 농협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중 생명공제사업을 하는 것에 한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신탁계약에 관계되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고문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탁회사, 생명보험사,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투자고문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계약, 생명보험 및 생명공제계약,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에 의한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탁계약은 신탁기금의 운영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산운영(In-House Management)형과 보험사를 제외한 투자회사에 위탁되는 형태이다. ERISA는 퇴직연금자산의 운영을 신탁할 수 있는 적격수탁자는 ① 1940년 투자자문법에 의해 등록된 투자자문회사 ② 동법에 의한 은행이며, 수탁된 자금은 신탁제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며 주식, 채권, 모기지(mortgage), 부동산 등에 투자 운용된다. 퇴직연금자산의 신탁기관별 분포는 신탁제도형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운용대상은 신탁형의 경우 주식, 채권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험계약은 생명보험회사가 수탁기관이 되는 것으로서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이 일반패키지 형태로 계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금이 일반계정으로 운용될 경우 보험자산 전체의 투자구성에 따라서 채권, 모기지가 중심이 되고, 구분계리로 운용이 될 경우는 주식과 채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우리나라

1) 등록요건

진입규제는 연금사업자가 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재무건전성 요건 및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연금사업자 등록요건(기준) 등과 같은 규제가 대표적인 진입규제에 해당된다. 진입규제를 통해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본요건을 부과하여 위험추구행위나 업무태만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연금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탁자들이 자본요건이외에도 물적·인적요건 등 퇴직연금 영위에 요구되는 사전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부실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근로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사업자 등록요건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인적·물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인적·물적요건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수권조항을 명시(영§13②)하고 있다(<표 III-3>참조).

첫째,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은행은 BIS비율 8% 이상,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보험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자산운용사는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150% 이상이 되어야만 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인적요건으로 운용관리기관에 대한 연금계리·자산운용·전산업무 전

문인력 요건과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전산업무 전문인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확정기여형제도)만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연금계리 전문인력 요건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연금계리 전문인력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보험계리사로서 보험계리업무 또는 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 소속으로 금융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퇴직일시금신탁·퇴직보험업무 또는 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에서 금융상품개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산인력은 전산설비의 운영·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다음 각 요건 즉 ① 증권관계기관 등¹⁸⁾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운용 전문업무¹⁹⁾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공인회계사로 증권관계기관 등에서 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간접투자재산 운용을 업으로 하며,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간접투자재산 운용 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운용 전문인력) ⑤ 증권관계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업분석·투자자문·투자일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⑥ 한국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증권분석 전문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증권분석사) ⑦ 기획재정부장관이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자산설계 전문인력)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연금사업자 및 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각 인적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최소한 1명 이상 두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연금계리인력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퇴직연금업무 수행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며, 전산인력은 전산설비 운용·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8)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등록한 자 및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기관 전체를 포괄한다.

19) 간접투자재산(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 또는 운용규모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1,000억 원) 이상인 고유재산을 투자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이다.

셋째, 물적 요건으로 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에 대해 전산기기 구비, 전산기기 운영 및 설치환경에 대해 각각의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① 전산기기 : 기록관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메모리 및 내·외부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장애에 대비하여 하드웨어·통신 백업(backup)장치 및 장애 복구시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를 구비 ② 전산기기 운영 : 기록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자료 관리방안 마련, 비상계획 수립 및 백업 실시, 보안시스템 구비 등 ③ 전산기기 설치환경 :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곳에 전용구역을 마련하여 전산기기를 설치, 비상전원 공급 및 항온항습장치·소화장치 마련,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III-3> 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연금사업자 등록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재무건전성 감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금융위원회) · 자산운용회사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150%이상, - 보험회사 :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 은행 :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증권 :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이상
인적 요건	운영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적 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 근퇴법 및 시행령, 2008

특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취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연금사업자 등록요건 이외에 투자적격 신용등급 이상의 기관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국내외 신용평가기관²⁰⁾의 신용평가등급기준이 BBB- 이상일 것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

20) 신용평가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적격 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을 의미한다.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이며, 적격 국제신용평가기관은 ① Standard & Poor's Division of the McGraw Hill Companies, Inc. ②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③ Fitch, Inc ④ A.M. Best Co

다. 보험회사 및 증권사의 경우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었으나 신탁업 겸영을 위해 연금사업자 등록요건보다 높은 재무건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으로 적기 시정 조치 대상 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요건

근퇴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연금사업자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근퇴법은 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영되는 신탁계약 또는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보험계약 방법에 의해 자산관리업무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신탁계약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신탁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근퇴법에서는 수탁자인 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손실 보장을 약속하거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표 III-4>참조).

<표 III-4> 근퇴법상 신탁계약 방식과 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구 분	근퇴법	동법 시행령
신탁계약에의한특정금전신탁	○ 자산관리업무 수행(제16조 제2항)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시행령 제15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연금사업자책무	○ 연금사업자의 책무(제20조 제3항) -계약 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1호)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2호)	○ 연금사업자 금지행위(제20조)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1호)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2호)

우리나라는 신탁계약에 대해 은행의 자기은행 예금(이하 자행예금) 운용을 엄격히 금지해 오다가 2005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자행예금 운용을 허용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신탁법제는 신탁제도의 원리에 입각하여 신탁겸영금융기관이 자행예금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적 태도를 취해왔으나 2005년 11월 자행예금에 대해 예외를 두도록 하는 「신탁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감독규정은 「근퇴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행예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²¹⁾ 신탁업법을 계승한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기거래 즉,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령에서는 예외를 두는 등 이 부분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6항에서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09조 4항에서는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 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근퇴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였다.

에서 법률과 대통령령이 상호 충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동법 대통령령은 근퇴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그러므로 자산관리업무와 신탁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은행은 이를 근거로 신탁계약의 특정금전신탁을 자기은행의 예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III-5> 신탁업감독규정 개정(2005.11.25) 전후 비교표

개정전	개정후	비 고
제10조의3(예금 및 금전채권 매입의 구체적 범위) ①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의3(예금 및 금전채권 매입의 구체적 범위) ①"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신탁겸영금융기관이 이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계좌별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원리금보장이 필요한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한하여 자행예금 허용

즉 근퇴법은 퇴직연금의 수탁자산을 고유자산과 신탁자산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 퇴직연금계약을 자행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규정, 신탁자금 운용 제한 등 신탁법규의 다양한 행위규제와도 상반되고 있다. 자행예금을 통한 퇴직연금의 운용은 근퇴법 및 기존 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를 야기 시키고 금융기관간의 차별규제 문제 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에 의해 자산관리업무를 하도록 계약요건을 두고 있으나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허용으로 인하여 선진국의 신탁계약 특성과는 괴리가 큰 계약요건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기여 관련 규제

가. 외국 규제

미국은 퇴직연금 가입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담주체는 근로자이고 기업은 단지 추가로 부담을 보조해 주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가입자의 가입여부를 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1년 이상 근속, 21세 이상의 전 근로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납부주체는 기업이고 개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입 대상자는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남자근로자나 여자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차별적 조항은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세제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의 상한액을 15,000달러까지 인정(2006년 기준)하는데 반해, 개인퇴직계좌(IRA)에서는 2,000달러 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급여생활자에게 세제우대의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조치이다.

<표 III-6> 미·일의 기여규제(DC형기준)

		미 국	일 본(기업형)
기 여 금	부 담	근로자 부담 (기업은 추가적 보조 대부분)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 개인 납부 불인정)
	기 여	매 월	매월(DB는 연 1회이상 정기적)
	현 물 기 여	가 능	불가능(DB는 가능)
	기여금 상 한	근로자 납부: 연 1만 5천달러 사용자납부:(급여·근로자납부) · 15%	근로자납부: 연21만6천 엔~43만2천 엔 자영업자(개인형): 연 81만 6천 엔

이에 반해 일본은 미국과 반대로 급여생활자의 상한 금액은 연간 21만 6천 엔~43만 2천 엔인 것에 비해서,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개인형은 연간 81만 6천 엔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는 급여생활자가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에서 세제우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격차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식 등에 의한 현물 기여가 가능하지만 일본의 DC형 퇴직연금에서는 현물기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가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되, 부담금의 상한 설정 등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입자의 가입여부를 개인의사에 맡기면서 가입자 중심의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차원에서 가입자 부담액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는 등 시장기능에 의한 자기책임원칙(자율과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가입자의 자율성보다 노사합의 존중,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여금(부담금)의 납입주체는 기업이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자 개인이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확정기여형제도에 한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제도는 연간 임금총액(평균임금 산정항목을 토대로 산정)의 1/12이상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확정급여형제도는 퇴직급여 예상액(계속, 비계속 기준부채 중 큰 것)의 70% 이상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다만 가입자의 탈퇴시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미납부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퇴법 개정안은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근퇴법(제13조 제2호 가목,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확정기여형제도와 10인 미만 사업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에 있어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지만, 사용자가 기여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여금 납부 지연기간동안 가입자가 운용수익을 손해 보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납입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기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0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제4호 단서).

<표 III-7> 퇴직연금 기여규제

		세 부 내 용
각 출 금	부담	전액 사용자부담(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일부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DC, IRA)
	기여	연 1회 이상 정기적
	현물기여	- 현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금액 · 그 외에 해당사업의 주식 등으로 추가 부담
	기여금상한	없음(기여금 하한액만 존재)

또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며, 그 외에 해당사업의 주식 등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주식 등과 같은 현물출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근퇴법상 기여금 상한과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4. 특징 및 시사점

퇴직연금제도 도입관련 규제 특징 및 시사점을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구조, 기업의 자금여력 등 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계산기초율 산정을 연금계리사 등이 자율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규제당국에 의해 제시한

계산기초율 산정 규정에 기초하여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최소적립금 산출이율 등처럼 건전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산기초율은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과 장애퇴직자 사망률 등 다양한 퇴직연금 사망률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사망률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예정이율이 다양화되지 않고 퇴직연금사망률로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입장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진입 관련 규제측면을 볼 때 ①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 엄격한 인적요건(연금계리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적·물적·재무건전성 요건 모두 느슨한 규제체계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어느 정도의 인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계리인력이 아닌 비전문가도 인적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연금사업자의 적절성을 심사·검증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등록요건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미국 등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신탁계약에서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허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신탁계약이라는 본래 특성에 맞게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사업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기여 관련 규제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부담금 기여의 주체가 근로자인 반면, 일본은 기여 주체가 기업이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기여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물기여는 인정하면서도 기여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최대한 자율은 인정하되, 이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지우도록 하는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요율규제, 진입규제, 기여규제 등과 같은 퇴직연금 도입관련 규

제를 종합하여 볼 때 각국마다 규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탄력적인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수급권과 연금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 상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IV. 퇴직연금제도 운용 관련 규제

1.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가. 외국 규제

1) 퇴직연금 지배구조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퇴직 연금자산을 누가 소유하고 소유한 연금자산을 누구에게 위탁하는가 등의 위탁과 수탁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 소유자 본인이 직접 연금자산을 운용, 관리하지 않고 위탁하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 지배구조와 유사한 형태이며 소유와 경영 분리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배구조보다 이해 당사자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즉 퇴직연금 지배구조에 의한 이익 상충의 문제는 연금지급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간 이익 상충 해소와 수급권 보장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연금제도의 안정을 위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에는 계약형, 기금형, 회사형 등 3가지 형태의 지배구조가 있다. 계약형은 특정 금융회사에 완전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이고 기금형은 회사에서 독립된 연기금을 신탁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이며, 회사형은 산업군별로 회사형태를 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림 IV-1> 기금형 제도와 계약형 제도 비교



계약형은 금융회사가 모든 절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금운용감독이 용이한 반면,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연금계약이 변경될 수 있어 근로자와의 이익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금형은 기금 운영 정책을 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실제 운용 등은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회사형은 산업군별로 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연금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에서 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퇴직연금 관련 감시기능은 법체계와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선택한 퇴직연금의 운영목적과 감시 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이해관계자간의 이익 상충 문제는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서 걸쳐 발생하고 있어 퇴직연금 감시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감시의 수단도 수탁자책임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에서 제3자적 감시기능의 강화, 보고 및 통지의 의무 강화 등 시장 기능에 의한 감시로 전환되고 있다. 감시의 대상도 수탁기관에서 수탁자로 확대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 중심을 두고 직접 감시 시스템에서 자율적 감시 체계로 개선되고 있다.

2) 수탁자의 정의 및 책임

가) 수탁자의 정의

수탁자는 신탁법에 근거한 것으로 영국, 미국에서 기원한 제도이다. 신탁법의 기본 원칙은 신탁자산을 자기소유자산이나 다른 신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모든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신탁을 연기금에 대한 유일한 법적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하여 사외 유보시키고 연금자산의 보유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자산을 관리하게 한다. 지명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출연 받은 연금자산의 운용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연금자산은 사용자의 파산리스크로부터 분리되어 장기간 급부지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으며 세제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연금자산관리를 위해 이용되어 왔다.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모든 연기금이 연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이나 운영자(administer) 즉, 수탁자를 둘 것을 요구한다. 집행기관이나 운영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재량권(discretion)을 가지고 있거나 제도의 자산을 통제(control)할 경우에는 행사하는 재량권이나 통제의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지위는 당사자의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서의 역할에 기초한 개념이다. 퇴직연금제도 집행기관은 개인 또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으며, 독립적인 법인체인 금융회사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투자자문사, 제도의 관리를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모든 개인들, 제도 운영위원회의 모든 구성원, 위원회의 대표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 회계사, 연금계리사 등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행동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의 복잡화 등에 의한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활용이 확대되고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영미에서는 오늘날 신탁 수탁자 이외에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타인을 위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전문적 능력을 제공하는 사람”에게까지 신탁법리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계약 법리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²²⁾ 또

한, 운용상담사 및 연금계리사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을 통제 할 수 있는 경우 수탁자에 해당한다.²²⁾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가 수탁자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들이 제도에 대한 재량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나) 수탁자의 범위

1974년 제정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수탁자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ERISA법에서는 기금운영에 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 수탁자이며, 수수료를 받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우도 수탁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IV-1> 수탁자의 범위

국 가	미국, 영국	일본
내 용	포괄적으로 규정 (지명 및 신탁수탁자, 투자매니저, 외부전문가, 사용자 등)	사용자, 기금, 운용 및 자산관리기관, 연금컨설턴트 등

ERISA법상의 수탁자범위를 보면 ① 연금운영에 재량권 또는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 ② 연금자산에 대한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연금자산운용 등에 관하여 보수를 받고 조언하는 자 ④ 외부전문기관(펀드매니저, 연금컨설팅 등) 등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이외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관련자 모두를 수탁자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수탁자 배상책임을 지는 수탁자범주에는 직역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고용되어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편

22) 日本企業年金聯合会(<http://www.pfa.or.jp/jigy/shuppanbutsu/handbook/gaiyo/gaiyo02.html>)

23) 日本企業年金聯合会(<http://www.pfa.or.jp/jigy/shuppanbutsu/handbook/gaiyo/gaiyo06.html>)

드매니저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 회사, 선임된 근로자(elected employee), 또는 근로자대표, 복수사용자 연금플랜인 경우 연금플랜의 간사기업도 수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금신탁의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최소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회사(a company)가 된다. 법인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수탁자는 형식상 법인이 되지만, 실제 수탁자의 결정을 행하는 주체는 법인수탁자의 이사회가 된다. 따라서 개인수탁자에 비해 법인수탁자의 이사는 책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법인수탁자의 이사가 수익자의 책임추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산운용을 의뢰한 수익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동 및 조언을 하는 전문능력을 지닌 자를 수탁자로 보고, 사용자, 운용 및 자산관리기관, 컨설턴트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 수탁자책임

퇴직연금에서 수탁자책임이란 연금제도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책임을 말한다. 수탁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수익자를 대신하여 이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중요한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을 두고 있다. 연기금의 목표는 가입자 및 수익자에게 약속된 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책임의 상당부분은 연기금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다.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는 투자목표, 자산구성 등 주로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불확실한 금융·경제환경에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재량권이 필요하다. 연기금 운용에 필요한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수탁자책임은 영국과 미국 등 앵글로 색슨계 국가의 신탁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탁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자로 지명된 모든 주체는 제도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것, 의무를 신중하게 수행할 것, 연금제도 규정을 준수할 것, 분산투자할 것, 합리적인 경비를 집행

할 것 등과 같은 책임을 진 자로 신중한 업무수행은 수탁자의 핵심책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신중함이란 의사결정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²⁴⁾

미국의 경우 수탁자책임에 대해 1974년 이전에는 전적으로 판례법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ERISA법의 제정으로 엄격한 성문법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충실의무,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분리관리의무, 분산투자자의무, 문서준수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중 특히 중요한 의무는 충실의무와 주의의무이며, 다른 의무는 충실의무나 주의의무로부터 파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분리관리의무는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의 분리 및 신탁재산 상호간의 분리를 하는 의무이지만 이것은 충실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²⁵⁾ 영국은 여전히 판례법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1995년 연금법에 수탁자책임 규정이 설정되어 판례법과 병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영·미식의 '신중한 관리자의 주의의무(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탁자책임 규정의 명문화가 2002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표 IV-2> 수탁자책임의 법제

	미 국	영 국	일 본
법 제	성문법	판례법, 성문법	성문법
근 거	ERISA법	연금법(95년)	연금3법
기 준	수탁자책임 규정 위반		

자료 : 이상우·류건식, 「퇴직연금 수탁자책임과 제재제도」, 『2009년도 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세미나자료』, 2009. 8.

즉, 일본은 2000년 제정된 공적연금의 자주운용관련법, 2001년 6월에 제정된 확정급부기업연금법 및 확정각출연금법은 연금제도 내부자이외에 운용기관(신탁은행, 생명보험사, 투자자문회사 등)의 수탁자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⁶⁾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법에 의하면 연기금자산에

24) 류건식·이경희(2007), PP. 23~24.

25) 日本企業年金聯合會(<http://www.pfa.or.jp/jigyo/shuppanbutsu/handbook/gaiyo/gaiyo05.html>)

26) 土浪 修(2002), P. 80.

대해서는 계약위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미국을 제외하고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탁자 의무 위반에 수탁자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의 자산을 부적절하게 활용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표 IV-3> ERISA법상의 수탁자 정의 및 의무

수탁자(fiduciary)에 대한 정의	
(1) 연금제도의 경영이나 자산구성에 관한 재량적 권한 및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	
(2) 연금의 자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수료 등 보수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자	
(3) 연금제도의 행정운영에 관하여 재량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위 (1),(2),(3)의 정의에 의하면 수탁자(trustee), 연금운영자(plan administration), 투자매니저(investment manager)등이 포함됨.	
수탁자 의무(fiduciary responsibilities)	
(1) 참가자와 수익자들의 이익을 주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2) 신중한 전문가와 같은 주의, 기술, 신중, 근면으로,	
(3) 대형손실을 막기 위하여 연금의 투자를 분산화함으로써	
(4) 그 연금을 규율하는 문서와 지침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ERISA법 404조)	
금지된 거래(prohibited transaction)	
(1) 연금과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간에 자산을 매각, 교환, 리스하는 행위	
(2) 연금과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3) 연금과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간에 재화, 용역, 시설의 제공	
(4) 연금과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에게 연금의 자산소득을 이전하거나 이해관계자(또는 비적격자)가 연금자산을 이용하는 것	
(5) 수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자산을 이용하는 것	
(6) 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거래당사자로부터 수탁자가 개인구좌로 대가를 받는 행위	
(7) 연금이 사용자 주식 또는 사용자 자산을 매입하는 것. 다만 ERISA법 407조에는 사용자 자산 또는 주식을 연금자산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ESOP의 경우에는 10%이상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고 있음.	
이해관계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정의	
ERISA에서는 이해관계자(party in interest), 내국세법전(IRC)에서는 비적격자(disqualified person)이라고 지칭. 다음과 같은 자들을 지칭함.	
①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에 근무하는 종업원, 관리자, 수탁자, 고문	
② 연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③ 연금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고용주
④ 연금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이 속해 있는 종업원 단체
⑤ 연금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이 속해 있는 회사, 단체, 파트너쉽 지분의 50% 소유자
⑥ ①~⑤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⑦ ①~⑤에 해당하는 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파트너쉽, 재단
⑧ ②~⑤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임원 또는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⑨ ②~⑤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10% 이상 지분을 가진 파트너
수탁자 의무 및 금지된 거래 규정 위반시 벌칙
- 수탁자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연금에 끼친 손해를 복원시켜야 하며, 위반한 수탁자는 교체(제거)될 수 있음.
- ERISA법상 금지된 거래를 한 경우 수탁자 의무 위반시 벌칙과 같음.
IRC 규정상 금지된 거래를 한 경우 15%(기한후 10%)의 벌칙세 부과

자료 : 이상률, 『세제추면에서 본 미국의 사적연금제도』, 재정경제부 세제실, 2001,, US Master Guide(2006)

3) 수탁자책임 규제특징

가) 미국

(1) 수탁자책임

1974년에 제정된 미국의 ERISA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수탁자를 정의하고 그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인 충실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분산투자의 무, 문서준수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²⁷⁾

27) ERISA법에서 수탁자는 ① 가입자·수익자의 이익의 실현과 플랜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②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며 ③ 플랜의 손해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도록 신중성을 가지고 다각적인 투자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V-4> ERISA법상의 수탁자책임 규정

구 분	내 용
목 적	연금자산의 부적절한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대 상	· 지명수탁자: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의 책임 부여 · 신탁수탁자: 보험계약을 제외한 연기금자산의 운용은 반드시 신탁계약이어야 하는데, 이 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독점적 지배권과 책임 부여 · 투자매니저: 지명수탁자에 임명된 투자자문, 은행, 보험사에서 운용되는 기금자산에 대해 책임부여
기 준	·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부와 관리비용 이외의 유용금지 ·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같은 정도의 문제에 정통하고 있는 수탁자가 동일한 특징과 목적을 가진 사업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의, 기술, 신중함과 근면함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 · 기금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배제하며, 대규모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산투자를 요구
별 칙	· 위반행위의 결과로서 전 손실에 대해 개인적 책임부과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익의 환원 · 금지거래에 대해서는 발생시부터 거래액에 대해 연 5%, 일정기간에 시정한 경우는 100%의 특별세부과

자료 : 이상우·류건식, 「퇴직연금 수탁자책임과 제재제도」, 『2009년도 한국 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세미나자료』, 2009. 8.

1830년 매사추세츠주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연유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선관주의의무), 즉 사려분별,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산을 운용하는 때에 사용하는 주의를 태만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 연기금의 자산을 신중하게 분산투자하도록 한 분산투자의무, 연기금이 정한 문서 및 투자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한 문서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ERISA법은 일방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인등의 거래를 규율하는 일련의 거래금지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금지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플랜설치기업의 유가증권과 부동산에 대한 10%를 상한으로 하는 투자를 인정하는 것도 명기하고 있다.

수탁자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수탁자는 개인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파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그가 획득한 이익을 전부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해관계당사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수탁자를 그 지위로부터 해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거래금지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추징과세에 의한 제제도 규정되어 있다. 특히 명확하게 연기금의 문서²⁸⁾로 되어 있는 것을 입수하고자 하지 않았거나 읽고 이해하고자 하지 않으면 수탁자책임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수탁자의 행위목적이 손해를 불러오거나 불성실하지 않더라도 수탁자가 기울이는 노력이 배타적 목적²⁹⁾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수탁자책임 위반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기금운용에 관여하는 자에게는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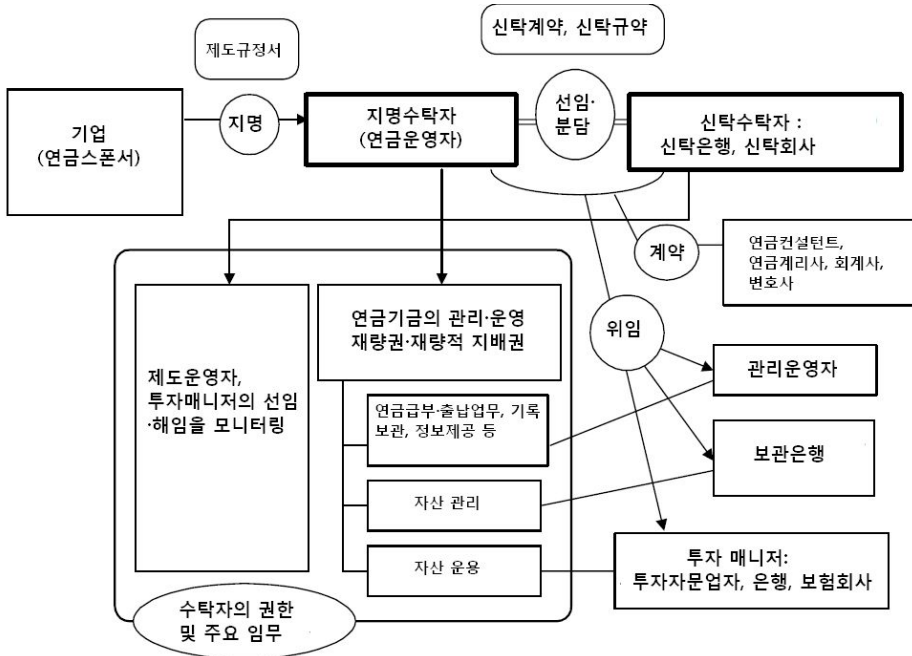
(2) 지명 또는 신탁수탁자 책임

퇴직연금의 설립에 해당해 제도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권한을 지는 자로서 지명된 수탁자, 즉 지명 수탁자(named fiduciary)제도가 있다. 플랜문서에는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플랜을 통제하고 운영·관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1인 이상의 지명수탁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일사용자플랜에서는 일반적으로 설치기업의 이사회가 지명수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기초한 복수사용자플랜에서는 합동수탁자위원회(joint board of trustees)가 지명수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지명수탁자는 수탁자임과 동시에 연금플랜의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신탁수탁자(trustee)는 신탁문서 또는 플랜문서(plan instrument)에서 지명되거나 지명수탁자인 자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하고, 지명 또는 임명을 수락한 경우 신탁수탁자는 플랜자산의 운영과 통제에 관하여 배타적인 권한 및 재량권을 갖게 된다.

28) 법률상 어떠한 것이 준수해야 하는 문서에 해당되는지가 분명치 않으나 판례에서는 신탁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외에 게시문서 및 부속문서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9) 배타적 목적(Exclusive Purpose Rule)은 연기금가입자 및 수익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연기금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있다.

<그림 IV-2> 미국 지명수탁자와 일반수탁자의 책임분담 위임 관계도



ERISA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급여플랜에서 지명수탁자의 지위는 영국 퇴직연금에서의 수탁자 지위와 비교될 수 있는 매우 중심적인 지위이다. 지명수탁자 선임은 근로자급여플랜의 설립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므로 지명수탁자의 선임이 강제화되어 있다.

지명수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연금자산의 운용책임에 있다. 지명수탁자는 보험계약 내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의 운용을 위탁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수탁자가 자산운용에 관한 배타적 권한과 최종적인 회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플랜설명서에서 명기한 경우에는 지명수탁자가 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투자방침 등을 지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플랜선정기업이 사장·재무담당부사장·감사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업내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투자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지명수탁자로 간주되고 신탁관리기관은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책임

을 면책 받게 된다. 또 플랜설명서에서 명기한 경우에는 지명수탁자가 투자관리자를 선임하여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지명수탁자는 투자자문인법(Investment Advisors Act 1940)하에서 등록된 적격 투자관리자를 신중히 선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투자관리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법적책임을 면책받고, 신탁관리기관도 자산운용에 관한 법적책임을 면책받게 된다.

이 경우에 플랜문서에서 투자관리자가 수탁자인 것을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지명수탁자는 최근 연금포트폴리오 이론에 기초하여 자산운용을 복수의 투자관리자에게 분할하여 투자의 다양화와 효율화, 위험의 분산화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복수의 투자관리자가 공동수탁자(co-fiduciary)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투자관리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보고 및 공개 의무

ERISA는 근로자급여플랜의 보고·공개 및 기록유지의무에 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플랜이 국세청, 노동부,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등을 포함한 연금관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근로자급여플랜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급여플랜이 과세·비과세 규정에 따를 것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 플랜은 플랜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수익자에게 플랜 및 급여에 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공개하여야 한다. 이 보고 및 공개의 요건은 모든 연금플랜 및 복지플랜에 적용된다.

(가) 보고·공개 및 정보의 제출·제공

근로자급여플랜의 관리자는 플랜의 적용을 받는 각 가입자와 플랜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각 수익자에게 플랜개요설명서, 연차보고서상의 각종 명세서와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가입자격발생 후 90일 이내 또는 수익자가 최초로 급여를 수령한 이후 90일 이내에, 플랜설치 후 120일 이내에, 수정·변동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개별플랜의 가입자와 수익자에게 플랜개요설명서와 연차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노동부장관에게 플랜개요설명서, 플랜설명서, 수정·변경사항, 연차보고서 및 종결·보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플랜연도 종결 후 120일 이내에 연차보고서, 플랜 설치후 120일 이내에 플랜설명서, 수정·변동이 행해진 이후 60일 이내에 그 수정변동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00명 미만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플랜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의한 간이연차보고서(simplified annual reports)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제1024조(a)).

사용주(연금플랜 설치자)는 국세청의 적격연금플랜인가를 위한 사전심사를 받기 위해, ① 플랜명칭 및 사용자의 성명·주소, ② 신탁약정서의 사본, ③ 생명보험사의 연금계약서 사본, ④ 플랜을 구성하는 기타 문서 사본, ⑤ 문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문서 사본, ⑥ 플랜개요설명서, ⑦ 고액급여근로자에 관한 급여·급여액·기여금액 기타의 정보, ⑧ 모든 근로자의 직무분류와 비적용자에 관한 정보, ⑨ 이해관계당사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미 행해져 있다는 것의 증거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이들 문서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적정한 플랜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연금플랜으로 인가하게 된다.

(나) 플랜(개요)설명서

근로자급여플랜에는 급여조건 등을 명시하여 가입자 및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플랜개요설명서(summary plan description)와 장관에게 제출되는 플랜개요설명서 및 플랜설명서(plan description)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플랜개요설명서는 「평균적인 플랜가입자와 수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당해 가입자와 수익자들이 플랜에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플랜설명서는 장관이 규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플랜개요설명서와 플랜설명서에는 법이 요구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즉 ① 플랜의 명칭과 관리 유형, ② 관리자·신탁수탁자 및 업무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적용단체협약의 관계규정에 대한 설명, ④ 가입과 급여의 자격에 관한 플랜요건, ⑤ 비상

실성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규정의 설명, ⑥ 비적격·무자격 또는 급여의 거부·상실을 초래하는 상황, ⑦ 플랜의 재원과 급여가 제공되는 단체의 신원, ⑧ 플랜연도 및 기록보존의 기준이 되는 회계연도, ⑨ 플랜에 의한 급여의 청구절차 및 ⑩ 플랜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 등이 그것이다.

특히 플랜설명서에는 ① 플랜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범위와 가입조건, ② 기여방식과 기여수준, ③ 급여형태와 급여방식, ④ 근로자의 기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비율의 결정방식, ⑤ 플랜가입자의 고용종결시 권리, ⑥ 사용자의 플랜변경·기여중단·종결에 관한 권리 및 이익, ⑦ 플랜종결에 따른 가입자의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플랜설명서의 작성의무는 행정적 감독과 규율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다) 연차보고서 제출

근로자연금플랜은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연차보고서는 100인 이상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100인 이하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3년에 2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플랜관리자는 플랜이 계속되는 기간중에는 각 회계연도 종료후 7개월 이내에 전년도 플랜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차보고서에는 ERISA가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의 재무제표와 연금계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에는 자산부채명세서 및 그 변동명세서, 일정기간 동안 행해진 중요한 변동을 포함한 플랜설명서, 기금적립정책 등의 변동사항, 급여의 변동사항 기타 당해 연금플랜의 재무제표를 충분히 공정하게 표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재무제표에는 통화가치로 평가되는 자산부채명세서, 영수증과 지출금의 명세서, 투자목적으로 보유된 모든 자산의 목록, 이해당사자와의 거래목록, 대출금 및 채무에 관한 목록, 임대차목록, 신탁이나 구분회계에 의하여 보유되는 자산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하여 별도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차보고서에는 플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 수탁자의 성명과

주소 및 재정적·연금계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가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통계숫자, 대차대조표, 수지보고서, 플랜운영보고 등과 관련되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외부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의견서와 더불어 전 자산의 3%를 초과하는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에 그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문서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차보고서와 별도로 연금계리사에 의하여 작성된 연금계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연금계리평가 일자, 기여금의 금액, 가입자 및 수탁자의 숫자, 적립된 자산의 통화가치 및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금자산의 합병·통합·이전이 있을 때에는 내국세입법에 의하여 자산변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이들 보고서를 처리한 경우 그 사본을 노동부 및 연금급부보증공사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기록 보존

플랜 및 플랜의 관리자는 서류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검증, 설명, 분류, 검토될 수 있는 필요한 기초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간이보고요건을 제외한 당해 서류가 제출된 일자 이후 6년 이상 동안 당해 기록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플랜관리자는 플랜가입자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는데, 즉 ① 성별, ② 생년월일, ③ 고용개시연월일, ④ 현재의 급여, ⑤ 부양가족 등 가입자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임의가입의 기여형 플랜에서는 근로자의 가입신청서 및 급여로부터의 기여금의 공제동의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플랜관리자는 플랜설명서·단체협약·신탁약정서·보험계약서 기타 플랜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 가입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연금자산의 분리관리

연금플랜 자산은 일반자산과는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금자산의 분리관리는 적격연금플랜 뿐만 아니라 비적격연금플랜에도 적용된다. 이 자

산분리는 은행 신탁부문 등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에 의한 관리,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RISA법은 이 점과 관련하여 연금플랜의 운영에 지배적 권한을 가지는 모든 자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수탁자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급여플랜의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신탁수탁자에 의한 신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급여플랜 중에 ① 보험회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증권으로 되어 있는 플랜의 특정자산, ② 보험회사의 특정자산 또는 보험회사에 의하여 보유되는 플랜의 특정자산, ③ 개인퇴직계정을 구성하는 플랜, ④ 장관이 신탁요건을 면제하는 플랜 등은 신탁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

(5) 금지거래 및 면제

플랜수탁자는 플랜과 이해당사자 사이에 ① 재산의 매매, 교환 또는 임대, ② 금전의 대출 또는 기타 신용의 확대, ③ 물품, 용역 또는 설비의 제공, ④ 이해당사자의 급여, 플랜자산의 이전 또는 사용 ⑤ 플랜을 위한 사용자 유가증권 또는 사용자부동산의 취득 등의 거래에 플랜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플랜수탁자는 ① 자신의 이익에 관하여 또는 자신의 회계를 위한 플랜자산의 거래, ② 플랜의 이익 또는 가입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 ③ 플랜자산에 관한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플랜과 거래하는 특정 당사자로부터 수탁자 자신의 개인계정에 대한 대가의 수령 등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관은 수탁자 또는 거래의 종류에 관하여 조건 또는 무조건으로 금지된 거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면제가 ①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 ② 플랜과 그 가입자 및 수익자에게 이익이 될 것, ③ 당해 플랜의 가입자 및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면제가 부여되기 전에 장관은 이해당사자에게 적정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³⁰⁾

나) 일본

일본의 경우 확정기여형제도는 사용자, 확정급여형제도는 사용자(규약형)와 기금이사(기금형)에게 업무전반의 충실의무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각출연금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연금운용방법 선정시 주의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를 지는 상대방의 경우 기금이사는 위임계약 상대방에 해당하는 기금, 사용자는 가입자 등이다.

<표 IV-5> 일본의 수탁자책임 규정

법 률 (대 상)	후생연금보험법 (후생연금기금)	확정각출 연 금 법 (기업형)	확정급여 기업연금법 (규약형)	확정급여 기업연금법 (기금형)
의 무 자	이사	사용자	사용자	이사
대상업무	적립금 관리운용	전반	전반	전반
일반적 의 무	충실의무 (주무장관 처분준수)	충실의무 (주무장관처분 준수) 운용방법 선정시 전문가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주무장관 처분 준수)
금지의무	政令 위임	구체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의 무 상대방	기금	가입자 등	가입자 등	기금

자료 : 土浪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險會社』, 2002, p.106.

일본의 확정각출연금법에서는 수탁자책임의 공통규정인 충실의무를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게 부여하였다. 동 법은 사용자와 연금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하고 폭넓은 형벌적 제재조치가 존재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것이 특징이다.

30) Patrick Purcell · Jeninfier Staman(2008), pp.26~36

(1) 사용자 수탁자책임

사용자 책무에는 투자교육 제공, 근로자 동의, 업무 위탁 등이 있으며, 법률은 이러한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주체인 사용자는 퇴직연금 시행에 앞서 노사간의 합의를 얻은 규약을 마련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업무를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적립금의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관리기관과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기여금은 사용자가 기여하며, 가입자 등이 그 운용의 지시를 하며, 가입자 등이 적절한 자산운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사용자에게 투자교육을 실시하는 책무를 지우고 있다.

확정각출연금법에서는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후생노동장관의 처분 및 기업형 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기업형연금 가입자 등을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43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이사나 후생연기금의 이사에게는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제43조 1항의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또는 확정급부기업연금법에서 사용자, 기금 이사 및 운용기관 등에게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정급부기업연금법 및 확정각출연금법에서의 충실의무는 퇴직연금의 관리·운영에 관련한 자에게 공통되는 수탁자책임 규정이다. 이외의 사용자에게는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 규약 변경시 미신고·허위신고,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개선 명령 및 이행 위반, 규약변경 통지위반, 기록관리에 정보 미통지, 기한내 신고 위반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주무장관은 사용자에게 보고 징수, 감독권한이 있고, 보고 거부 등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있다. 충실의무 등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업무개선 명령을 지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규약의 승인 취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운영관리기관이나 자산관리기관의 선정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해를 입은 가입자 등은 확정각출연금법(충실의무 등)에 근거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¹⁾

<표 IV-6> 일본의 사용자 수탁자책임

구 분		세부내용	조치사항
법 령 준 수 의 무	보고정수 및 임점검사 위반(기업)	기업이 주무장관에게 퇴직연금 실시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임점검사 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5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120)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한 때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할 경우(§6①)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 (§123)
	개선 명령 이행 위반	주무장관이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상황에 대해 보고를 청구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할 경우(사업주가 법령, 규약이나 주무장관의 처분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주의 연금 운영이 현저히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할 시(§52①)	
	규약 변경 통지 위반	IRA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주무장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58①)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사업주가 퇴직연금 관련 보고서를 기한내 작성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50)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124)
	기록관리에 정보 미통지	사업주가 퇴직연금 규약의 승인을 받을 때 기록관리기관에게 기한내 법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16①)	
	기한내 신고 위반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의 승인 효력을 상실할 경우 주무장관에게 IRA가입자 소정의 사항을 연합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47)	
문서 준수 의무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운영관리업무를 하는 사업주가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의 작성이나 보존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장부서류를 작성할 경우(§149)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 (§123)

자료 : 일본 確定釀出年金法令(2007) 요약

31) 土波修(2001.12), p.96

(2) 운영관리기관 수탁자책임

(가) 업무

운영관리업무란 퇴직연금 기록관련 업무(가입자에 관한 기록, 운용지시의 정리와 자산관리기관에의 통지, 급부의 재정) 및 운영관련업무의 선정과 가입자에게 제시,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사용자는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관리기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운영관리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교육에 대해서도 운영관리기관으로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관리업은 주무장관³²⁾의 등록제이며, 금융회사 이외의 기관 참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관리기관은 「가입자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대리인³³⁾」과 같다는 점에서 운영관리업무를 대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관리기관의 개별적인 의무로 운영관련업무를 하는 운영관리기관은 원금보장형상품을 한 개 이상 포함한 3개 이상의 운용방법을 선정·제시해야 하며, 운용방법의 선정은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선정·제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선정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며, 제시한 운용방법에 관한 이익의 예상하거나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가입자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의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지고 있지만 상품내용이나 과거 10년의 운용실적 등을 포함하거나 전문성에 근거하여 정보 제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2) 여기서 주무장관은 정령에 따라 후생노동장관 또는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4조 1 항, 시행령 제55조).

33) 후생노동성 연금국 퇴직연금국민연금기금과 「퇴직연금·국민연금 기금 등의 현상과 과제」 주간사회보장 2147호(2001년 8월6-13 일), p. 78

(나) 책임

확정기여형제도 운영관리기관은 법령에 근거한 주무장관의 처분 및 운영관리 계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해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용 금지, 금지 행위 등과 같은 의무를 두고 있다.

또한 운영관리기관에게는 손실부담 행위 금지, 특별이익 제공행위 금지, 추가적 이익제공 행위 금지 등과 같은 선관주의의무 등을 지우고 있다. 즉 운영관리기관은 그 업무의 수행에 임하여 오로지 가입자 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 운영관리기관으로서 기대되는 전문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지게된다. 또한 사용자와 가입자등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등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지 행위로서 손실 부담 계약이외에 이익상충 행위금지가 규정되고 있다. 이익상충은 운영관리기관이 상품제공기관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 자기 또는 가입자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특정한 운용의 방법을 가입자등에 대해 제시하는 것, 운영관리기관이 자사(또는 계열회사)의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선택 및 제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이익상충 행위라 할 수 있다. 충실의무의 원칙에 따라 선정 및 제시, 선정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입자에 대해 제시한 운용방법 중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³⁴⁾ 또한 운용방법과 관련되는 상품의 판매·권유를 하는 자가 운영관련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임원, 영업소장 제외). 다만 운영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운영관련업무(선정 및 제시 포함)를 실시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판매·권유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4) 운영관리기관이 운용방법을 추천 하는 것은 같은 기관이 가입자 입장에 서서 행동하는 대리인의 입장과 가입자 자기책임에 당연하게 반하는 것이다. 다만, 추천의 적절함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운용방법을 제공하는 기관과의 역할이나 책임분담의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土波 修(2001.12), p.98).

<표 IV-7> 일본 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 I

구 분		세부내용	조치사항
충실의무	중요사항 미고지, 부실고지	운영관리기관이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해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을 고지하는 행위 등(§100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119)
	손실부담의 금지위반	운영관리기관계약을 체결시 상대방에게 가입자 등의 손실의 전부·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할 경우 (§100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118)
주의의무	특별이익 제공 행위	운영관리계약시 상대방에게 가입자·거래 상대방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경우(§100②)	
	추가적 이익제공 금지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업무상 발생한 가입자 등의 손실의 전부·일부를 보상하거나 가입자등의 이익에 추가하기 위해 가입자·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3자를 시켜서 제공하는 행위(§100③)	
법령준수의무	미등록 영업행위	주무장관의 등록을 받지 않고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88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운영관리업을 부정한 수단으로 주무장관의 등록을 받은 경우(§88①)	
	명의대여 금지	운영관리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영관리업을 하게 할 경우(§95)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 행위	주무장관으로부터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에 반하여 운영관리업을 영위할 경우 (§104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119)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운영관리기관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 관련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89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120)

자료 : 일본 確定拠出年金法令集(2007) 요약

운영관리기관이 수탁자책임을 위반할 때에는 주무장관은 운영관리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고, 업무개선을 명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등록의 취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20만 엔 이하의 벌금,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V-8> 일본 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 II

구 분		세부내용	조치사항
법령 준수 의무	변경신고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등록신청서 변경 사항을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92①)	20만 엔 이하의 벌금(§121)
	운영개선 명령위반	주무장관은 운영관리기관의 업무에 있어 가입자 등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업무의 운영개선을 할 수 있는데, 운영관리기관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104)	
	기한내 신고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합병, 파산 등으로 등록 효력을 상실할 경우 주무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66①)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124)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주무장관에게 그 업무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임점검사 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10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120)
문서 준수 의무	영업소 표식 비치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시행령에서 정한 양식의 표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94①)	20만 엔 이하의 벌금(§121)
	의무자 이외의 자가 표식 게시	운영관리기관 이외의 자가 운영관리기관에 관한 표식 또는 유사 표식을 게시할 경우(§94②)	20만 엔 이하의 벌금(§121)
	열람거부 또는 허위기재	운영관리기관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가입자 등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기재가 있는 서류를 비치하거나 가입자 등에게 열람시킬 경우(§96)	20만 엔 이하의 벌금(§121)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운영관리기관이 그 업무의 장부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장부서류를 작성할 경우(§101)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기재	운영관리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10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120)

자료 : 일본 確定醵出年金法令集(2007) 요약

다) 영국

(1) 기금적립 관련 수탁자책임³⁵⁾

확정급여형제도의 연기금 관리자는 연금부채가 최종 임금과 연관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우발(contingent)부채를 갖고 있고 이러한 부채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채를 이행할 자산이 부족할 경우 적립부족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기금관리자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는 부담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투자실적의 부진을 이유로 관리자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대형 연금부정사건인 Maxwell사건을 계기로 1995년 연금법에서 확정급여형제도에 대해 최소적립요건(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부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보유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해 2004년 연금법(Pension Act 2004)에서는 MFR을 대체하는 새로운 적립요건(SSFS: Scheme Specific Funding Standard)을 도입하여 2005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목적은 책임준비금에 대응하는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전과 달리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적립을 요구하지 않고, 적립전략 수립시 제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적립과 관련된 수탁자책임으로는 ① 적립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② 재정재계산, ③ 계리보고서 작성, ④ 기여스케줄 작성, ⑤ 적립부족시 정상화계획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수탁자는 적립방식을 결정하고, 적립원칙보고서(SFP: Statement of Funding Principles)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적립원칙보고서에서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과 기간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수탁자는 사용된 가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립원칙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적립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탁자의 정책 ② 책임준비금 계산 방식 및 가정 ③ 할인율(자산의 기대수익률) ④ 연금 증가율

35) 류건식 · 이경희(2007), PP. 63~67.

⑤ 급여 인상률 ⑥ 사망률(향후 개선 감안) ⑦ 신규 가입 ⑧ 중도 탈퇴 ⑨ 퇴직 ⑩ 피부양자의 연령 차이 ⑪ 가입자 사망시 피부양자 급여의 비중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적립원칙보고서 외에 연기금 자산에 대한 투자원칙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투자원칙보고서는 연기금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지배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분산투자 정책, 투자 가능 자산, 서로 다른 투자항목간 균형, 리스크에 대한 성향, 리스크관리 절차와 리스크 측정 방법 및 기대수익, 투자 실현, 투자에 수반되는 투표권 행사(voting rights) 등을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새로운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에서는 연기금적립에 대한 연금계리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수탁자는 적립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금계리사의 자문을 구해야 하며, 연금계리사는 윤리규범(ethical code)을 준수해야 하며 책임준비금 평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수탁자로 하여금 재정재계산 주기가 3년일 경우 중간에 연금계리보고서(actuarial report)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종 재정재계산 실시 이후 책임준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건들을 분석한 보고서로서 보험계리사의 추정에 기반하여 작성하게 된다. 연금계리보고서는 재정재계산과 달리 일반적으로 상세한 개별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계리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연기금의 재정상태에 관한 개략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연금계리사는 책임준비금 계산과 자산의 시가평가를 위해 적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의 중대한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① 신규 가입자 등 기여 가입자에 의한 추가적인 급부 증가 ② 재량 또는 증액에 의한 급부액의 변동 ③ 제도의 유입 및 유출에 의한 중대한 변동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영국의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는 수탁자가 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해야 할 기여요율과 납입시기를 명시한 부담금납입계획서(schedule of contribution)를 작성해야 하며, 시행 전에 보험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납입계획서는 수탁자로 하여금 기여금이 기간 내에 지불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① 사용자의 기여

비율과 기한 ② 기여 가입자의 기여 비율과 기한 ③ 적립부족액 보전을 위한 추가 기여와 기한 ④ 관련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할당된 기여금과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부담금납입계획서는 연금계리사 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기여금의 납입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갖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수탁자가 연금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재정재계산 결과 적립액이 부족하다고 판정될 경우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화계획은 수탁자가 연금계리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작성하며, 사용자의 향후 영업계획, 퇴직시까지 잔여기간 등 제도가입자의 특성, 예금보장기구의 보험요율 등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화계획은 적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기여금액 및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중요 가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상화계획에는 계리적 가치평가 관련 내용, 즉 ① 자산가치 ② 이연 수급자와 기여 가입자로 구분한 책임준비금 ③ 연금급부에 대해 외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연금보험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추정 비용 ④ 책임준비금 계산시 사용된 방법 ⑤ 투자수익률, 퇴직전·후 연금증가율, 임금상승률, 기준일 현재 사망률 및 20년 후 사망률 등 책임준비금 계산시 사용한 주요 가정 등이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자산운용관련 수탁자책임

(가) 의무대상

자산운용사는 수탁자와 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탁자에 대해 계약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의무는 수탁자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산운용사에게 위임된 업무는 그 성질상 '투자재량'을 가지고 '가입자'의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가입자와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사

에 대해 취약한 지위를 갖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에게 충실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해 부과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충실의무가 수익자보호를 위해 수익자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나) 투자권한

연금플랜의 신탁약관과 규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탁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투자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산 처분 및 투자기회의 이용에 있어 최대한 재량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탁자로부터 투자운용권한을 위임받는 자산운용사의 투자권한도 매우 광범위하게 된다. 이러한 신탁설정문서에 의한 투자권한 부여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의 수탁자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투자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즉 수탁자는 연금플랜자산에 대해 수익자가 수익권 전부를 갖는 경우와 동일하게 투자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마치 수익자처럼 투자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권한도 매우 광범위하다.

3)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

연금사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금사업자를 선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연금사업자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연금계리사의 선임 등을 통해 연금사업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적절히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검증차원에서 책임준비금 등 연금계리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국세청 및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세청 및 노동부에서 정해진 원칙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중요한 검토항목이고, 통상 연금계리사에 의

한 검증절차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을 부적정하게 적립하였을 경우에 결산 감사의 견이 부적정하게 나타나게 되며, 이는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제도에 의해서 간접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퇴직연금의 재정검증을 위해 산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등에서 연금계리사 등을 고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³⁶⁾ 연금계리사는 1995년 연금법 제48조에 의해 연금감시자로서 역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⁷⁾, 또한 개별 연금의 재정을 상시 체크하여 연금재정악화를 조기발견, 사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계리사 등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퇴직연금감독기구, 퇴직연금감독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연금계리사 등으로 구성된 퇴직연금감독청은 수탁자의 해임 및 업무정지, 운영이 부적절한 퇴직연금에 대해 해산 또는 개선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즉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연금계리사 등이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퇴직연금감독청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즉시 서면보고토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연금계리사는 ① 연금플랜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사용될 가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② 정기적으로 자산 및 부채 가치를 평가하며 ③ 급부제공에 필요한 기여율(contribution rate)을 산정하고 ④ 연금재정에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퇴직연금감독기구에 서면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일본 또한 후생연기금 재정이 연금계리에 기초하여 운용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금계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금계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기금이 후생노동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금계리에 관한 서류에는 적정한 연금계리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연금계리사가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다.

36) 또한 수탁자는 개인 또는 법인을 연금의 외부감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연금법은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계리사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가) 미국

수탁자책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수탁자 개인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탁자가 획득한 이익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보호하거나 그 책임을 경감하는 수탁자간의 계약 자체를 모두 무효화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가 ERISA법의 규정을 위반시 노동부장관, 재무성과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등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급권을 가진 퇴직자, 연금수취인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V-9> 수탁자 배상책임보험과 신원보증보험의 비교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신원보증보험
가입형태	임의	강제
가입대상자	지명수탁자, 신탁수탁자, 투자매니저	지명수탁자(기금임원, 대의원, 감사등)
담보위험	수탁자 의무위반 - 경영상의 오류, 태만 - 사무착오 및 누락	부정행위에 의한 연금자산 손실분
보장한도	보험계약금액	연금자산의 10%

이는 개인의 경우 수탁자들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탁자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분석능력이 있는 정부관계자들이 연금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법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나 보험가입 대상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 하는 수탁자 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 도입·운용되고 있다.

<표 IV-10>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약관내용 및 특징

약 관	피보험자범위	담보손해(불법행위)	보상범위	면책위험
세 부 내 용	ERISA 법상에 규정한 수탁자	-ERISA법에 명시된 수탁 자의무 위반 -ERISA법적용을 받지 않 는 연금운영과 관련하 여 ERISA법 이외의 다 른 법령의 위반 -연금관리운용과 관련된 행정 관리상 착오 및 오류 -수탁자자격으로 수행한 직무로 수탁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벌금, 피보험자 의 고의에 의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음)	-계약으로 가중된 배 상책임 -기여금 미수 -수익자 지급액 -ERISA법에 따른 기 금 미적립 -부정행위 또는 사기 -사적이익의 취득 -의무보증보험 미가입 -기타 면책위험
약 관	방어의무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	구상권포기	개별적용
세 부 내 용	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 자에 제기된 배 상청구나 소송 에 대해 방어할 의무를 부담함.	-하나의 불법행위에 기인 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가 여러 보험기간에 걸 쳐 제기된 경우 1회의 배상청구로 간주하여 최 초의 배상청구가 제기된 보험증권상의 보상 한도 액을 적용함. -자기부담금 또한 이러한 모든 배상청구를 1회의 배상청구로 간주하여 1 회만 적용함.	-다른 전문 배상책임 보험종목과 달리 수 탁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짐. -단, 대부분 기업이 동 보험의 보험료를 연금 자산이 아닌 기업비 용으로 지급하기 때 문에 보험자는 구상 권을 행사하지 못하 는 것이 일반적임.	-이 조항은 수탁자 배 상책임보험증권에서 의 담보가 각각의 피 보험자에게 별개로 적용 됨을 규정하고 있음.

자료 : 土浪修(2002), p.7

또한 ERISA법은 수탁자가 관리하는 연금자산의 10%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최소 1천불, 최대 50만불 한도로 신원보증보험(Fidelity Bond)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원보증보험은 수탁자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연금자산이 부정행위에 인한 손실(예: 횡령, 유용 등)을 막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기금의 임원, 대의원, 감사 등 지명수탁자의 부정행위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장한도는 기금자산의 10%이다(<표 IV-9>참조).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전문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업계에서 통일하여 사용하는 표준약관은 제시된 바 없으며, Chubb, AIG 등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는 주요 손해보험사가 자사의 약관을 개발·사용하고 있다.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ERISA법상에 규정한 수탁자를 의미하며,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ERISA법상에 명시된 수탁자의무위반 ② 연금관리운용과 관련된 행정관리상의 착오 또는 오류 ③ 수탁자자격으로 수행한 직무 때문에 제기된 배상청구 등이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담보손해의 대상이 된다. 또한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보상한도로 보상하지만, 벌금,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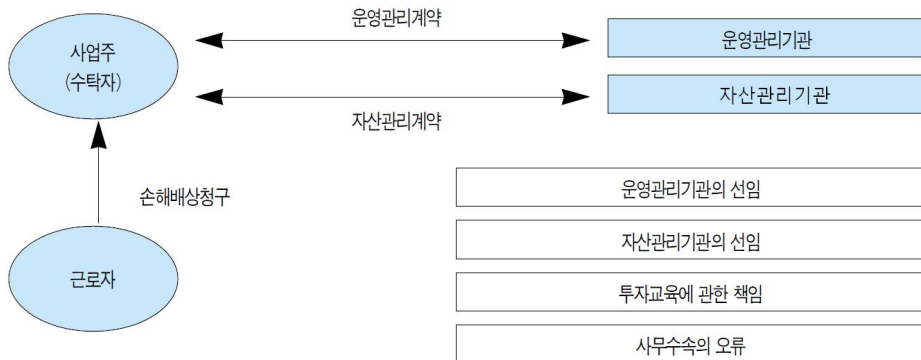
나) 일본

일본의 경우 2001년 확정기여형제도의 도입에 따라 손해보험사에서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예: 손보재팬 기업형 확정기여연금 사업주배상책임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와 기업형 연금규약을 체결하고 이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운영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용자(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① 운영관리기관의 선임 ② 자산관리기관의 선임 ③ 투자교육에 관한 책임 ④ 사무수속의 오류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38) 橋本基美(2000), pp. 6~9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탁자 배상책임보험(기업형 확정기여연금 사업주배상책임보험)은 확정기여형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수탁자)가 근로자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 인해 향후 피해를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V-3> 퇴직연금 수탁자배상책임 구조



자료 : 土浪修(2002), p.10

(1)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및 담보손해

일본의 손보재팬(Sonpo-Japan)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형 확정기여연금 사업주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되는 보상범위는 손해배상금,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구상권보전비용, 손해방지비용이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① 사업주가 충분한 투자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가입상품의 선택에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육이 불충분하였다고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② 자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가 충실하지 못하는 등 부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이로 인해 연금가입자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③ 운용관리기관이 선택한 상품이 수익률변동이 격심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운용에 실패(운용관리기관의

선정상의 오류)하여, 사업주에게 운영관리기관의 선정에 대한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④ 가입자 리스트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운용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면책대상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면책대상으로 ① 고의, 범죄행위, 인식된 법령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³⁹⁾으로 운용관리기관·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③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선정⁴⁰⁾함으로써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④ 피보험자 또는 운용관리기관이 보증 또는 약정한 운용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⑤ 사업주 보험료의 기여(기여되지 않은 경우 포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보험조건 및 보험금산출시 필요사항

사업주는 보험가입시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보상한도액 형태, 즉 ① 1사고·보험기간 중 3억 엔, ② 1사고·보험기간중 1억 엔, ③ 1사고·보험기간중 5,000만 엔 중에서 어느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면책금액은 1사고(공통) 10만 엔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산출은 “지급보험금 = 손해액(법률상의 손해배상금+변호사 비용등의 소송비용+구상권 보전비용+손해방지비용 - 면책금액)”의 산식에 의해 산출하고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보험금 산출(견적)시 필요한 사항은 ① 가입자 수, ② 확정기여연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비율, ③ 퇴직연금

39) 사업주와 운용관리기관·자산관리기관이 긴밀한 자본관계, 거래관계, 인적관계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관계를 근거로 수탁기관으로 선택되는 경우를 말한다.

40) 가입자에게 특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투자, 예탁변경 등을 장려하거나 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후생연기금 또는 적격연금)의 유무 ④ 확정기여연금의 자산잔고, ⑤ 운영관리기관·자산관리기관, ⑥ 투자교육의 실시상황 등으로 되어 있다.

<표 IV-11> 일본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주요내용

구 분	약관상의 주요내용
보상한도액	① 1사고·보험기간 중 : 3억 엔 ② 1사고·보험기간중 : 1억 엔 ③ 1사고·보험기간중 : 5,000만 엔 중에서 택일
면책금액	1사고(공통) : 10만 엔
보험기간	1년
보험금산출방법	지급보험금 = 손해액(법률상의 손해배상금+변호사 비용등의 소송비용+구상권 보전비용+손해방지비용 - 면책금액 (단, 보상 한도액을 상한으로 함)

자료 : 土浪修(2002), p.15

나. 우리나라

1) 사용자 수탁자책임 및 제재조치

사용자의 책무와 관련된 규정은 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에 설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료를 고의로 누락·작성하여 연금사업자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수탁자의무 중에서 충실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은 오로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사용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표 IV-12> 우리나라 사용자 수탁자책임 관련 규정

근퇴법	시행령
① 생략 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그 밖에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여 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의 충실의무 및 자료제출의무만을 사용자의 주된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사업자의 의무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에서 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사용자 책임과 의무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표 IV-13> 우리나라 사용자 수탁자책임 위반시 조치사항

구 분	세부내용	조치사항
퇴직금 기한내 지급 위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기한(14일 이내)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9)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31)
사업안의 차등 금지 위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법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4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32)
근로자 동의 위반	사용자가 제도 선택·변경시 노동조합원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4③)	5백만 원 이하의 벌금(§33)
근로자 불이익 행위 금지 위반	사용자가 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입장에서 불이익하게 변경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4④)	

교육 실시 위반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9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35)
다른 목적으로 계약 체결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19②)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35)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	사용자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19②)	

사용자가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7)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2) 연금사업자 수탁자책임 및 제재조치

근퇴법 및 동 시행령에 나타나고 있는 연금사업자 책무 및 감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사업자는 법 제15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16조(자산관리업무의 수행),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등에서 규정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연금사업자에게 계약체결상의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②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③ 특정한 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④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⁴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

<표 IV-14> 연금사업자 책임 관련 규정

근퇴법	시행령
제20조(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연금사업자는 이법, 이법에 의한 명령 및 제15조 제1항, 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특정한 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④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 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금사업자 금지행위)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2.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등

이와 같은 규정 속에서 리스크감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은 퇴직 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연금사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③과 ④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③의 규정이 범규준수리스크의 감독 측면에서, ④의 규정이 이익 상충행위 방지 즉 대리인 문제의 해소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연금사업자는 ①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②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③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④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수탁자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수탁자책임 중 충실의무, 주의의무, 개인정보관리 의무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리스크감독의 근간이 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연금사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 노동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의무는 정보제공 의무차원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연금사업자는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약관 등)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하는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 이들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보고의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여타 금융상품보고의무에 준하는 의무규정이다. 연금사업자가 수탁자책임 위반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IV-15> 우리나라 연금사업자 수탁자책임

구분	세부 내용	조치사항
계약 체결 거부	연금사업자가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20②)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5)
계약 체결강요 행위	연금사업자가 특정한 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20)	
근거 없는 판단 제공행위	연금사업자가 사용자·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20②)	
목적이외에 정보 이용 행위	연금사업자가 사용자·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20②)	
운용지시 정보 유출 행위	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0③)	
손실 부담 행위	운용관리기관이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20③)	
특별이익 제공약속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20③)	
개인정보 유출 행위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20③)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	운용관리기관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20③)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35)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위반	연금사업자가 법, 명령 또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①)	
취급 현황 미제출	연금사업자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노동부장관·금융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19②)	

2. 자산운용관련 규제

가. 외국 규제

1) 자산운용 가이드라인

2003년 OECD는 5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된 퇴직연금원칙에 대한 OECD 권고안(OECD Recommendation on Core Principles of Occupational Pension)을 확정하였으며 일부 핵심원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있다. 즉 첫째, 자산운용가이드라인 1은 선관주의의 원칙이다. OECD의 자산운용의 대원칙은 선관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 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IV-16> OECD 자산운용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원칙	세 부 내 용
가이드라인 1 (선관주의)	자산관리는 선관주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자산의 분산, 만기 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해야 함.
가이드라인 2 (연 기 금 자산평가)	① 연기금 평가에 대한 적절하고 공개적인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② 모든 자산은 시가 또는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시가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 가치를 동시에 공표하는 것을 권고함. ③ 회계, 보고, 계리, 적립을 위해 자산 가치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자산 가치 평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차이가 투명하게 나타나야 함. 다만 적절한 사유가 될 경우 계리와 적립을 위한 자산 평가는 평활화 기법이 적용될 수 있을 수 있음. ④ 자산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연기금 운용기관,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 연기금 가입 및 수급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가이드라인 3 (선관주의 기준)	① 연기금의 자산관리는 충분한 주의와 신의성실에 기초하여 관리되어 져야 함. ② 연금 계약 또는 연기금의 운용 기관과 다른 관련 주체들은 주의, 전문적 기술, 신의, 적절한 성실등과 같은 선관 주의가 적용되어야 함. ③ 연금 계약 또는 연기금의 운용 기관과 다른 관련 주체들은 연기금과 연금의 계약 및 수급자들에 충성의무를 짐. ④ 연기금의 운용기관은 자산 관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감시할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의 설치를 포함하는 자산 관리의 수행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연금계약 및 연금 자산 운용 기관은 법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가이드라인 4 (포트폴리오 제한)	① 투자 자산에 따라 분산 투자, 만기 관리, 위험 관리의 원칙에 합치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상한선을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비슷한 목적으로 허용 또는 추천 자산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일부자산은 엄격히 제한 할 수도 있음. 그러나 하한선을 두는 포트폴리오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② 적절한 분산투자, 자산과 부채의 매칭 또는 다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위험 관리 기법의 활용을 저해하는 포트폴리오 제한은 자체되어야 함. 자산과 부채 만기의 매칭은 중요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제도 차원에서 확립되어 있어야 함. ③ 자산별로 투자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는 연금 자산 또는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함. ④ 연금에 대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경제 주체에 대한 자기투자는 금지되거나 허용될 경우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⑤ 동일한 주체 및 그룹에 대한 투자는 연금금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 ⑥ 통화 매칭과 관련한 경우나 투자 자본에 대한 규정이 국가나 지역으로 제한된 경우 그리고 지정 수탁기관의 신탁 자산으로 위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금의 해외 투자에 대한 금지는 부적절함. ⑦ 파생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의 활용에 대해서는 효용과 부적절한 활용에 따르는 위험의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함. ⑧ 양적 포트폴리오 규제와 관련된 모든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게 연금 관리자의 능력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자산의 최적 분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되어야 함.
가이드라인 5 (투자정책)	① 자산 운용에 책임이 있는 주체는 전체 투자 정책을 공표하고 준수하여야 함. ② 투자 정책은 분명한 연금금의 투자 목적과 이를 위해 적절한 분산 및 위험 관리를 감안한 선관주의, 연금금의 장기적인 의무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의 법적 제한 등을 이룰 수 있는 규칙을 수립하여야 함. ③ 투자 정책은 연금금의 전략적인 자산 분배 전략(주요 투자 대상에 대한 장기 자산분배), 연금금과 각각의 투자 항목을 위한 전체 운용 목표 그리고 분배 및 운용 목적을 파악할 수단에 대한 규정을 최소한만 설정하여야 함. ④ 투자 정책은 자산-부채 매칭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⑤ 연금금 관리자와 기타 책임 주체가 정기적으로 투자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과정이 설정되어야 함. ⑥ 연금 계약자들이 투자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한 선택 대상을 제공하고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⑦ 투자정책의 실행 및 자산 운용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함.

자료 : OECD, *Draft Guidelines on Pension Fund Asset Management*, 2003.11.

2) 자산운용규제 유형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위탁시킬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규제로 충분하나 기금형으로 운용될 경우 개별 연기금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자산운용규제는 기금에 대한 양적규제를 하는 경우와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영국, 미국 등 앵글로 색슨국가에서는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에 따라 자율규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양적 규제를 하고 있다.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예로서는 기금운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감염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자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은 10%이내로 제한하거나 주식 투자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이다. 모든 OECD 회원 국가들에 있어서는 퇴직연기금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 정도는 다르지만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정급여형제도에 대해서는 양적규제를 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이외에는 양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근로자들이 투자리스크를 부담하고 그들의 관련 재무사항이 비공개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취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표 IV-17> 자율규제와 양적규제

자율규제(Prudent Man Rule)	양적 규제(Legal List Rule)
연금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사려 깊은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수탁자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연금운용의 투자대상자산 및 운용비율을 구체적으로 한정 열거, 그것을 준수하면 수탁자가 책임을 다하는 방식
기업연금기본법(ERISA, 연금법)	일본 5·3·3·2 규제 등

<표 IV-17>에서 보는 것처럼 종래 일본의 양적규제(Legal List Rule)와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에 입각한 자율규제(Prudent Man Rule)는 수탁자에게 채

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유연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자산운용규제 중 현재 중요한 과제는 해외투자의 문제와 함께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 대비 양적 규제방식 등 어느 것이 효율적인 가이다.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면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은 효율적인 내부통제기능이 이미 있는 나라에서는 쉽게 시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원칙은 주로 앵글로색슨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에서 주로 사용되며, 네덜란드에서도 사용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대륙 국가들은 투자에 대한 양적규제를 하고 있다. 자산운용규제는 크게 영·미로 대표되는 Prudent Man Rule과 종래 일본의 Legal List Rule에서 접근할 수 있다. Prudent Man Rule은 수탁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유연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가) 최소분산투자 규제⁴²⁾

법규상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투자한도(예: 부동산의 몇 %)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16개국, 최소분산투자규제 자체가 없는 국가가 9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대륙 국가는 최소분산투자규제를 시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영미 등은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선언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에 의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영미 등을 포함 11개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DB형에 대해서는 양적규제, DC형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IV-18> 참조).

42) 자세한 내용은 OECD(2003) 및 OECD(2007)을 참조

<표 IV-18> 연기금의 최소분산투자규제

구 분	해 당 국 가
법규상 규 정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16개국)
일반적 규 정	영국, 미국(2개국)
규 정 없 음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스웨덴(9개국)

자료 : OECD(2003) 및 OECD(2007)에 의거 작성

나) 자기투자규제

자기투자규제는 원칙적으로 충실의무(이익상충행위 금지) 등의 수탁자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사용자(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자기투자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체코 등 5개국은 원칙적으로 자기투자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기투자자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투자한도(예: 기업주자산의 10%이내)를 설정한 국가가 16개국에 이르고 있다. 자기투자규제가 없는 국가에서도 최근에는 자기투자규제의 필요성을 인식, 자기투자규제를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19> OECD 연기금의 자기투자규제

구 분	해당국가
자기 투자 금지	체코, 아이슬란드(단, 연기금가입자는 엄격한 규정하에 가능), 노르웨이(단, 기업주대출은 담보전제하에 20%이내 가능), 폴란드, 터키 (5개국)
자기 투자 한도 설정	호주(기업주자산 5%이내), 오스트리아(10%이내), 벨기에(15%이내), 캐나다(10%이내), 스페인(10%이내), 이탈리아(20%이내), 멕시코(5%이내, 특별한 경우 10%이내), 네덜란드(5%이내), 포르투갈(20%이내), 스위스(10%이내), 영국(5%이내), 미국(모든 DB형과 일부 DC형의 경우 10%이내), 핀란드(25%이내), 독일(5%이내), 덴마크(8%이내), 헝가리(10%이내) (16개국)
자기 투자 규제 없음	아일랜드(제한 없음, 단, 기업주자산투자 5%초과시 공시의무),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6개국)

자료 : OECD(2003) 및 OECD(2007)에 의거 작성

아일랜드의 경우는 자기투자규제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기업주 자산이 5% 초과시에는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간접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기투자규제는 종업원의 이익에 보다 초점을 맞춘 투자규제라는 점에서 연기금의 운용에서 핵심 투자규제라 할 수 있다.

다) 총량규제

연기금 운용의 투자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총 18개국으로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타 국가처럼 엄격한 총량규제는 하지 않지만, 투자의 가이드라인으로 미국 법원이 인정한 자산으로 투자 제한함으로써 연기금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총량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로는 호주 등 9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투자 가이드라인 자체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연기금의 자율운용 폭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최소분산투자규제 및 총량규제는 효율적인 내부통제기능 존재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0> OECD 연기금의 총량규제

구분	해당국가
규제 존재	오스트리아(35%이상은 담보부채권, 국채등에 투자), 벨기에(유동자산은 은행위 원회에서 인정받은 금융기관에 한해 투자가능), 캐나다(해외투자30%이내), 체코(해외투자는 OECD국가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한함), 덴마크(비상장위험 등 위험자산은 70%), 핀란드(유로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은 20%), 독일(70% 유동자산), 헝가리(해외투자 30%초과금지),포르투갈(20% 해외투자), 스페인 (90%자산은 공식적 거래시장에서 인정자산투자), 스위스(파생상품은 헤지용도로 제한, 30% 해외투자, 상품별제한), 터키(국채는 30%이상, 거래소 주식투자는 20%이하), 노르웨이(연금지급시 사용하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자산에 적어도 80%투자), 폴란드(해외투자 5%). 아이슬랜드(정보보증채권, 담보대출 및 증권을 제외한 자산의 경우 50%이상 편입금지), 이탈리아(1/3이상의 자산을 연금지급통화와 동일한 통화표시자산에 투자), 미국(미국법원의 인정자산으로 제한) (18개국)
규제 없음	호주,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9개국)

자료 : OECD(2003) 및 OECD(2007)에 의거 작성

라) 의결권지분 제한규제

지분한도제한이 없는 국가로는 호주, 영국, 미국 등 14개국 등인 것으로 나타나 연기금이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예: 의결권행사)을 담당하게 하는 국가가 증대하고 있다. 즉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감사에 기여하기 위해 의결권지침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미국 및 일본 등에서는 연기금의 의결권행사위반을 수탁자책임 위반으로 보아 소송사례가 빈발하는 등 기관투자자로서의 연기금의 역할을 점점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체코 등 12개국은 의결권지분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덴마크 등은 의결권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연기금의 경영감시기능 역할(광의의 수탁자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표 IV-21> 연기금의 의결권 지분제한규제

구 분	해당국가
지분 한도 제한 없음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14개국)
지분 한도 제한 존재	캐나다(동일회사 의결권지분 30%이내), 체코(20%이내), 핀란드(5%이내), 독일(5%이내), 헝가리(10%이내), 아이슬란드(15%이내), 이탈리아(폐쇄형투자펀드25%이내), 멕시코(20%이내), 폴란드(10%이내), 포르투갈(의결권지분은 20%이내), 스페인(5%이내), 터키(5%이내) (12개국)
의 결 권 행사금지	덴마크(1개국)

자료 : OECD(2003) 및 OECD(2007)에 의거 작성

3). 자산운용규제 트렌드

가) 총량규제중심 자산운용규제

미국 및 영국은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반면, 호주 및 네덜란드는 분산투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자기투자규제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네덜란드는 기업주 자산 5% 이내로 자기투자규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기투자규제의 완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총량규제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를 제외한 네덜란드만이 15년간 운용한 적립금이 원금손실확률 2.5%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규제는 미국, 영국, 호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표 IV-22> 주요국의 자산운용규제

	분산투자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미국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부여	모든 DB형과 일부 DC형 연금에서 고용주의 증권이나 부동산 투자는 10%이내로 제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사이의 거래는 제한되며 위반 시는 세금 공제에서 제외	미국 법원의 인정을 받은 자산으로 제한	없 음
영국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부여	기업주 자산 5% 이내	없 음	없 음
호주	없 음	10%에서 2001년 1월 5%로 하향 (연금 가입자에 대한 융자나 금융지원 금지)	없 음	없 음
네덜란드	분산투자원칙 없음	기업주 자산 5%이내	15년간 운영한 적립금이 원금손실확률2.5% 이하가 되도록 규제	없 음

자료 : OECD(2003) 및 OECD(2007)에 의거 작성

이처럼 선진국의 자산운용규제는 대체로 완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총량 규제이외에 모든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자율규제방식의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에 따른 제반리스크를 적절히 관리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자산운용규제완화의 보완조치인 적립금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적립비율(funded ratio = 자산의 현재가치/부채의 현재가치)에 입각한 건전성 규제를 보다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운용의 효

울성을 최대한 제고하되,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전성 규제(지급여력 강화, 리스크중심 감독)는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산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적립비율중심의 건전성규제

영국의 경우 유연한 적립수준의 적용이 특징적인데, 다른 국가처럼 의무적인 최저적립요건(statutory minimum funding)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용자 파산에 대비하여 엄격한 리스크 중심의 지급보장장치(Pension Protection Fund)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달리 네덜란드는 명시적인 지급보장장치는 없으나, 최소한 105% 이상의 적립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립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7년 1월에 도입된 새로운 규제 체계에서는 2010년부터 확률적 기법이 수반된 ALM적 자산운용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표 IV-23> 주요국의 퇴직연금 적립금규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
할인율	시장수익률 (우량회사채 수익률)	3.5% 고정	AA- 스왑레이트	30년 국채 수익률의 4년 평균	20년 국채 수익률
장래임금 및 연금인상	고려	고려 안함	재평가와 지수화가 보장될 경우 묵시적으로 고려	고려 안함	고려 안함
최저적립 수준(FI)	없음	104.5%	105%	90%	90%
최저적립 기준에 의한 추가 기여	없음	FL < 100%: 즉시 FL < 104%: 3년 계획	FL < 105 : 1년 계획 Prob(FI>100%) < 97.5%: 15년 계획	만약 FI < 90%이면 추가 기여	FI < 90%: 7년 계획
법정 최대 적립률	105%*	없음	없음	100%**	150%***
보장기구에 대한 기여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주 : 1) * 잉여금(surplus)을 5년 내에 최대 5% 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함.
 2) ** 2006년 Pension Protection Act에서 기여금의 과세 관련 공제한도를 당기부채의 150% 수준으로 인상시킴
 3) *** 당기부채는 규제당국의 방법론에 의해 측정됨
 4) FI는 부채 대비 자산의 적립수준(funding level)을 의미함
 자료 : Blome, S., et al.(2007), Pension Fund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Results from an ALM Optimization Exercise, OECD, May에서 수정 작성

즉 네덜란드의 경우 2007년 1월 FAF(Financial Assessment Framework)라는 새로운 재무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확률적 개념에 입각한 총량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⁴³⁾ 2000년대 초, 주식시장 침체이후 연금에 대한 재무건전성의 악화는 투자행위와 이와 관계된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건전성 감독 방식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투자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를 구상하

43) 예를 들어 주식에 50%투자하는 경우 최소 적립비율은 130%로 설정되었지만 주식에 60%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비율은 140%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산배분에 따른 리스크 버퍼 수준을 충족하도록 엄격한 리스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 <표 IV-24>과 같은 재무 평가체계(Financial Assessment Framework)를 2007년부터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재무평가체계는 ① 연기금에 대한 최소적립요건(minimum requirement), ②지급여력요건(Solvency Requirement), ③ 연속성요건(continuity requirement)에 대한 감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최소적립요건(minimum requirement)에서는 연기금 부채의 총(실제/시장/장부)가치 대비 자산의 총(실제/시장/장부)가치로 정의되는 적립비율(funding ratio)이 매 시점별로 10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⁴⁾ 105%의 적립비율은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지급보증기구로서 2005년 출범한 PPF(Pension Protection Fund)가 담보대상인 퇴직연금제도의 과소적립리스크를 산정할 때 기준인 104%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적립비율이 105% 미만인 경우, 1년 이내 건전성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담은 정상화계획서(recovery plan)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적립 요건(minimum requirement)은 연기금에 대한 지급여력 평가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기금 구조상의 미스매칭리스크나 향후 진전에 대한 평가 없이 향후 특정시점에 현행 적립비율을 특정수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지급여력요건(solvency requirement)은 매년도 말 연기금이 적립비율의 진전에 대한 예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연기금 부채 대비 투자리스크에 따라 최소적립비율 이상의 추가적인 버퍼가 존재하도록 하고 있다.⁴⁵⁾

다음으로 지급여력 요건(solvency requirement)은 특히 적립비율이 최소 요건 이하이거나 이에 도달할 경우 적용된다. 현행 재무적인 버퍼는 시장상황에 따라 지급능력버퍼(solvency Buffer) 25%를 고려하여 적립비율이 13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급여력요건에 대한 실행보고서에서 1년 이내에 최저적립기준 이하로 떨어질 확률을 2.5%(신뢰수준 97.5%)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감독당국에서는 리스크 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 노출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리스크 모형을

44) 즉 네덜란드의 연금적립규제는 항상 최소 105%의 적립비율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45) 현재 감독당국에서는 최근 기금의 성과에 따른 버퍼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버퍼는 과거 48개월 동안 상위 40%의 주식가격, 12개월 간 하위 10%의 주식가격의 하락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함. 고정 수입의 경우 버퍼는 현행 이자율에 의존한다.

갖추지 못한 연기금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버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기금에 대한 규제는 은행에 대해 VaR(value at risk)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Basel 협약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 은행에 이용되는 VaR 모형의 특성 및 예측된 VaR를 이용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할 준비금의 수준이 결정되며, 감독당국은 리스크를 결정하는 내부모형⁴⁶⁾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46) RBC제도에서 사용되는 모형과 유사한 표준모형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성을 평가하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인가한 내부모형(internal model)을 사용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표 IV-24> 네덜란드의 재무평가체계

절 차	특징
연금 부채의 시장가치 산출 (A)	자산(A)과 부채(L)의 시장가치(Market Value)
연금 자산의 시장가치에 따른 (L)	
완적적립 요건(Fully Funding Requirement) : A/L = 1 → 100%	100% 적립수준 (Funding Level)
+ 비정량화된 리스크에 대한 추가적 적립 요건 5%	+ 5%
105%(최소적립수준 : Minimum Funding Requirement)	
이자율 · 신용 · 환율 · 사망/장수 · 리스크 및 주식시장의 붕괴 등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팅 시행	+ 25% (리스크가 가중된 Solvency Buffer)
97.5%의 신뢰구간 하에서 1년 이내에 최소적립기준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추가적인 자본요건 산출 → 25 ~ 30%의 Solvency Buffer가 요구됨	
130% (연기금에 대한 평균적인 요구 적립수준) (Funding level for an average pension fund: Solvency Balance)	
연기금의 자기규율(self-discipline),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한 15년간의 영속성 테스트(Continuity testing)	자가 평가 (Self-Assessment)
필요시 3 ~ 15년간의 정상화 계획(recovery plan)	정상화 계획 (Recovery Plan)

자료 : 류건식 · 김동겸,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수급권 보호: 네덜란드의 DB형 퇴직연금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발표자료, 2007.8.

영속성요건(continuity requirement)은 매년도 말 연기금이 장기간에 걸친 적립율의 진전에 대한 예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는 최근 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라 향후 기금 적립률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의 자산 · 부채관리 모형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예상수익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⁴⁷⁾ 즉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에 따른 자산배분을

47) 감독당국은 채권에 대한 예상수익,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각각 최대 5%, 최대 3%, 최소 2%, 최소 3%로 요구한다. 주식리스크 프리미엄은 과거

고려하여 이에 부합한 적절한 적립비율(건전성비율)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규제(=적립비율규제 또는 지급능력 규제)에 의한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규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적립비율에 의한 자산운용 규제가 적용된 주된 이유로는 퇴직연금 기금이 기업의 자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연금자산/기업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퇴직연금성고가 기업 및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적립비율의 저하에 따른 연금재정의 안정성 악화에 기인한바 크다 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1989년 이후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주식 중심의 적극적 자산배분전략의 한계를 인식하여 리스크관리 차원의 자산배분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결국 적립비율의 변동성을 감안한 연금자산의 배분이 건전성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연기금의 건전성 기준 강화

연금자산운용에 따른 개별 연기금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일정한 지급여력 기준을 마련하여 연기금으로 하여금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연기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젤 II에서 제시하는 기본모델 또는 감독당국에서 승인한 자신들만의 모델에 따라 지급여력을 쌓아야 하는데 현행 상태로 계속할 경우 책임준비금의 30%에 해당하는 지급여력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여력을 줄이기 위해 자산포트폴리오중 주식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덴마크의 최소 건전성 기준은 약간 덜 구체적이지만 네덜란드와 비교하여 거의 유사하다. 최소지급여력은 자산의 구성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등을 참조하여 현재 부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덴마크시스템이 네덜란드와 다른 것은 연기금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시장에 시그널을 줌으로써 시장의 압력을 통해

평균 이하로 설정되었으나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을 2.55~4.32%로 추정 한 Fama and French(2002)의 결과와 상응하다.

간접적인 건전성 개선을 도모하는 점이다. 만약 연기금의 자본이 지급여력기준의 1/3미만이거나 최소요구자본보다 적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 정상화기간을 1년 미만으로 결정된다. 또한 <표 IV-25>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EU의 지급여력기준을 원용하거나 생명보험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오스트리아 등은 책임준비금의 1%를 적용하고 있으며,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은 구체적인 건전성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표 IV-25> 연기금의 최소 건전성요건(예: 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기준	책임준비금의 1%	책임준비금의 0% (특수상황에서만 적용)	책임준비금×4%+위험자산 ×0.3%(6개월마다 측정) - traffic light system적용	적용하지 않음
국가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기준	최소적립요구액(MGF)을 초과한 경우 준비금의 4% 또는 리스크자본의 0.3%	적용을 받지 않음	EU방식 적용	불필요
국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기준	적용을 받지 않음	책임준비금의 30%	책임준비금×4%+위험자산 ×0.3%(생보사의 지급여력적용)	책임준비 금의 4%

자료 : OECD(2000) 및 Brunner, Hinz, Rocha(2008)에 의해 작성

나. 우리나라

1) 적립금 운용규제 내용

가) 투자한도 유형 및 설정

적립금 운용결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퇴직연금감독규정은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회사채 등 투자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자산을 위험자산으로 지정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투자한도는 개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개별투자한도), 집중투자한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투자한도로 구분되어 있다.

<표 IV-26> 투자한도의 종류

구 분	내 용
개별투자한도	성격이 유사한 위험자산을 그룹으로 묶은 후 각 그룹별로 설정된 투자한도
집중투자한도	집중투자에 따른 거대손실방지를 위해 설정된 투자한도로서 동일법인 발행주식, 채권등에 대해 설정
이해상충방지 투자한도	계열사 등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기업어음 등에 대해 설정된 투자한도

확정급여형제도는 사용자가 대규모 자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집중투자한도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투자한도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관계없이 확정된 퇴직급여를 보장받으므로 개별투자한도 및 총투자한도는 완화되어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하므로 투자가 가능한 자산의 범위, 개별투자한도 및 총투자한도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

나, 확정급여형제도에 비해 소규모자금이 운용되고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 집중투자한도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투자한도는 완화되어 있다.

나) 퇴직연금 유형별 투자한도

감독당국은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개정안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여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는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하였다(<표Ⅳ-27>참조).

<표 Ⅳ-27> 확정급여형제도의 위험자산한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그룹 · 국내외 상장주식, 유가증권예탁증서 ·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등) · 주가연계증권 · 파생결합증권(원금손실범위가 10%~40%이내) · 외국투자자격채권	30%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그룹 · 주식형(주식편입비중 60%이상) 펀드 · 파생상품펀드(원금손실범위가 10%~40%이내) · 부동산 · 실물 · 특별자산 펀드	50%
혼합형 펀드 등 간접투자그룹 · 혼합형 펀드(주식편입비중 40%초과 60%미만) · 투자자격등급이외의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주식형, 혼합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50%

즉 주식, 전환사채 등 직접투자의 경우 사용자 적립금의 30%로 투자한도를 유지하였으나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의 성격과 위험도를 고려

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그룹별로 사용자의 적립금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하였다. 다만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사용자 적립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국내 채권형(주식편입비중 40%이하)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가입자 적립금의 30%로 투자한도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외국자산 운용사 발행펀드와 국내펀드의 성격 및 발행 조건 등에 별 차이가 없어 2008년 개정을 통해 외국자산 운용사의 국내발행 채권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하였다(<표 IV-28>참조).

<표 IV-28> 확정기여형제도의 위험자산한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주식 등에 대한 투자 · 국내외 상장주식, 유가증권예탁증서 · 주식관련사채, 후순위채권 ·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원금손실범위가 10%~40%이내) · 주식형, 혼합형,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펀드 ·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투자금지
외국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30%

2) 적립금 운용규제 특징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운용 가능한 자산의 종류를 제한하고, 이들 자산에 대해서도 최대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양적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입자가 투자리스크를 부담하는 확정기여형제도에 대한 투자규제는 관계사 투자 제한, 자기투자 금지 등 일반적인 규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 주식,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엄격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투자한도를 30%로 제한함으로써 확정기여형제도의 투자규제가 확정급여형제도보다 더 엄격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차원에서 양적규제방식을 지향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7조 제2호에 의하면 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쉽도록 할 것, ②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⑤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

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를 것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V-29>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구분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DB형	30%	50%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혼합형 : 50%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 금지	제한 없음
DC형	투자 금지	투자 금지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혼합형: 투자금지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 금지	제한 없음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운용방법, 즉 ①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② 국채,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③, ① 및 ②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등을 말한다. 또한 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은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③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④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⁴⁸⁾, ⑤ 그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등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감독규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수급권보장을 목적으로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① 국채·지방채, 국내·국외(OECD 국가) 투자적격채권, ② 국내 상장주식,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주식시장(뉴욕증권거

48) 이 경우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은 제외)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래소, 나스닥시장, 동경·런던증권거래소 등 9개시장) 상장주식, ③ 신탁회사·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외국 자산운용사 수익증권(국내 판매분), ④ 투자적격 기업어음, 파생상품펀드·주가연계증권(최대손실범위 40% 이내) 등이다.

3.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⁴⁹⁾

가. 외국 규제

1) 재무건전성 규제동향

가) 미국

미국에서는 1974년 제도종료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 도입 및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등 수급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제정되어 퇴직연금이 순조롭게 보급·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거액의 적립부족에 따른 퇴직연금의 해산에 의해 제도종료보험의 실시주체인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은 악화되어 수차례 법안에 개정되었으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표 IV-30>참조).

49) 재무건전성관련 규제를 재정평가 등과 관련된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 기업 및 연금사업자 도산시 연금지급과 관련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음. 일반적으로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보다 사전적 수급권 보호규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보다 사후적 수급권 보호규제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수급권 보호라는 의미는 퇴직연금관련 제도 및 규제를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이므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무건전성관련 규제라는 명칭을 사용함.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라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함.

<표 IV-30> 미국의 재무건전성 규제개혁

구분	세부내용
70년대 (ERISA)	-최소적립기준 금액설정(=정상비용+미적립 과거근무채무상각액) -전체적립금의 최저한도액 규정 -이상의 두가지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립기준계정 설정 -적립부족발생시 기업은 부족적립금누적액의 5%에 해당하는 징벌세를 물어야 하며,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율은 100%로 상승
80년대 (OBRA)	-공제한도(deductible limit)가 미적립현재부채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 -분기별 최저적립요건 충족요구 -최소적립요건규정에 사용된 여러 상각기간의 단축 -그러나 OBRA87은 세법상 적립한도액을 PBO에서 ABO로 변경함으로써 연기금의 적립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90년대 (RPA)	-부족적립금 축소를 위한 기여금(DRC: Deficit Reduction Contribution) 계산시 사용된 공식 및 부가적립비용에서 3가지 주요한 변화를 가함. -필요적립 현재부채규모 상향조정(35%→60%), 60%이하일 경우 신규 미적립부채계산시 30% 적용 -당해 신규발생급부에 대한 예상 현재부채의 증가액을 DRC항목에 포함 -모든 상각비용을 추가적립비용계산시 DRC에 상쇄

이에 1987년 통합예산균형법(OBRA: Omnibus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여 기금적립에 대한 제도제공자들의 자유재량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최소적립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말과 90년대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장기적인 건전성이 위협을 받게 되자 1994년에 퇴직연금의 적립요건 강화이외에 제도종료보험의 보험료적정화 및 연금지급보증공사에 의한 퇴직연금재정의 관여 등 수급권 보호강화를 기초로 한 퇴직보호법(RPA: Retirement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최소적립원칙을 대폭 변경하였다.⁵⁰⁾ 그러나 이와 같은 확정급여형제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조치 등으로 인하여 사용주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확정기여형제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아지게 되었다.

2006년에는 미국의 연금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연금보호법의 제정배경은 확정급여형제도 부실화에 따른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50) 류건식·이태열(2004), pp. 56~57.

세계화에 따른 국내외적 경쟁의 가속화로 미국의 전통산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퇴직연금재정이 악화되었다. 특히 확정급여형제도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주가하락과 저금리가 지속됨으로써 연금자산보다 향후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래 연금부채의 현재가치가 빠르게 증가하여 확정급여형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퇴직연금부실화가 미국사회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퇴직연금과 연금지급보증공사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2003년 United Airline사가 기업회생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회사의 출연을 중단한 선언을 계기로 기업, 행정부, 의회,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등에 의해 2003년 후반부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8월 최종안인 연금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연금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① 퇴직연금적립기준 강화, ② 연금채무산정시 적용할인율, 사망률 지정,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활성화, ④ 퇴직연금 기금 확충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⑤ 퇴직연금 정보공시 강화, ⑥ 보험료 인상 및 청산보험료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기준의 강화를 위해 단일 기업주플랜에 대한 최저적립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출연금 산정기준을 기존의 90%에서 연금채무 100% 적립을 의무화하고 미적립 연금부채 상각기간을 단축하였다. 즉 미적립부채는 기존의 30년에서 7년으로 상각기간이 단축되었다.

연금자산이 목표적립액과 동일하면 기업은 정상비용만 최저출연금으로 기금에 출연하게 되는 반면, 미적립부채(funding shortfall)발생시 기업은 정상비용(target normal cost)에다 미적립이월부채 상각분(amortization of funding shortfall)을 추가하여 기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목표적립액은 연금플랜개설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연금채무 현재가치의 100%를 의미하며, 미적립이월부채 상각분은 미적립 부채총액중 당해 연도 상각 해당분을 지칭한다. 연금자산이 목표적립액의 80%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금급여 인상을 금지하도록 하여 부실기업이 부도직전에 종업원에게 실행가능성이 없는 추가 연금혜택지급을 약속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연금보호법은 새로 규정된 연금채무 100% 적립의무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에 걸쳐 점진적으로(92%, 94%, 96%, 100%)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민항기 산업에 대해서는 미적립부채를 17년동안 상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나) 영국

① 퇴직연금감독청(OPRA)의 설립과 수급권강화

영국에서는 종래부터 적용제외제도만을 관할하는 직역연금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퇴직연금감독청(OPRA: Occupational Pension Regulatory Authority)이 창설되었다. OPRA는 포괄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판례법에 기초한 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탁자의 의무불이행을 저지하고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수탁자의 의무이행 뿐만 아니라 최저적립기준(최저지불능력기준)의 충족부터 각종 정보공시규정의 준수에 이르는 세세한 내용까지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직역연금의 운용이 부적절하고 임명연금계리인의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직역연금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연금수탁자의 업무정지·해임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포괄적인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관청간의 이해대립도 회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징세기관인 직역연금사무국(PSO: Pension Scheme Office)은 연금자산의 과잉적립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직역연금위원회(OPB: Occupational Pension Board)는 연금수급권의 담보가 되는 연금자산의 충분한 적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연금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복수의 분산된 관할관청에 의해 적용제외 및 세제적격의 취소행위로 이르게 되고 이는 결국 가입종업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OPRA는 연금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개별적인 벌칙 규정을 정하고 특히 상한의 벌칙을 부과하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

② 적립기금확보차원의 최저적립기준(MFR)적용

최저적립기준(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은 연기금의 재무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채용된 것으로, 연금급부채무에 적합한 연금자산보유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자산이 연금부채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100%까지 적립수준의 인상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연금계리평가를 받아야 하며, 적립수준이 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연기금을 운용하는 이사회는 신규 연금기여계획서를 작성, 임명연금계리인의 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기금의 재무건전성 검증프로세스는 ① 3년마다 정기적인 연금계리평가, ② 연기금으로부터 지명된 임명연금계리인과 수탁자에 의해 간행되는 연차보고서, ③ 적립수준이 최저적립수준의 100%를 하회하는 경우의 중장기적인 회복조치 및 적립수준이 최저적립기준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의 긴급한 회복조치 등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긴급한 회복조치에서는 즉시적인 현금보전이외에 은행에 의한 채무보증, 용도가 특정된 은행예금 내지 예비자산(cash reserve)보유 등의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③ 연금보상제도(PCS)에 의한 지급보증

연금보상제도(PCS: Pension Compensation Scheme)는 주로 모기업의 도산에 의해 연금급부채무의 불이행상태가 발생하고 동시에 연기금의 자산이 부정유용 및 사기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일정한 상한금액까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액·보전액은 부정행위에 의한 상실자산액의 90%상당액, 또는 적립부족액의 90%상당액 중 적은 쪽이다. 나머지 10%는 제도종료·해산에 대한 자기책임액이며, 사전적으로는 위험분배에 의한 도덕적 해이억제기능을 수행한다. 보전방법은 연금보상위원회가 가맹연기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모기업의 도산 리스크 및 제도종료 리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연금규제기관(TPR) 신설 등에 의한 수급권 강화

2004년 2월에 통과된 연금개혁법안은 2005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지원제도의 창설 : 연금보호기금(PPF)의 업무개시 전에 이미 연금플랜 해산처리를 시작한 적립부족 연금제도 가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 제공 ② 연금보호기금(PPF)의 도입 : 적립부족의 연금제도 가입자에 일정한 최저급여 보증 ③ 퇴직연금감독기구(OPRA)를 조기대응과 리스크에 대비한 연금규제기관(The Pension Regulator)에 이관 ④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⑤ 최저적립요건을 제도 고유의 적립기준으로 전환 ⑥ 2005년 4월 이후 발생할 연금에 대한 물가인상을 상한을 종전의 5%에서 2.5%로 변경(확정기여형 연금, 적격개인연금, 관리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Schemes)의 인상 요건 폐지) ⑦ 사업 이전시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사업주의 연금제도 가입자인 종업원에게 장래 연금권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⑧ 제도변경 당시 사업주는 종업원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의무화 ⑨ 퇴직연금 및 저축에 관한 재무적 정보의 이용가능성 확보 ⑩ 연금제도 수탁자가 연금법규제, 신탁법 및 자신의 연금제도에 관한 최저수준의 지식을 알고 있도록 법적 의무 도입⁵¹⁾ ⑪ 연금제도 수탁자가 동의할 경우 또는 기 발생 급여의 지급형태 변경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설치된 연금규제기관(The Pension Regulator)은 직역연금감독기구(OPRA)의 권한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권한 즉 가입자이익을 위한 확정급여형제도 동결 권한, 법령준수의 불이행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통지권한, 파산한 사업주의 자산매각 의문시 채판소에 거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되어 있다.

1995년 이전의 재무건전성 개혁 특징은 적용제외제도의 확대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충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영국에서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 소득비례 부가연금의 적용제외를 서서히 확대하는 한편,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04년의 재무건전성 개혁 특징은 수급권보장의 강화이외에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 연금운용에 관

51) 연금제도 수탁자의 위원중 최소한 1/3은 가입자 선출의 위원으로 하며, 1/2로 증원 가능

한 관리감독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 일본

일본 재무건전성 규제개혁은 ① 공적연금제도의 재검토 ② 연공서열·종신 고용에서 실력·성과주의로의 고용환경변화 ③ 기업회계제도의 변화 ④ 자산 운용환경의 변화 등에 기인한 바 크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로 인한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의 수급자의 급부액을 월 23만 7천 엔에서 월 20만 엔으로 인하하여 소득대체율을 59%에서 50%로 인하하는 내용의 연금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강화차원에서 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부회계기준을 도입, 기업이 지급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에 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동일하게 간주해서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감추어진 부채가 표면화되었다. 2000년 당시의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살펴보면 적립률이 64%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적립부족액은 근로자의 수급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DB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종업원의 선택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이르렀다. 일본의 경우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는 사실상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나타난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1> 일본의 재무건전성 규제개혁(Ⅰ)

구 분			후생연기금	DB형
사 전 적 규 제	재정 검증	검증1	적립금과 책임준비금 비교(계속기준) →적립부족:기여금계산(PSL대체)	적립금과 책임준비금 비교(계속기준)→적립부족: 보험료제계산
		검증2	적립금과 최저적립기준액 비교 (비계속기준)→적립부족의 경우: 회복계획(7년 이내로 회복 要)	적립금과최저적립기준액비교 (비계속기준)→적립부족의 경우: 회복계획(7년 이내로 회복 要)
	재계산		5년마다 1번	적어도 5년마다 1번
	결산시		4/1~3/31	임의(규약으로 규정)
	행정결산보고서		기금 매사업년도 종료후 6월이내	연금사업자 등 매사업년도 종료후 4월이내
	초과적립금		유보(별도적립금)	유보
	제도종결(해산)시 적립부족 해소의무		존재 (2002년 4월부터 최저적립기준액 원칙, 단 당분간 최저책임준비금으로 가능)	존재 (최저적립기준액)
	재정재계산시 특별조치		-	가입자수가 일정이하의 퇴직연금에 대해, 재정재계산 등을 위한 간단한 기준을 설정
사후적 규제			후생연기금연합회에 의한 지급보증사업존재	계속검토

<표 IV-31> 및 <표 I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의 주요특징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무건전성 규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후생연기금만 재무건전성 규제가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표적인 DB형 퇴직연금제도라 할 수 있는 적격퇴직연금에서는 이렇다 할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적격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법적으로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 도입된 DB형 퇴직연금에서 재정검증, 적립금 과부족시 적기시정조치, 재정재계산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은 근로자의 수급권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IV-32> 일본의 재무건전성 규제개혁(II)

구 분			적격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 전 적 규 제	재정 검증	검증1	규정 없음	-
		검증2	규정 없음	-
	재계산		적어도 5년마다 1번	
	결산시		계약마다 별개	
	행정결산보고서		행정 보고없음	행정보고 없음
	초과적립금		유보불가 (재정재계산시, RARE계약은 매결산시에 반환)	-
	제도종결(해산)시 적립부족 해소의무		없음	-
	재정재계산시 특례적조치		-	-
사후적 규제			없음	

나.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

1) 책임준비금 평가

부담금을 기여하여 퇴직연금부채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전 적립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산출을 위한 적립방식이 요구된다. 현재급여방식과 예측급여방식과 같은 단위 적립방식 중에서 현재급여방식은 최저적립기준 산정시에, 예측급여방식은 최대적립기준 산출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⁵²⁾ 즉 특정 적립방

52) 2004년 OECD에서 권고한 퇴직연금규제원칙에서도 확정급여형제도는 최저적립기준이나 적정수준의 적립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특정 환경 하에서는 일시적인

식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예측급여방식(Projection Unit Credit Method)을 통하여 계속기준하의 책임준비금을 평가(최대적립기준)하고 있는 반면, 최소책임준비금(최소적립기준)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발생된 채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현재급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3> 책임준비금 평가 및 규제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준비금평가	대부분 예측급여방식	수리적으로 타당한 방식 인정	예측단위방식 (최소적립한도: 현재단위방식)
규제강도	없음	최소규제존재	없음
계리사 자율성	크다	일정한 제약존재	매우 크다

즉 영국은 Pension Scheme Surplus Regulation(1987) 관련 규정에 의해 예측급여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벨기에,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도 예측급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는 현재급여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독규제측면에서 필요한 최저적립기준 산출을 위한 연금부채 평가시에는 현재급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기금적립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에서 적립방식 적용에 대하여 규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연금계리관점에서 장래에 걸쳐서 재정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적립방식은 모두 인정되고 있으며, 제도 내용 및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금계리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특히 계리사회 등에서 계리기준(actuarial standard)을 정하고 실무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특정방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연금계리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법규정에 의해 확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

적립부족을 용인할 수 있으며, 연금부채의 장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최저적립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험계리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그 이유는 개별제도의 각각에 적합한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관점보다는 계리적 계산의 안전성을 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2) 연금재정 검증

가) 미국⁵³⁾

매년 부담금을 재계산하며 부담금계산과정에서 재정검증을 통해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재계산, 재정검증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최저부담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재정검증이 된다. 납입부담금은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내에서 결정된다. 부담금재계산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전년도 현재부채에 의해 납입시기 및 납입수준을 정하게 된다. 재계산이 완료되면 확정된 기준에 의한 부담금 정산이 이루어지며, 늦어도 다음해 8.5개월 이전에 최저기준 및 최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의 납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③ 최저부담금 산출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을 적용하여 최저부담금 수준을 산출하게 되는데, ① 계속기준상 최저부담금은 부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의 상각기간을 각각 최대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② 비계속기준상 최저부담금은 발생부채(Current Liability)와 적립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추가적립비용)하게 된다.

$$\begin{aligned}
 \text{최저부담금} &= \text{계속기준} + \text{비계속기준} - \text{선납부담금} \\
 &= \text{계속기준} \quad [\text{NC+ 과거근무부채 상각 부담금 (30년)} \\
 &\quad \pm \text{제도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30년)} \\
 &\quad \pm \text{계산기초율 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10년)}
 \end{aligned}$$

5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RISA Act Section 302, Regulations, Revenue Ruling, Notices, Procedures, Announcement, and Schedule B, SB, and MB(Form 5500) 및 Actuarial Standard of Practice(ASP), No4, No 27 등을 참조

- ± 보험수리적 손익(5년) ± 기타]
- + 비계속기준 [추가적립비용⁵⁴⁾] - 선납부담금⁵⁵⁾

⑥ 최대부담금 산출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부담금 중 큰 금액을 최대부담금으로 산출하게 된다. 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은 부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의 상각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즉

$$\begin{aligned} \text{최대부담금} = & \text{표준비용(Normal Cost)} + \text{과거근무부채상각부담금(10년상각)} \\ & \pm \text{제도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10년)} \\ & \pm \text{계산기초율 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10년)} \\ & \pm \text{보험수리적 손익(10년) } \pm \text{기타} \end{aligned}$$

다만, 계속기준상 최소부담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대부담금으로 한다. 이에 반해 비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은 미적립채무(CL-적립자산)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text{최종 최대부담금} = \text{Max(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 비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을 결정하는 경우 「Min (NC+AL⁵⁶⁾-자산(Asset), 자산(Asset) - 170%⁵⁷⁾ CL)」와 같은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적립최고한도(Full Funding Limit)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최저부담금이나 최대부담금은 적립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4) 추가적립비용(additional funding charge)의 경우 현재이자율로 계산한 CL과 연금자산을 비교하여 적립율이 90%미만이면 적립부족액을 4~6년에 걸쳐 추가비용으로 부담한다

55) 직전년도에 적립수준이상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으면 차감한다.

56) Accrued Liability(AL)은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되는 부채로 PBO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57) CL에 곱해지는 계수는 매년 변동하며, 이에 대한 것은 정책당국에서 정한다.

나) 일본⁵⁸⁾

㉠ 계속기준 재정검증

계속기준에서는 사업년도말에서의 향후 급부비용의 현재가치(급부현재가)에서 규약에서 정한 보험료(율)에 의해 향후 보험료수입의 현재가치(보험료수입현재가)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금액이 책임준비금이다.⁵⁹⁾ 따라서 연도말 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립부족액(책임준비금-적립금)이 허용 이월부족금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의 재계산은 특별보험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허용 이월부족금 적용의 3가지 방법은 ① 정기적인 재정재계산으로 보험료 인상이 가능한 범위로서 장래 20년 표준보험료 수입현재가의 15%이하의 일정비율로 하는 방법 ② 시가에 의한 적립금액의 변동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의 15%이하의 일정비율로 하는 방법 ③ 이들 두 개의 방법 중 낮은 금액으로 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 중에서 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비계속기준 재정검증

매사업연도말 적립금이 최저적립 기준액을 상회하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최저적립 기준액에 상당하는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최저보전급부에 관계된 가입자 및 수급자의 수급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최저적립 기준액은 가입자 등의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에 관계되는 급부(최저보전급부)의 현재평가액이다. 여기에서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자기간에 관한 부분(최저보전급부: 규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연금급부)의 산출방법은 <표 IV-34>와 같은데 가입자는 가입기간 대응방식 및 필요지급기준 방식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58) 노동후생성, 確定給付企業年金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002.3.

59) 동법 제60조 제2항, 규칙 제53조 제1항

<표 IV-34> 최저보전급부 산출방법의 특징 비교

방 식		내 용	산 식
가입기간 대응방식	개 념	- 표준퇴직연령에서의 예상급부액 에서, 현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상당하는 분을 안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frac{\text{현재급여} \times \text{표준자격상실연령지급률} \times \text{현시점가입기간}}{\text{표준자격상실연령가입기간}}$
	산 식	- 표준자격상실연령에 도달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부액×(사업연도말일 까지 가입기간÷전가입기간) * 급부액은 해당 사업연도말 기준적용	
지 급 액 기준방식	개 념	- 현시점에서 퇴직했다고 가정한 경우의 급부액에 연령에 따라 정해 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frac{\text{현재급여} \times \text{표준자격상실연령지급률} \times \text{현시점지급률}}{\text{표준자격상실연령지급률}}$ $= \text{현재급여} \times \text{현시점지급률}$
	산 식	- 당해사업연도말일에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부금 × 연령별비율	

다) 영국

영국의 경우 2004년 연금법 제정에 따라 최소적립요건(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방식에서 맞춤형 적립SSF: Scheme Specific Funding)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04년 연금법에 의해 새로이 설립된 연금감독청(The Pension Regulator)의 최대 관심사도 확정급여형제도의 적립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1997년 4월부터 적용된 최소적립요건(MFR)은 최소한 최저적립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이었다. 이는 개별연금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제도운영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기적 시장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MFR을 폐기하고 적립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별 퇴직연금제도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SSF 방식을 채택하였다.⁶⁰⁾

라) 캐나다⁶¹⁾

캐나다는 재계산, 재정검증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최저부담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곧 재정검증이 된다. 최저한도, 최고한도 계산시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Pension Benefit Regulation에 규정되어 있다(<표 IV-35>참조).

<표 IV-35> 캐나다의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 비교

	계속기준평가	비계속기준 평가
자 산	시가평가 또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평가를 Smoothing	시가평가액 - 청산기준 + 연금자산조정액 (연금자산조정액 : 특별보험료의 5년 현가액)
채 무	제도의 계속유지관점에서 장기 예측에 의한 계산기초율(NC산출기준과 동일)을 적용하여 산출	제도청산관점에서 산출
적립부족 발생시	미적립채무발생시(채무 > 자산) 일정기간(1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충당하는 특별보험료 산출(SP^{GC})	일정기간(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충당하는 특별보험료 산출 (SP^{solve})
적립초과 발생시	잉여금이 초과잉여금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잉여금은 향후 NC와 상계	-

주 : 초과잉여금한도 = $\min [(채무의 20\%), (채무의 10\%와 NC \times 2 \text{ 중 큰 값})]$

계속기준평가와 비계속기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립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각해 가는 특별보험료(Special Payment)를 산출하게 되는데, 계속기준에 의한 경우 ① 미적립채무발생시(채무 > 자산) 일정기간(15년)동안 분할하여

60) 이봉주,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정책연구자료, 2007. 3, pp. 95~98.

6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Anderson, "Pension Mathematics for Actuaries", 3rd Edition 2006 및 금융감독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2005.4 등을 참조

적립부족에 충당하는 특별보험료를 산출하는 반면 ② 일정기간(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충당하는 특별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결과, 적립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잉여금은 향후 표준보험료와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부담금 및 최대부담금(최대보험료) 한도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최저부담금(Minimum Contribution)한도는 「 $NC + (PSL^{set-up} + PSL^{admend})$ 의 상각액 + $(SP^{GC} + SP^{solve})$ - 잉여금」에 의해 산정하며, 최대보험료(Maximum Contribution)한도는 「 $NC + (PSL^{set-up} + PSL^{admend}) + \text{Max} [UL^{GC}, (SD + \text{연금자산조정액})] - \text{초과잉여금}$ 」⁶²⁾에 의해 산정한다.

3) 적립금 및 최소 책임준비금 평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적립금(연금자산)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치에 의해 평가하되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연금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가치 변동 폭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평준화(smoothing)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가 평준화 기법을 사용하여 적립금(연금자산)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최소책임준비금(최소적립기준하의 연금부채)의 평가는 적립금(연금자산)의 평가에 비해 평가방식의 다양성 및 계산기초율(평가기초율)의 선정 등으로 인해 한층 복잡한 측면을 갖고 있다. 즉 부채 평가는 부담금 산출시 사용된 적립방식과 동일하게 적립할 수도 있으나, 최소적립기준과 같이 재정건전성 감독을 위한 사후조치가 존재할 경우 또는 퇴직연금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별도의 적립방식(연금부채평가방식)을 지정하고, 별도의 계산기초율 사용도 가능하다⁶³⁾(<표 IV-36>참조).

62) 여기에서 UL^{GC} 는 계속기준하의 미적립채무, SD는 적립부족액을 의미

63) 최저적립기준 적용을 위한 할인율 및 사망률은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IV-36> 최소 책임준비금 평가 기초율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평 가 기초율	최저부담금리할인율은 회사채수익률(AA-)	- 예정수익률: 최근 5년간 의 20년 국채평균수익율 을 감안, 후생노동장관 이 정한 비율 - 사망률: 기준사망률×0.95 (남자)또는 0.925(여자)	- 사망률: 표준사망률보다 낮게 설정 - 할인율: 국채수익률

<표 IV-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최소책임준비금(연금부채) 평가 할인율은 국채수익률을 사용하며 사망률은 표준사망률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최근 5년간의 20년 국채의 평균수익율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률은 기준사망률×0.95(남자) 또는 0.925(여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⁶⁴⁾ 특히 선임계리사의 자율성이 매우 높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금계리사가 정하는 계산기초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 적립수준 및 PSL 상각

미국 및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달리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 즉 추정된 연금부채의 10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책임준비금의 100%를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완전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 뿐만 아니라 연금부채에 대비한 연금자산의 비율, 즉 적립비율(= 연금자산/연금부채) 역시 최소 100%를 기준으로 하거나 영국, 네덜란드 등처럼 적립비율 100%이상(영국: 104%, 네덜란드: 105%⁶⁵⁾)을 최소적립비율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재무건전성을 보다

64) 이흥무, 「퇴직연금수급권 보호의 취약성과 낮은 적립수준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下)」,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05.10., p.17.

65)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 연금개혁을 통해 적립비율이 105%(최소적립비율)미만인 경우 1년 이내 재무건전성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담은 자구계획서(recovery plan)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통상 과거근무채무의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사안에 따라 상각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표 IV-37> 적립수준 및 과거근무채무 상각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준비금적립수준	100%	100%	100%
최소적립비율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¹⁾	100%	104%
과거근무채무 (PSL)상각	- 상각기간 차별화 (3년 ~ 30년) - 과거근무채무상각 30년 - 재정방식의 변경 10년 - 제도개정 30년	- 최소7년, 최장 20년 이내 상각 - 균등, 탄력, 정율상각인정	- 20년 이내 상각

주 : 2006년 연금보장법(Pension Protection Act) 개정으로 최소적립수준 100%로 상향조정

PSL의 경우 미국은 30년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20년 이내에 서, 캐나다는 15년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으며 일본은 7년~20년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원리금균등상각⁶⁶⁾, 탄력상각⁶⁷⁾, 정율상각⁶⁸⁾을 인정하여 상각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다. 연금제정의 건전성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단기간에 과거근무채무 상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금제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Solvency Buffer 25%를 고려하여 적립비율이 130%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연기금에 대한 평균적인 요구적립수준)하고 있다.

- 66) 원리금균등상각은 과거근무채무액을 3년이상 2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미리 규약에서 정한 기간(예정상각기간)으로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이다.
- 67) 탄력상각은 매사업년도의 특별부금액을 하한 특별부금액이상, 하한 특별부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정상각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최단상각기간은 3년이며, 예정상각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최단 상각기간이 10년이 된다.
- 68) 정율상각은 과거근무채무액에 일정 비율(15/100이상 50/100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함)을 곱해 상각하는 방법이다.

5) 적립과부족시 시정조치

확정급여형제도의 재무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립과부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적립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추가부담금의 납입 ② 부족액의 상각 ③ 부금이외의 기여를 통해서 적립부족 보충⁶⁹⁾ 등이 가능할 것이며, 적립초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적립한도 설정, 부담금 일시 중단(contribution holidays), 연금지급기준 향상, 사용자 자산으로의 환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적립초과액을 사용자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립부족 시 주요 국가의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경우 적립률이 90% 이하인 경우 추가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캐나다의 경우 적립부족액을 5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⁷⁰⁾ ② 일본의 경우에도 적립률이 90% 이하인 경우 적립부족액을 7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적립부족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연금급여를 감액시킬 수도 있으며, 주식시장 하락시에는 최저적립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다.

69)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는 연금제도에 주식등을 직접납부하는 방식과 퇴직금부신탁 등의 형태로 연금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과 연금부금에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70) 계산기초율의 불리한 변동 또는 연금급여 개선에 따른 미적립채무에 대해서는 15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표 IV-38> 적립과부족에 대한 시정조치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적립 부족시	-추가부담금납입(1차) · 적립률 90%이하 -부족액 상각(2차) · 급부개선에 따른 부족 (30년상각) -급부액감액 등 (3차)	-순자산액이 최저적립기 준액의 1.05배에 미치지 못할때 7년내 회복조치 -연기금부족시 연금급부액 감액	-일정기간내 추가부담금 납입 · 3년내 최소책임준비금의 90% · 10년내 최소책임준비금의 100% - 정상화계획 마련
적립 초과시	-부채초과분환수, 기여휴일등 인정 · 적립최고한도설정	사용자 부담금 납입감소 또는 중지	-세법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립최고한도설정 · 사용자 부담금 납입감소 및 사용자 환수가능

③ 영국의 경우 연금자산이 연금부채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100%까지 적립수준의 인상은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연금계리평가를 받아야 하며, 적립수준이 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연기금을 운용하는 이사회는 신규 연금기여계획서를 작성, 임명연금계리사의 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기금의 재무건전성 검증프로세스는 ① 3년마다 정기적인 연금계리평가 ② 연기금으로부터 지명된 임명연금계리사와 수탁자에 의해 간행되는 매년의 연차보고서 ③ 적립수준이 최저적립수준의 100%를 하회하는 경우의 중장기적인 회복조치 및 적립수준이 최저적립기준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의 긴급한 회복조치 등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긴급한 회복조치에서는 즉시적인 현금보전이외에 은행에 의한 채무보증, 용도가 특정된 은행예금 내지 예비자산(cash reserve)보유 등의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재정재계산 결과 적립액이 부족하다고 판정될 경우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화계획은 사용자의 향후 사업계획, 제도가입자의 특성, 연금보장기구(PPF: Pension Protection Fund)의 보험요율 등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기여금액과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중요 가정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리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내용, 즉 자산가치, 이연 수급자와 기여 가입자로 분리된 책임준비금, 외부 생보사를 통해 연금보험 가입시 소요되는 비용 추정액, 책임준비금 계산 시 사용된 방법, 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현재 사망률 및 20년 후 사망률 등 책임준비금 사용시 사용한 주요 가정 등이 포함된다. 적립초과 시 주요 국가의 시정조치를 살펴보면 정규부담금과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적립최고한도(full funding limit) 내에서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적립상한액⁷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④ 캐나다의 계속기준에 의해 평가할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잉여금이 일정 한도⁷²⁾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잉여금을 장래 정규부담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적립과부족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적립비율 수준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다.

6) 연금재정 재계산⁷³⁾

자산 평가 및 부채 평가를 기초로 지급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 주기는 1~5년으로 다양하다. 즉, 미국과 영국은 3년에 한번, 일본은 최소한 5년마다 한번, 재정재계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재정재계산 주기가 3년인 경우에는 중간에 연금계리보고서(actuarial report)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표 IV-39>참조).

<표 IV-39> 부담금의 재정재계산 주기 비교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주 기	1년	최소 5년	3년
기 타	-	-	중간에 연금계리보고서작성

71) $1.5 \times \max(\text{계리적 부채, 최저적립기준액})$

72) $\min\{\text{계리적부채} \times 20\%, \max(\text{AL} \times 10\%, \text{정규부담금} \times 2)\}$

73) 재정재계산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금계산기초율의 적정성 및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가장 최근 재정재계산 실시 이후에 발생한 제반 요인들이 연금부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연금계리사가 작성하게 된다. 그 주요 목적은 퇴직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중대한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update)을 실시하는데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3년마다 재계산하지만, 적립률이 80% 미만이거나 90% 미만이면서 부족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1) 지급보증제도

가) 지급보증제도 운영형태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형태는 퇴직연금급여의 지급불능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시 지급보증방식에 따라 인수방식(take over)과 구매방식(buy out)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인수방식은 지급보증기구가 도산기업의 연금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제도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해당 기업의 근로자와 퇴직자에게 연금지급을 보장해주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인수방식(take over)방식에서는 기업의 신용리스크와 같은 도산을 담보로 하고 있고, 계약이전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계약이행까지 자체운영을 하며, 통상적으로 국가기구를 통해 직접보장이 이루어진다. 근로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이며, 퇴직연금제도가 완전적립방식인 경우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인수방식의 지급보증기구는 대규모의 자산과 부채를 유지하고 있어 조직규모와 운영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규모 자산으로부터 얻은 투자수익으로 운영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데 미국 및 영국 등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IV-40> 지급보증제도 운영형태

	정부기관	민영기관
국가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운영방식	인수방식(Take - over)	구매방식(Buy-out)
지급보증의 안정성	국가기관 직접보증으로 안전성우위	민영보험으로 해결 (단,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
비용효율성	자산운용수익으로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이점	비교적 단순한 운영으로 비용우위
운용의 독립성	독립성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독립성 명확하게 확보 필요	원칙적으로 독립성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관련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결정

자료 : 이순재 · 김재현 · 이봉주 · 김현수(2005), 및 신문식 · 류건식(2005)에 의거 작성

이에 반해 구매방식(buy-out)은 지급보증기구가 도산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연금보험을 기구에 가입한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로 대신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기업 도산시 해당연금을 생명보험사의 연금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수방식보다 저비용구조이며 보증보험료 수준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안정성측면에서는 지급보증기구가 계약이전부터 계약이행(연금지급)까지 자체 운영하는 인수방식(take-over)이 근로자입장에서 안정감이 존재하고, 비용측면에서는 구매방식(buy-out)이 부실 연기금을 정상화시킨 후 금융기관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이며, 보증보험료 수준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급보증제도는 퇴직연금과 공적연금간의 역할분담에 따라 지급보증제도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있는데, 대체로 임의가입방식의 국가들은 정부에서 인수방식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는 국가들은 민간기구에서 구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요국은 보증기구의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나) 지급보증제도 운영특징

㉔ 미국

㉑ 보험료 산출

연금지급보증공사는 확정급여형제도의 기금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를 고정보험료와 변동보험료(VRP: Variable Rate Premium)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고정보험료는 2005년말까지 가입자 1인당 연간 19달러이며, 변동보험료는 개별 퇴직연금제도의 미적립연금채무(UVB: Unfunded Vested Benefits)를 계산하여 1,000달러당 연간 9달러를 적용하였다. 미적립연금부채(연금제도부채가치-연금제도자산가치)는 ERISA에서 규정한 보험수리가정과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변동보험료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적용이자율은 전통적으로 30년만기 미채무성채권 연수익률의 85%이다. 미적립연금부채는 등록된 계리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험수리원칙 및 실무에 의거하여 산정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변동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로는 계리사에 의해 미적립연금부채가 없다고 확인된 연금제도, 가입자수가 500인 미만인 연금제도, 정상폐지된 제도 등이다.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1991년부터 변동보험료의 최대한도는 폐지되었으나 가입자 1인당 보험료인 19달러는 지속되어 왔다. 복수기업주 제도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자 1인당 2.6달러이고 변동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㉒ 보험가입대상

ERISA 4021(a)에 의해 모든 적격 확정급여형제도가 담보대상(일부예외존재)이며 강제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적격여부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IRS)에 의해 결정되며 일단 IRS가 적격제도로 인정하였다면 이후에 적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적격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 PBGC 보험제도의 담보대상이 된다. 다만 적격지위 상실이후에 발생하는 급부는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가입대상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PBGC에 의해 담보되는 개인 피보험자가 된다. 가입

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현재 근로자 또는 전 근로자로서 퇴직연금제도에 일정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즉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㉓ 보험사고

PBGC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는 연금제도의 폐지이다. 확정급여형제도에 가입한 이상, 해당기업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존속하는 한 부담금을 계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금제도의 폐지는 사용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PBGC가 판단할 때 재정상태가 부실할 경우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제도가 폐지될 경우 급부의 발생, 수급권의 진행 등 모든 진행절차가 정지된다. 단일기업주 제도의 자발적 폐지는 정상폐지(standard termination)와 부실폐지(distress termination)의 두 종류가 있다. 정상폐지란 연금제도가 폐지되기 이전 모든 급부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재정상태인 경우를 말하며 부실폐지란 연금제도가 모든 급여를 지급하기 불충분한 재정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부실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주가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기업이 파산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PBGC는 발생한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한편 기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자금을 구상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㉔ 보험금

PBGC에 의해 퇴직연금 급여가 보장되어도 가입자의 모든 발생급부가 연금제도 폐지이후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PBGC가 보장하는 유형의 급여는 제도폐지 이전 수급권을 갖게 된 기초급여(basic benefits)이다. 기초급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즉 ㉑ 정상퇴직연령에서의 연금급여 ㉒ 대부분의 조기퇴직급여 ㉓ 가입자 유족에 대한 연금 급여 ㉔ 연금제도 폐지 이전 발생한 장애에 대한 장애 급여를 말한다. PBGC는 건강급여, 휴가수당, 퇴직위로금, 제도폐지일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한 사망일시금, 제도 폐지일 이후 발생한 장애에 대한 장애 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PBGC가 매월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은 법에 의해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최고한도는 사회보장 연금 급여과세기준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된다. 그러나 일단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되면 사망시까지 변하지 않는다. 즉 인플레이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영국

㉠ 보험료 산출

2004년 연금법은 1995년 연금법의 최소적립기준(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과 퇴직연금 감독청(OPRA: Occupation Pension Regulation Authority)을 각각 개선하여 대체한 제도인 SSF(Scheme Specific Funding)와 TPR(The Pension Regulator)를 도입하는 한편 지급보증제도인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을 신설하였다. 영국의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는 적립부족으로 인하여 연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기업채무를 인수하는 기금으로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를 모델로 하여 2005년부터 도입·운용되고 있다.

<표 IV-41>연금보호기금의 보험료 체계(영국)

고정보험료(20%)	리스크기준보험료(80%)	
	미적립리스크	파산리스크
퇴직연금의 보호부채수준에 기초 (전년도말 연금의 PPF에 대한 채무액에 기초)	전년도말 연금의 적립부족액 (PPF와 연금자산의 차)	전년도말에 있어서 기금의 파산위험 (향후 1년간)

FY2006년부터 PPF의 보험료체계는 FY2005의 초기보험료를 대체한 연금보호보험료와 관리보험료로 구분된다(<표 IV-41>참조). 또한 연금보호보험료(Pension Protection Levy)는 연금기준보험료(scheme based levy, 최대 20% : 퇴직연금의 보호부채수준에 기초), 리스크기준보험료(risk based levy, 최대 80% : 퇴직연금의 미적립리스크와 기업주의 파산리스크에 기초) 등으로 세분화된다.

여기에서 연금기준보험료는 PPF 부채에 일정한 승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이때 승수는 PPF가 추정한 총 연금기준보험료를 모든 적격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보호부채로 나누어서 산출되므로 매년 수정되어 FY2006에는 0.014%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리스크기준보험료는 보호부채의 0.5%를 한도로 하는데, 이는 부실한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리스크기준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퇴직연금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를 측정해야 한다. 현재 PPF에서 고려하고 있는 리스크는 미적립리스크(underfunding risk)와 파산리스크(insolvency risk)이다.

㉠ 주요기능

PPF는 법에 따라 리스크기준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모든 적격연금에 대하여 자산과 보호부채에 대한 계리평가를 마치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179조). PPF는 노동부가 관할하는 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이므로 노동부 산하의 법정 정부기관이며, 수급권 보호는 파산연금으로부터 이전된 자산과 가입연금에 대한 보험료로 연금을 직접 지급하므로 인수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PPF의 운용책임을 지는 이사회가 기구를 움직이는 실체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PPF의 권한 및 의무 등 제반활동에 대해 이사회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PPF는 2005년 9월부터 퇴직연금이 부정행위에 의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여 주는 사기보상기금(Fraud Compensation Fund)의 운용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PPF의 주요기능은 확정급여형 제도의 수급권보장, 보험료 징수, 자산운용 및 사기보상기금의 운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보장수준

PPF의 수급권 보호는 100%와 90% 등 두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보장수준은 자격규정에 의하여 평가일 직전의 연금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100% 보장수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을 초과한 경우 ㉣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에 미달하였으나 평가일 직전에 질병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 등이다. 이에 반해 90%

보장수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에 미달한 경우 ㉡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에 미달하면서 조기 은퇴를 한 경우 등이다. 연금가입자의 보장수준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PPF의 평가팀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PPF가 최종적인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산운용

PPF의 이사회는 법에 의하여 PPF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투자목적은 적격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적절한 투자전략과 선관원칙에 의한 자산관리를 통해 PPF 기금을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자산운용상 효과적인 책임완수를 위하여 전문성과 정보 및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사회는 2000년 금융시장서비스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투자자문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 내용은 투자의 적합성, 분산투자의 필요성 및 투자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전략의 수행은 이사회 산하 투자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있다. 투자위원회는 PPF 자산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며 분산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 일본

일본의 퇴직연금 지급보증사업은 1989년 후생연금연합회에 의하여 후생연기금을 위해 설립되었다. 후생연기금이 고용주의 도산 및 경영악화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연금수급자에게 일정한 연금액이 보장되도록 각 기금의 기여금을 자금으로 한 모든 기금참가자의 공제사업으로 실시되었는데, 모든 후생연기금은 이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민간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는 정부의 비공식적이고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지급보증사업은 연금급부 확보사업, 적립기준의 검증사업 및 방문상담조언사업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42> 연금지급보증제도

	세부내용
지급보증기관	퇴직연금 지급보증사업 (후생연기금협회사업: 1989)
가입대상	후생연기금의 후생연금(국민연금)대행부분(약 1,169만 명)
지급보장금액	대행부분의 급부현가의 30%+이를 상회하는 부분의 50%
보험료	① 인수비례부분: 가입원수에 비례 ② 수익비례부분: 지급보증 한도액의 0.119% ③ 적립부족비례부분: 미적립채무의 0.352%(상한: ①+② 1,260만엔, ③ 246.4만 엔)

자료 : 신문식·류건식, 「한국형 퇴직연금제의 수급권 보호와 향후과제」, 일본보험학회발표논문, 2005.10 등에 의해 작성

일본은 <표 IV-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주 도산 등에 의해 기금이 해산되는 경우 기금의 가산부분급부에 대하여 가입자, 연금수급대기자, 연금수급자 각각의 가산부분 해산시 책임준비금중 “대행부분 급부현가의 30%상당까지”와 “이것을 상회하는 부분의 50%상당”을 합한 금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연금급부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의 후생연금부분을 기업이 대행하는 후생연기금에 대한 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 2002년 확정각출연금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예금자보험제도

미국은 주별로 보호대상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 또는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투자성격의 실적배당부분)은 보호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공사 및 보험계약자 보호기구에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도 기본보험과 투자(실적배당)부분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 기본보험

부분인 최소보장에 대해서만 보호한다. 한편 일본은 원칙적으로 부보금융기관 간 예금을 보호하지 않으나 자산관리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IV-43> 주요국의 연금관련 예금자보호제도

구 분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비 고
	보호한도	보호한도	
미 국	예금자관리 퇴직계좌 (Self-directed Retirement Accounts)	직원복지계좌 (Employee Benefit Plan Accounts)	기존보호한도와 별도
	USD 100,000	USD 100,000	퇴직연금 구분한도
캐나다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PP (Registered Pension Plan)	기본보호한도와 별도
	CAD 100,000	CAD 100,000	
영 국	Personal Pension	-	기본보호한도와 별도
	£ 48,000	-	
일 본	계약자보호기구	확정기여형 플랜	
	1천만 엔	1천만 엔	

자료 : 이민환(2005) 및 예금보험공사 공청회자료(2007) 등에 의거 작성

부보대상 금융기관 예금의 보호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FDIC 및 캐나다 CDIC의 경우 제도도입 단계부터 부보금융기관간 예금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부보대상 제외 대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호대상 예금으로 정의하고 있어 퇴직연금도 부보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퇴직연금에 관련해서는 다른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하고 있으며 원리금을 포함하여 금융기관당 100,000 캐나다 달러까지 보호받고 있다. 일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정기적금, 부금, 원금보전계약이 있는 금전신탁에 대해 금융기관당 1천만 엔까지의 원금과 그 이자를 보호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와 신탁계약에 의해 부보금융기관 명의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제도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호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중 가입자의 책임하에 자산이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

해서는 신탁은행 등의 자산관리회사 명의로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개별 수급권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의 적립중 예금보호대상인 예금 등에 운용되는 부분에 한해 해당 은행내 명의자의 여타 보호대상예금과 합산하여 예금자 1인당 원금 1천만 엔 까지와 그 이자가 보호된다.

나. 우리나라

1) 책임준비금 평가

근퇴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의하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는 ① 매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계속기준), ②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비계속기준) 중에서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근퇴법 등 관련법규에서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방식과 과거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입각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에서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속성상 사망률, 퇴직률,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다양한 통계지표에 대한 가정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 별지에 속하는 연금계리기준서에서 연금규약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예측급여방식 또는 특정연령방식(assumed entry age normal method)을 적용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⁴⁾ 이처럼 책임준비금의 평가(부담금평가방식)로

74) 동양생명(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의 별지 2(연금계리기준서), 2005.12., p.12

예측급여방식과 특정연령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산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연금세제상의 인정범위 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어 선언적 의미의 책임준비금 평가가 되고 있다.

2) 연금재정 검증

근퇴법에서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관한 원칙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수준은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다. 관련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정검증 방안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첫 번째는 장기적인 균형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영속적 관계로 고려하는 것으로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을 비교하는 재정검증이며 ② 두 번째는 청산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과거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부채를 책임준비금으로 하여 적립금과 비교하는, 비계속기준 또는 청산기준에 의한 재정검증이다. 즉 우리나라 관련법규에서는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에 의한 방법을 모두 산정하되,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규약에 명시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① 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적립부족에 따른 부금의 재계산)에서는 매 사업년도말 적립금이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적립금 평가는 시가평가 또는 일정기간의 시가평가액을 평준화(smoothing)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은 급여현가에서 장래부담금수입현가와 과거부담금수입현가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달리 ② 비계속기준 재정검증(적립부족에 따른 부금의 기여)에서는 매 사업년도말 적립금이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퇴직급여 추계액)의 일정수준을 상회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비계속기준 재정검증에서도 적립금 평가는 시가평가 또는 일정기간의 시가평가액을 평준화(smoothing)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퇴직급여 추계액)은 $\sum$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times$ 근속연수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3) 최소적립수준 및 PSL 상각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퇴직금을 기초로 한 최소책임준비금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재정방식에 따른 장래법 책임준비금⁷⁵⁾과 퇴직금제도에 따라 과거근무기간에 상응한 과거법 책임준비금 중 더 큰 금액의 70%이상을 적립하도록 근퇴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다.⁷⁶⁾

최소책임준비금 = $\text{Max}(\text{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text{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times 70\% \text{ 이상}$

즉, 현재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최소적립수준(최소책임준비금) 기준 책임준비금의 60%로 되어 있으나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최소적립수준을 70%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DB형의 의무적립비율을 2010년 7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DB형 최소적립금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다.⁷⁷⁾

<표 IV-44> DB형 적립금의 의무적립비율 고시안

년 도	2010	2011	2012	2013년 이후
의무적립비율	70%	80%	90%	100%

이처럼 근퇴법 개정으로 최소적립수준이 2010년부터 10%p 상향조정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과거근

75) 장래 지급될 퇴직연금 급여의 현재에서 장래에 수입될 부담금의 현재를 공제한 금액

76) 평균임금의 30일분 상당액에 과거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77) 시행령 제00조 제1호, 노동부고시

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의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70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과거근무채무에 대한 상각기간은 과거근무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즉, 과거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차 년도에, 과거근무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3차 년도에, 과거근무기간이 3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에는 4차 년도에, 과거근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5차 년도에, 과거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6차 년도에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 별로 산정된 책임준비금액의 100분의 70이 되도록 과거근무채무를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의 최소적립금은 의무적립비율을 기초로 기준책임준비금에 아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될 수 있다.

$$\frac{(\text{과거근로기간} \times \text{적립비율}) + (\text{퇴직연금설정후근로기간} \times \text{의무적립비율})}{\text{가입기간전체}}$$

이처럼 부담금 산출 기준을 100분의 70으로 정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자 수급권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의 적립의무를 70%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은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100% 적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한 경우, 기업이 그 동안 적립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해도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70%의 재원밖에 없으므로 가입자와 수급자는 퇴직연금을 70%밖에 수령할 수 없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45> 최소적립 수준 및 PSL 상각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제9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수준) 법 제1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각각 각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3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수준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각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00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수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 매 사업년도말 적립되어야 할 적립금의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비율(의무적립비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전에 해당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적용비율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적립비율이하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적립과부족시 산정과 적기시정조치

확정급여형제도의 재무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립과부족에 대한 규제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근로퇴법 개정으로 인해 확정급여형제도 적립금의 적립부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재정검증결과,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두고 있다.

<표 IV-46> 적립과부족시 산정과 적기시정조치

	적립부족	초과적립
적립과부족산정	-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0 미달시 - 재정안정화 계획서 노동부제출 및 이행 - 금융감독원장, 재정안정화 계획서 심사	- 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 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적기시정조치	- 재정안정화 계획서에 따라 적립부족 해소	- 장래 부담금과 상계(100%초과시) - 사용자에게 반환 (150% 초과시)

개정된 근퇴법에 의하면 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말 이후 6개월 이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최소적립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안 제16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확인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최소적립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6조 제3안).

<표 IV-47> DB형 적립금의 적립과부족시 적기시정조치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근퇴법 시행령(안)
제16조(DB형 퇴직연금지급여력 확보근거 및 절차) 1. 삭제 2. 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최소적립금을 하회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	제 00조(적립금 부족시의 처리) 1. 법 제16조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0을 말한다. 2. 제16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사용자는 적립금이 제1항이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받

여야 한다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립부족 해소를 위한 계획서(재정안정화계획서)와 연금계리사의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년도말 6개월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확인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② 제1호의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심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한 경우 장래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150%를 초과한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승인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연금사업자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따라 적립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즉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재정안정화 계획(Recovery Plan)을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행(사업년도말 이후 6개월 이내에 90%를 충족시킨 경우에는 면제) 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장관은 60일 이내에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승인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며 사용자는 승인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연금사업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계속기준의 퇴직부채, 비계속기준의 퇴직부채 중 큰 금액)의 100%를 초과한 경우 장래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1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연금재정 재계산

연금계산기초의 실제상황이 변경되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퇴직연금급부기준 및 재정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일시적인 적립과부족의 해소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연금재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

담금의 재정재계산에 대해 매 5년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간마다 재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금규약의 변경,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장래 연금재정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산 주기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연금지급 보증장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지급보증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퇴직금 우선변제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1998년 도입) 등과 같은 협의의 지급보증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근로자퇴직금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우선변제) 이외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연금지급보증과 관련된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금융기관의 도산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한도로 지급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금융기관 도산시 협의의 수급권 보장장치는 마련되어 있다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

㉠ 우선 변제제도의 의의 및 대상

퇴직급여제도의 우선변제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일정한 퇴직급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는 우선변제제도의 범위가 법정퇴직금제도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퇴직금 우선변제제도를 퇴직급여 우선 변제제도로 확

대·개편하여 우선변제제도의 범위를 퇴직연금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즉 퇴직금의 우선변제조항을 DB형의 급여 및 DC형의 부담금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우선변제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이 체불될 경우, 퇴직금 체불과 동일하게 채권 등에 대하여 우선변제(3년치는 최우선변제)되도록 해석하고 있지만, 동 해석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현행법 제11조는 퇴직금에 한하여 우선변제 하도록 규정),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체불에 대하여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㉔ 우선 변제제도 관련 규정 및 내용

근로법 개정안 제 11조에 의하면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제도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제도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 확정급여형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확정기여형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IV-48>참조).

<표 IV-48> 퇴직급여제도의 우선변제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제 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 ①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 도산시 최소 3년간의 퇴직급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어느 정도 근로자의 수급권은 보장되고 있다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3년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제도의 유용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⁷⁸⁾

㉞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의 의의 및 기능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범위까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채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실체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은 기업의 부담금(보험료)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일정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2006년말 기준의 부담금 비율은 0.04%이며, 부담금에 대한 경감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또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 신탁)를 설정하여 가입한 사업주 등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체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 적용된다.⁷⁹⁾

78) 퇴직금제도의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다소 높이기 위해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근로자 측의 요구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 퇴직보험제도의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등의 도입을 수용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원식,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보험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2005년 3월, pp.104-106 참조.

79) 노동부 고시 제 2005-37호

<표 IV-49>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

사업주 구분	부담금 경감기준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주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년도말 기준으로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업주 ②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체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 ⁸⁰⁾ 81)

자료 : 노동부(2006), P.205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근로자가 채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면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퇴직시 사업장이 파산되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채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파산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불하는 채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와 제45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보장의 형평성을 위해 퇴직시 연령을 기준으로 “1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1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월정 상한액을 <표 IV-48>과 같이 설정하여 최대 1,020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5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80)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①인 경우) : 개산부담금 산정년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한 지급 비율

81)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을 한 경우(②인 경우) : 전년도말 기준으로 전체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단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frac{3년 - [평균근속연수 - (1 - 퇴직금 적립비율)]}{3년}$ 을 적용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퇴직연금 지급보장 역할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보험 등 사외적립에 기초한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 적립비율에 따라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100% 사외적립을 하는 경우 부담금이 0.04%에서 반감하여 0.02%로 낮추어지게 된다. 한편 기업도산시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이므로 같은 기준을 확정급여형제도에 적용될 경우, 보장기금에서는 기업 도산시 미적립금 가운데 최종 3년간의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험료(부담금)에는 비적립비율이 반영되고 있으나, 보험금(보장금액)이 최대 3년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이 정해진 극히 제약적인 지급보장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임금채권보험기금을 확정급여형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보장할 경우 양제도 또는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보장금액이 최종 3년의 퇴직금으로 절대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적립비율에 따라 보장수준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지불하는 체당금에서 퇴직급여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의 파산에 따른 체불임금과 휴업수당에 대한 채권자는 현 근로자이나, 퇴직(연금)급여의 채권자는 기존 퇴직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과 휴업수당은 현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근로서비스의 대가이나 퇴직급여는 노후생활자금으로서 사용되어 그 목적 또한 다르다.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퇴직연금 지급보장 역할은 어디까지나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이전까지로 한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가 당장 도입되지 않은 이유가 아직 퇴직연금제도의 법규가 정비되거나 시장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급보장 역할 역시 제한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예금자보호제도

㉓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와 예금자보호제도

확정급여형제도는 사용자인 기업의 지시에 의해 적립금이 운용되지만, 확정 기여형제도는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는 운용상의 모든 리스크를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제도는 운용상의 모든 리스크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는 사용자인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호문제는 기업 도산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제도는 기업 도산시 수급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수급권 보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V-50> 퇴직연금 유형별 수급권 보호장치 비교

	도산 주체	근로자손실	수급권 보호제도
확정급여형	사용자 (기업)	발생 (적립금 미납부 등)	지급보증제도에 의해 수급권 보호
확정기여형	연금사업자 (금융기관)	발생 (원리금보장상품)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해 수급권 보호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확정급여형제도는 예금보호제도가 아닌 퇴직연금제도 자체에 의해 수급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근퇴법에 수급권 보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별도로 기업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의해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과 같은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등과 같은 협의의 연금지급보장장치를 통해 사후적 수급권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제도는 완전 적립된 상태로 운영된다 해도 적립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도산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사용자가 관여하여 보전해 줄

책임 자체가 없으므로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한 수급권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보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대지급을 통해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1996년 12월 예금보험공사를 발족시킴으로써 예금보험제도를 본격 도입하였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는 금융권별 예금보험제도를 통합한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여 오고 있다.

<표 IV-51>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 비교

보험료율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금	저축은행
기존	0.1%	0.3%	0.3%	0.3%	0.3%
개정	0.08%	0.15%	0.15%	0.15%	0.35%
인하율	20%	50%	50%	50%	-

그간 통합예금보험제도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전망의 한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과거 10여년간의 통합예금보험제도 운용과정에서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부담의 형평성 문제, 확정기여형제도의 예금보호대상 제외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 200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표 IV-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권의 예금보험료율이 0.3%에서 0.15%로 50%인하 되었으며 은행권은 0.1%에서 0.08%로 20% 인하 되는 등 예금보험료율이 대폭 조정되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신탁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 명의로, 보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법인) 명의로 퇴직연금적립이 보험회사에 예치됨에 따라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였지만 확정기여형제도와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이 예금보호대상에 신규 포함되게 되었다(<표 IV-51>참조).

<표 IV-52>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보호

보호대상	보호한도	보호상품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근로자 1인당 금융회사별 5천만 원	기존 예금보호대상상품 (정기예금, 원리금보장형보험상품 등)

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 6월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확정기여형제도(DC형)와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기존 예금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로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금보전부분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적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은 금융권별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형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예금보험요율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즉 확정기여형제도에 대해 예금보험요율 적용시, 제도상품인 퇴직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은행, 보험사 등 모든 상품제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의 수급권보장 및 강제 저축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예금과는 달리, 보상한도 5,000만 원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4. 특징 및 시사점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련 규제를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자산운용 관련 규제,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특징 및 시사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측면에서 볼 때, 미·일 등 선진국은 수탁자와 근로자간의 이익상충 문제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 비해 정형화된 수탁자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 및 관련 보호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① 신탁법에 기초한 수탁자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퇴직 연금 운용과 관련된 각종 의무 즉 보고·신고·제출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수탁자책임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보고·신고·제출의무 등이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우리나라는 수탁자책임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낮아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수탁자책임 위반시 근로자가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장치(수탁자 배상책임보험 등)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수탁자책임 위반시의 제재조치 강화와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 ③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근로자와 수탁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 3자적 감시기능(연금계리사, 공인회계사) 장치가 퇴직연금관련 규정에 명문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계리개념의 미도입 등으로 인해 수탁자의 책임을 감시할 제3자적 감시기능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일한 계약형 지배구조를 띄고 있는 일본에서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미국, 영국에 준하는 수탁자책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둘째, 자산운용 관련 규제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양적규제(legal list rule)보다는 자율규제(prudent man rule)를 지향하여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자산운용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양적규제를 보다 지향해 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자산운용규제의 차이는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수탁자책임, 수급권 보호장치)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선진국은 철저한 규제완화의 보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제도적인 규제완화 보완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연기금의 건전성 기준 강화를 위한 건전성 요건 및 리스크중심의 감독정책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선진국은 법적·제도적인 규제완화 보완조치와 더불어 연금재정의 악화방지를 위해 리스크감독차원에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차이이며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무건전성 규제의 강도 및 수단 면에서는 각국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 볼 때, ①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연금부채평가방식)의 경우, 일본은 미국 및 영국과 달리 계리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수리적으로 타당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적립방식의 선택에 최소한도의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② 연금재정의 검증체계를 보면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립한도도 최소적립한도 및 최대적립한도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적립한도는 현재급여방식을, 최대적립한도는 예측급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③ 적립금 및 최소책임준비금 평가를 보면 모든 국가가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으며, 부채시가평가시 적용되는 계산기초율은 부담금 산출 계산기초율과 다른 별도의 계산기초율을 적용하고 있다. ④ 적립수준 및 과거근무채무상각의 경우, 모든 국가가 연금부채의 100%를 적립하고 있으나, 지급능력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적립비율에서는 미국 및 일본과 달리 영국은 104%의 높은 적립비율을 최소적립비율로 설정하여 보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모든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립부족시 및 적립초과시 모두 적기시정조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적립부족시에는 대체로 적립비율 정도를 고려한 적립부족액 상각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⑥ 자산 평가 및 부채평가를 기초로 연금재정 재계산(부담금 재계산)을 1~5년 주기로 실시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특히 중간에 연금계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적기시정조치를 마련하고 연금부채를 예측급여방식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적립수준을 70%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근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규제강도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 볼 때, 퇴직연금채불에 대해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을 적용하고, DC형 퇴직연금에 예금보험요율제가 도입되는 등 기존에 비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법적·제도적으로 연금지급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선진국과 대비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규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에 의한 연금지급보장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의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V.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⁸²⁾

1. 이전·취소 관련 규제

가. 외국규제

일본의 후생노동장관은 규약형 또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주 또는 기금에 대하여 규약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감독당국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규약형 퇴직연금에 관계되는 규약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확정급여형 제도의 계속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당해 규약형 퇴직연금에 관계되는 규약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³⁾

특히 확정각출연금법에 의하면 확정기여형(이하 DC) 운영관리기관은 ①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계되는 계약의 변경이 있을 때, ②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DC운영관리기관에게 이전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⁸⁴⁾ 특히 후생노동장관은 DC운영관리기관의 업무운영에 관하여 가입자 등이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는 가입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기타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후생노동장관은 DC운영관리기관이 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② DC운영관리기관이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고 위반한 경우, ③ DC운영관리업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82)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개념은 일반적인 제도폐지개념보다 기존제도의 완료(변경포함)단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규제, 즉 제도 이전, 제도취소, 제도폐지, 제도청산과 관련된 규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외국규제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동일한 일본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83) 確定給付企業年金法 第102條(사업주 등에 대한 감독)

84) 確定給付企業年金法 第98條(업무의 이전)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DC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⁵⁾

특히 일본에서는 타 연금제도로의 이행⁸⁶⁾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행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및 승계, 절차가 확정급부기업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⁸⁷⁾

나. 우리나라

근퇴법 제18조(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에서는 ① 연금사업자 해산시,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사업자로 등록시, ③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④ 법 제14조(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노동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등록취소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연금사업자에게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연금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중인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말소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하여 연금사업자의 사정변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즉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 이전에 필요한 조치인 ① 등록취소 또는 말소사실의 통지 ②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내용 안내 ③ 계약해지·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손실의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발적인 연금사업자

85) 確定醵出年金法 第102條(확정기여형 운영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86) 타 연금제도로의 이전은 규약형 퇴직연금에서 후생연기금으로의 이행(제108조), 기금에서 후생연기금으로의 이행(제109조), 후생연기금에서 규약형 퇴직연금 또는 기금으로의 이행(제111조~제112조),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의 이행(제117조) 등을 말한다.

87) 일본의 경우, 제93조(폐업시의신고 등)신고 등에 따라 DC운영관리기관이 합병·파산 등으로 DC운영관리기관의 등록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 상실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신고에 의해 확정기여연금을 폐지할 수 있다.

등록말소 신청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사업의 빈번한 진입 및 탈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고 금융기관의 사업개시 등의 신중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취소(3년) 또는 등록말소(2년)시에 재진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의 일시적 사유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단시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도중단사유, 제도의 재개시일정, 제도중단시점까지의 미납부담금에 대한 처리방안, 제도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을 가입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 운용현황의 통지, 적립금 운용 등의 업무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제도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수행해야할 기본 업무를 구체화하여 가입자를 보호하고 제도 연속성과 정상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 폐지·청산 관련 규제

가. 외국규제

일본의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당해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사업주는 후생노동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약형 퇴직연금을 폐지(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⁸⁾ 다만 종결하는 때 최저적립기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밀도는 금액을 부금으로 일괄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금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정수의 4분의 3이상으로 의결된 때 또는 기금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⁹⁾ 또한 규약형 퇴직연금이 폐지한 때에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잔여재산은 폐지한 날에 당해 확정급여형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 등이 급부지급에 관한 의무를 지고 있던 자 즉 제도 가입자 등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여재산을 분배⁹⁰⁾하는 경우에는 제도가입자 등에게 그 전액을 지

88) 確定給付企業年金法 第84條(후생노동장관의 승인에 의한 종결)

89) 確定給付企業年金法 第85條(기금의 해산)

불하도록 하며 잔여재산을 사업주에게 인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⁹¹⁾ 특히 일본의 확정각출연금법에서는 기업형 연금규약이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고 후생노동장관의 승인효력이 상실되거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기업형 연금규약의 승인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⁹²⁾

이에 반해 미국의 연금금 폐지(종결)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기업 스스로가 원하여 행하는 폐지를 자발적 폐지(자발적 종결)라고 한다. 다만 기업은 그 취지를 PBGC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금이 적립부족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폐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발적 폐지 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V-1>과 같다.

자발적 폐지에는 적립수준이 충분한 경우와 적립부족에 빠져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PBGC의 연금급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은 받아들여 지지만, 기업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PBGC가 적립충분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추가기여의무에서의 누적급부채무(ABO: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⁹³⁾라는 점이며, 더욱이 PBGC가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금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다⁹⁴⁾는 점이다.

문제는 기금이 적립부족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기업이 신청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기금의 계속이 기업전체에 중대한 부담을 주어 결국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PBGC를 설득하거나 또는 파산재판소로부터 도산을 선언받는 절차가 요구된다. 즉 기금운영의 부담이 기업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적립부족기금의 폐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90) 종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잔여재산 분배방법에 대해서는 確定給付企業年金法施行令 제57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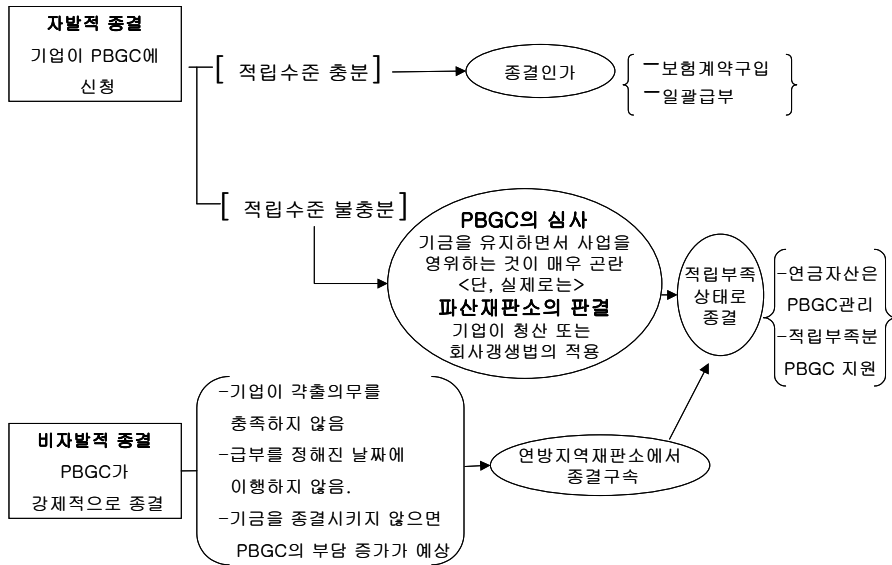
91) 確定給付企業年金法 第89條(청산)

92) 確定給付企業年金法 第45條~第47條 참조

93) 현재의 부채액과 현재와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장래 근무기간을 예측해 추가적으로 미래 발생 부채액의 합계를 말한다

94) 그만큼 ABO는 큰 금액이 된다.

<그림 V-1> 자발적 폐지와 비자발적 폐지(예: 미국)



반면에 PBGC가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기금을 폐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비자발적 폐지라 부른다. 이 경우는 기금을 그대로 존속시키더라도 기금에의 기여가 부담이 되어 도산 등의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그 때까지 기다린다하더라도 보증해야 하는 급부액이 커진다고 PBGC가 판단한 경우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자발적·비자발적인 것에 상관없이 적립부족인 기금이 폐지되는 것은 기업의 도산 또는 그것에 유사한 사정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PBGC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폐지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PBGC가 판단하는 경우 강제로 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PBGC는 연금제도와 관련된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면제하거나, 또한 보고사항을 추가할 권한까지 지니고 있다. 즉 연금사업자는 PBGC에 연금제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항, 즉 ① 내국세법상 적격요건 상실시, ② 가입자 급여를 감축하거나 미래 급여의 발생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정시, ③ 최소적립기준을 이행치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⁹⁵⁾

나. 우리나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근퇴법 개정안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① 사용자가 제도를 폐지한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결과, 제도폐지사유, 미납 부담금 내역 및 처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② 제도폐지일 현재 미납된 부담금의 내역 및 납입예정일, 제도폐지일 현재 적립된 적립금 현황(확정급여형에 한함), 급여내역 및 지급절차, 가입자별 지급된 급여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는 제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입 부담금을 납입하고 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근퇴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대표의 동의 결과, 미납 또는 부족 부담금 납부결과, 급여지급현황 등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① 가입자별 미납 부담금내역(DC형), ② 적립비율 및 부족한 부담금(DB형), ③ 미납 또는 부족한 부담금의 납입예정일, ④ 급여지급절차, ⑤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95) Patrick Purcell · Jeninfier Staman(2008), pp.62~64

3. 특징 및 시사점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를 미국, 일본, 영국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제도 종결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저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관련 규제보다 오히려 엄격한 제반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형태로 운용되는 일본의 경우, 확정급부기업연금법 및 확정각출연금법에서 근로자의 이익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제도 종결 관련 규제를 시행·운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일의 규제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시사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현행 근퇴법에는 제도이전 및 취소관련 규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근퇴법 개정안에는 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말소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를 일부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이전 및 취소관련 규정이 연금사업자에 대해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확정급부기업연금법 및 확정각출연금법에 제도이전 및 취소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명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이전이외에 자발적인 이전(제도간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생연기금에서 확정급여형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과 관련성이 있는 권리의무의 이전 절차 및 잔여재산 배분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둘째, 선진국은 제도 폐지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이 매우 엄격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자발적 폐지 금지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연기금 폐지 절차와 같은 체계적인 폐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지관련 규정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폐지이후의 단계인 청산시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는 데에 한

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국이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를 관련법상에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종결 관련 규제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I.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1. 기본방향

지금까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관련 규제를 퇴직연금 운영프로세스별로 살펴보았다. 즉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운용되며 종결되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행태를 미·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행 근퇴법 및 국회에 계류 중인 근퇴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퇴직연금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라는 기본틀 하에서 수급권과 관련된 수탁자책임 및 채무건전성 관련 규제 등이 보다 엄격하며, 시장의 자율기능 원칙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원활하고 쉽게 도입하려는 의도에서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및 채무건전성 관련 규제 등과 같이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중시 규제보다는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약하는 자산운용규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산업의 점업화 및 자율화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투자형 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운용상품 선택 니즈도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퇴직연금을 둘러싼 환경 역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퇴직연금의 규제환경에 부응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근퇴법 개정도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채무건전성관련 규제를 보완하여 규제체계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근퇴법 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퇴직연금 규제를 미·일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규제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즉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규제를 보다 체계화하고 사전적·사후적 채무건전성 규제를 강

화하는 방향, 즉 안정성 중심의 규제감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연금사업자, 사용자, 정부 등 퇴직연금 이해관계자 각각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이 보다 요구된다.

또한 근로자 및 기업의 투자운용 선택폭을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자산의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010년 이후에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로드맵은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산운용규제 완화 시행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로의 전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규제완화의 보완조치라 할 수 있는 수탁자책임 등과 같은 수급권 보호 장치는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여규제 등과 같은 도입관련 규제 정비와 더불어 및 퇴직연금제도의 퇴출관련 규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세부추진방향

가. 제도도입 관련 규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관련 규제는 <표 VI-1>에서 보는 것처럼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진입 관련 규제, 기여 관련 규제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회사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산기초율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율성이 부담금 산출액을 임의로 조정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규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노동부로부터 정교한 계산기초율 산출에 필요한 산업별 또는 직종별 근로자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표 VI-1> 제도도입 관련 규제방향

	방 향	
	단 기	장 기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다양한 사망률 산정작업 등 (데이터베이스화)	요율산정의 자율성 부여 (계산기초율 규제근거 명확화) 요율의 차별화(산출목적별)
진입 관련 규제	- 인적요건강화(계리인력중심) - 자행예금 운용조치 제한 등	- 연금사업자등록의 적정성검증 체계 검토 - 선진형 신탁계약체계 지향 (고유부문과 신탁부문분리등)
기여관련 규제	- 현물기여 인정 등	기여금 상한설정 등 (도덕적해이 방지)

주 : 편의상 단기는 현재~2012년, 장기는 2013년 이후로 구분

또한 계산기초율 선정이 연금계리사 또는 사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최소한도의 정책당국이 관리·감독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근퇴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부분을 퇴직률과 사망률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소적립금, 최대적립금의 산출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기여금 산출, 최소적립금 산출, 최대적립금 산출시 할인율을 포함한 계산기초율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 관련 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전성이 낮다는 점, 퇴직연금제도가 양적중심 자산운용규제를 지향하다고 있다는 점,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등록기준 (연금계리인력중심의 인적기준 강화 등)의 마련이 요구된다. 즉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한 규제수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와 같은 보험 및 신탁계약 체계는 유지하여 가되, 자행예금 운용에 따른 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 금융기관 도산시 방화벽 작동문제, 금융권역간 형평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연금사업자의 자산과 신탁자산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여 관련 규제측면에서는 납부형태 및 기여금의 상한설정⁹⁶⁾ 등에 대한 운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현물기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여의 다양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제도운용 관련 규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련 규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측면에서는 ① 연금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책임과 의무(보고·신고·제출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수탁자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수탁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다양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고의 또는 거짓, 허위보고, 중요사항의 의도적인 누락, 특별이익 제공 약속 등 수탁자의 불법적인 위반행위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질서위반 수준의 처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③ 근로자와 수탁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자의 감시기능 장치를 마련하고 수탁자책임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9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상에서는 시급히 요구되지 않지만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고 성숙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여금의 상한 설정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I-2> 제도운용 관련 규제방향

	방 향	
	단 기	장 기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 연금사업자 수탁자책임 강화 - 수탁자 배상책임보험도입검토 - 제재조치의 현실화 등	- 보고·신고·제출의무 관련 규정 보완 -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및 범 위확대 - 수탁자 감시기능장치 구축
자산운용 관련 규제	- 규제완화의 보완장치 철저 - 부분적 규제완화 유지	- 자율규제로의 완전 전환 (DB형 최소한의 규제유지) - 리스크중심 감독규제화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 적립금수준 100/100 상향조정 - 적기시정조치 추가보완 - 지급보증제도 도입(정부의 지원추가) - 연금계리사 제도 조기도입(금번 근퇴법 개정안 제외) - 예금보험제도 현실화(5000만 원 상향조정) 등	

둘째, 자산운용 관련 규제측면에서는 OECD 주요국처럼 자율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투자선택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퇴직연금 규제완화의 보완조치는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퇴직연금 규제완화는 수탁자책임과 수급권 보호 장치 등과 같은 보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된 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는 규제완화의 보완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연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중심의 자산운용규제(자산배분규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퇴법의 자산운용의 원칙 및 방법과 관련 규정이 전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측면에서는 ① 과거근로자와 현재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과거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근무채무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과거근무채무에 대해서는 미상각채무를 전혀 남겨두지 않도록 적

립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 근퇴법 개정안에 적기시정조치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향후 적립부족액을 납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세 및 과태료의 부과 등과 같은 법률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현재 5년마다 연금재정의 재계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소한 3년에 한번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연금재정의 재계산 주기가 5년 이상으로 장기가 되면 자칫 연금재정의 악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④ 또한 단기적으로 채권자 우선 변제제도의 적용확대, DC형 예금보험제도의 보장범위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정부지원 하에 연금지급급부공사 등과 같은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 수급권이 보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제도종결 관련 규제

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종결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종결 관련 규제는 법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즉 폐지 및 청산과 관련 규제는 법상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취소 관련 규제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 등에서와 같이 타 제도간의 이전 규정을 신설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취소관련 규정을 보다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탁자 책임 위반 등에 따른 강제적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변경에 따른 자발적 이전에 대한 규정 보완도 요구된다.

<표 VI-3> 제도종결 관련 규제방향

	방 향	
	단 기	장 기
이전·취소 관련 규제	- 타제도간의 이전, 취소 규정 명문화 - 이전시 권리의무 절차구체화 - 강제적 및 자발적 이전 명시	
폐지·청산 관련 규제	- 비자발적 폐지 금지규정마련 - 폐지절차관련 규정 구체화	- 폐지 및 청산관련 규정체계화 (잔여재산 배분 관련 규정 등)

또한 <표 VI-3>에서 보는 것처럼 비자발적 폐지 금지 규정을 미국의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절차 관련 규정은 근퇴법 및 시행령 등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제도폐지이후 청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잔여재산 배분 문제, 권리이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 및 청산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3. 향후과제

퇴직연금의 규제체계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관련 규제, 운용관련 규제, 종결 관련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향후과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환경 및 여건에 부응한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틀이 마련되고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5년에 불과한 제도도입단계에 있으며 계약형 지배구조 하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사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작업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리 선진형 퇴직연금 규제체계가 적용되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그 만큼 규제의 비효율성은 증대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관련 규제, 퇴직연금 운용관련 규제, 퇴직연금 종결 관련 규제 등과 같은 일련의 규제과정 중에서 특히 어느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수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퇴직연금 도입관련 규제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 운용관련 규제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인지 등을 규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규제단계별에 속하는 다양한 규제수단의 도입, 규제수준의 설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의 목적이 설정된 경우, 이 목적에 부합한 제반 감독체계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규제 목적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안정적인 퇴직연금 시스템 작동 등에 두는 경우 이에 부응한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정책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정형화된 퇴직연금 규제체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감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등과 같은 연금규제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원식, 고령화시대의 퇴직연금 정착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책세미나자료, 2009.11.
- 문형표외,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Ⅰ)」,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서(07-01-03),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 2007.12.
- _____,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서(08-29-03),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 2008.12.
- 류건식,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규제 및 감독방안, 보험개발원주최 정책세미나, 2003. 10.
- 류건식·이경희,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07.3.
- _____,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규제 비교분석, 보험개발연구, 2008.3.
- 류건식·신문식, 「퇴직연금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과 운용」, 『월간손해 보험』 2005년 5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2005. 7.
- 류건식·이상우, 주요국의 퇴직연금 개혁특징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07.4.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KDI 연구용역 보고서, 2007.11.
- 류건식·이상우, 연금사업자 규제의 적정성 검토, CEO Report, 2009.6.
- 류건식·김동겸,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수급권 보호: 네덜란드의 DB 형 퇴직연금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 발표자료, 2007.8.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감독방향, FY 2005년 동계 금융 정책 심포지엄 자료, 2005.11.
- 류건식·이태열,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 류건식·김세환,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 류건식 · 이상우,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10.
- 류건식 · 이상우,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 및 시사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조사연구자료, 2007.4.
- 류건식, 퇴직연금금운용의 규제 및 감독방안, 보험개발원 주최 정책세미나, 2003.10.
- 류건식 · 서성민,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08.12.
- 이민환,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 보호문제와 향후과제, FY2005년 동계 금융정책 심포지엄 자료, 2005.11.
- 이상우 · 류건식, 퇴직연금 수탁자책임과 제재제도, 2009년도 한국보험학회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세미나자료, 2009.8.
- 임영재 · 이중기,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한국개발연구원I, 정책연구시리즈 2003-03, 2003.12
- 신문식 · 류건식, 퇴직연금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도입과 운용,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2005.5.
- _____, 한국형 퇴직연금제의 수급권 보호와 향후과제, 일본보험학회 발표논문, 2005.10.
- 신기철,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21세기근로복지연구회 및 사회보장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4.6.
- 신성환 외, 노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 및 제도화방안, 한국채권연구원, 2007.8.
- 최준우, “금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월간생협, 생명보험협회, 2009.5.
- 최현우,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하나 퇴직연금 Brief, 2009.10
- 이봉주 · 류건식, 『퇴직연금론』, 박영사, 2006.5.
- 이상률, 『세계측면에서 본 미국의 사적연금제도』, 재정경제부 세제실, 2001.
- 이재민, 퇴직연금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월간생협, 2009.5
- 홍경식,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7.

-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감독모델, 2005.6.
- 금융감독원, 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 2007.10.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감독규정(초안), 2005.10.
-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개편방안 II, 2006.8.
- 노동부, 퇴직연금수급권 강화 등 선진화 방안 법제화 연구, 2008.12.
- 노동부,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제도 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보험료율 체계 연구, 2007.12.
-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안, 2009.3.
-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 2009.4
- 삼성생명, 퇴직연금 일본법령 및 해설자료, 2009.2
- 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예금보호방안 공청회자료, 2007.5.
- 일본후생노동성, 일본 DB형 기업연금법, 2008.4.
- 퇴직연금 감독규정 작업반, 퇴직연금 계산기초율 적용기준, 2005.5.
- 山口修, 『確定拠出年金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03.5.
- 土浪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関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険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 土浪修, 『企業年金のカバランスと受託者責任』, 日生基礎研究所, 2004.11.
- 三井アセット信託銀行, 『確定給付企業年金における受託者責任』 2005.12.
- 土浪修, 『企業年金のカバランスと受託者責任』, 日生基礎研究所, 2004.11.
- 土浪修, 『企業年金法における受託者責任規制の在り方』, 日生基礎研究所, 2001.2.
- 土浪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関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険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 高岐康雄, 『歐米生保における企業年金法上の受託者責任』, 保険學雜誌 第575号, 日本保險學會, 2001.12.
- 橋本基美, 『米國年金運用における受託者責任保險』, 資本市場Quarterly 2000年 冬, 2000.12.
- 中島富三, 『確定拠出年金』, 國政情報センター 2002.8.
- 富士綜合研究所(2002), 『企業年金の資産運用』, 日本法令, 2002.11.

일본기업연금연합회 홈페이지

- Blome, Slome, Kai Fachinger, Dorothee Franzen, Gerhard Scheuenstuhl and Yermo, "Pension Fund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Results from an ALM Optimization Exercise", OECD, 2007.5.
-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 "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First Outcomes", present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2008.
- Colin Pugh, " Funding Rules and Actuarial Methods", OECD, 2007.5.
- E. Rozinka and W. Tapia, " Survey of Investment Choice by Pension Fund Members", OECD Working Paper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January 2007.
- Hinz, P. Richard and Anca Mataoanu, "Pension Supervis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ractice and Country Context" ,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World Bank, May 2005.
- Hinz, P. Richard and Roberto Rocha,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s: Summary of First Four Case Studies" , IOPS Conference, March 2006.
- Laurens Swinkels, "Alternative Investments and the Solvency Requirements for Defined Benefits Pension Schemes", Society of Actuaries, 2004.
- N.G.Terry and P.J.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and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1997, pp.160-175.
- Mark W. Riepe, Scott L.Lummer, Pension Investment Handbook, A Panel Publication Aspen Publishers, Inc., 1996.
- Patrick Purcell · Jeninfier Staman, "summary of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10,

2008.

P.S.Srinivas Edward Whitehouse and Juan Yermo, Regulation Private Pension Funds' Structure, Performance and Investments : Cross-country Evidence, Social Protection, World Bank, July 2000.

Sylvester J. Schieber Vice President Watson Wyatt World,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Motivations, Provisions, and Implications for Retirement Security, Washington :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2.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 2003.6.

_____, Study on Pension Schem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May 2000.

_____, Draft Guidelines on Pension Fund Asset Management, 2003.11.

_____, Supervisory Structure for Private Pension Fund : Survey Analysis, 2003.11.

_____,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2003.6.

_____, Private Pensions Series Supervising Private Pensions, No.6, 2004.

_____, Private Pensions Series Protecting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No.8, 2007.

[부 록]

<표 부록 1> 수탁자 법률 위반 시 벌칙 비교: 일본 기준

구분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일본			한국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유무	벌칙유무
사용자	사용자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위반	●	●	-	-	-
	사용자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	-	-	●	-	-
	사용자 장부 미보존 및 허위작성	-	-	●	-	-
	사용자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	-	●	-	-
	사용자 개선명령 이행위반	-	-	●	●	-
	사용자 규약 변경 통지위반	-	-	●	-	-
	사용자 기록관리기관에 정보 미통지	-	-	●	-	-
퇴직 연금 사업자	연금사업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	-	●	-
	운용관리업의 명의 대여금지	●	●	-	-	-
	연금사업자 추가이익보장금지	●	●	-	-	-
	연금사업자 중요사실 미고지의 부실고지	●	●	-	-	-
	연금사업자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행위	●	●	-	-	-
	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	●	-	●	-
	연금사업자 보고징수 및 검사위반	●	●	-	●	-
	연금사업자 변경 신고위반	-	●	-	●	-
	연금사업자 영업소 표식 비치위반	-	●	-	-	-
	연금사업자 이외의 자가 표식 게시	-	●	-	-	-
기타	연금사업자 열람거부 또는 허위기재	-	●	-	-	-
	연금사업자 운영개선 명령위반	-	●	-	●	-
	가입자의 통지위반	-	-	●	-	-
	IRA가입자 기록관리기관에 미신고	-	-	●	-	-
	사용자·기관·가입자 기한내 미신고	-	-	●	-	-

주 : 1)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대상
 2) 일본의 벌칙조항을 기준으로 한국을 비교

<표 부록 2> 수탁자 법률 위반 시 벌칙 비교: 한국 기준

구 분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한국			일본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유무	벌칙유무
사 용 자	사용자의 퇴직금 기한내 지급위반	●	●	-	●	-
	사용자의 사업안의 차등 금지위반	●	●	-	●	-
	사용자의 근로자 동의위반	●	●	-	●	-
	사용자의 의견 청취 등 위반	●	●	-	●	-
	사용자의 교육실시위반	-	-	●	●	-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계약체결	-	-	●	●	-
퇴 직 연 금 사 업 자	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거부	-	-	●	●	-
	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근거 없는 판단 제공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목적 이외에 정보 이용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운용지시 정보 유출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위반	-	-	●	-	-
	연금사업자의 계약내용 준수위반	-	-	●	●	-

주 : 1)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대상
 2) 한국의 벌칙조항을 기준으로 일본을 비교

<표 부록 3>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국가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소매투자	민간투자		
한국 (기업 연금)	DB 상장:30%	투자금지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 30% 혼합형: 40% 채권형: 제한없음	투자금지	투자금지	제한없음
	DC 투자금지	투자금지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 투자금지 혼합형: 투자금지 채권형: 제한없음	투자금지	투자금지	제한없음
미국	부분제한 :고용주증권	부분제한 :고용주에게 임대된 부동산	부분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	투자금지 :고용주관 련대출	제한없음
호주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투자금지 :대출 또는 재정지원	제한없음
영국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투자금지 :고용주관 련대출	제한없음
캐나다	제한없음	15% (단,부동산 자원) 25%(부동산과 부동산자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독일	상장:35% 비상장:10%	25%	50%	펀드종류에 따라 다름	5% 헷지펀드	저당대출 50%	은행예치 50%
일본	제한없음	투자금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투자금지	제한없음

자료 :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s of pension funds, July 2007

<표 부록 4>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관련 해외자산운용 규제 I

국가		외국자산 에 대한 국제적 투자제한	구 분						
			주식	부동산	채권	소매투자 펀드	민간투자 펀드	대출	예금
한국 기업 연금 (퇴직 연금)	DB	제한없음	30%	투자금지	제한없음	30%	투자금지	투자금지	투자금지
	DC	총30%	투자금지	투자금지	투자가능	오직 채권펀드만 투자가능	투자금지	투자금지	30%
미국		제한없음	부분제한 :고용자 주식	부분제한 :고용주에게 임대된 부동산	부분제한 :고용자 채권				
호주		제한없음							
영국		제한없음							
캐나다		제한없음							
독일		30%	10%:EAA 아닌 주식		10%:EAA 아닌 채권				
일본		제한없음							

자료 :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s of pension funds, July 2007

<표 부록 5>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관련 해외자산운용 규제 II

국 가		Investment limit in single issuer/issue	Self-investment/ Conflict of interest	Other quantitative rules	소유권집중제한
한국 기업 연금 (퇴직 연금)	DB	Max 10% in shares issued by a single issuer. In bonds, CP and RP, Max 5% issued by a single issuer and Max 15% by affiliated companies.	Max 5% in bonds, CP and RP issued by the connected companies of the sponsor.	없음	회사자본화의 최대10%
	DC	최대30%	Max 10% in bonds, CP and RP issued by the connected companies of the sponsor	없음	없음
미국		다양성에 대한 일반적 요구 예외: 특정 DC 계획 하에 고용자주식 또는 실자산 보유	No self dealing, representing two sides of a single transaction, kickbacks to fiduciaries, or transactions with parties in interest, unless an exemption applies. - Special restrictions apply to certain types of investments, including ownership of pass through entities (partnerships and S corporations) and collectibles (art, coins, etc.). - No employer securities or real property in excess of 10% of plan assets, but an exception applies for holding employer securities or real property under certain DC plans.	- Indicia of ownership of plan assets must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US courts. - Investment vehicles with <25% benefit plan investors not subject to ERISA. Fiduciaries remain liable, however, for decision to invest in such vehicles.	없음
호주		없음. 그러나 수탁자는 자산배당에 있어서 다양화를 고려해야함.	5%	없음	없음

영국	다양성과 적합성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5%: 고용자관련투자	없음	없음	
캐나다	10%: 5%: 개별 자산(부동산) 또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10%: 펀드자산. 다른 보조규칙 적용 (예, related party rule)	없음	Funds may own maximum 30% of voting shares of one company.	
독일	pensi onska ssen	Max. 5% in securities issued by a single issuer, except 30% for state loans and bonds, bank deposits and mortgage bonds.	Max. 5% may be invested in the sponsoring employer in the case of single-employer plan; in the case that a plan is sponsored by more than two employers, investments in these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no more than 15 %.	70% currency matching requirement.	Permitted, but limited to 10% of the nominal capital of one and the same company.
	연금 펀드	Max. 5% in securities issued by a single issuer, except 30% for state loans and bonds, bank deposits and mortgage bonds.	Max. 5% may be invested in the sponsoring employer; in the case that it is sponsored by more than two employers, investments in these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15 %.	70% currency matching requirement.	Permitted, but limited to 10% of the nominal capital of one and the same company.
일본	EPF, DB : None, but the pension legislation stipulates that each pension fund should endeavour to avoid concentration of investment on a specific asset	EPF, DB : Investment on securities of pursuing interests of someone other than the pension fund is prohibited	EPF : None	EPF : None	
	TQP : not regulated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검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1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정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4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4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6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 1호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가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년4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계간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보험통계월보 (월간)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영문보고서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이 창 우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 cleee@kiri.or.kr)

이 상 우

일본 中央大學 상학 석사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swlee@kiri.or.kr)

조사보고서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발 행 일 2010년 7월 일

발 행 인 김 대 식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775-9000

ISBN 978-89-5710-187-2

값 10,000원